

한글날

희나리

시나브로

표

흰여울

'09~'10

# 국어 발전

## 과 보전에 관한 정책시행 결과 보고서

온새미로

2011. 8

함초롬이

그린나래

다솜

와

은하수

키

중

독도우리땅

능

한말글

쓰

미리내



본 보고서는 「국어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국어발전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시행 결과를 수록한 것이며, 「국어기본법」 제8조에 의거 2011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임



**제 1장 언어정책 개요**

제1절 언어정책과 국어정책 .....	3
1. 언어정책의 개념 .....	3
2. 언어정책의 유형 .....	4
3. 국어정책의 방향 .....	6
제2절 국어 관련 법령 .....	9
1. 국어기본법 .....	9
2. 국어기본법 시행령 .....	12
3.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	15
제3절 주요 국어정책 기관 .....	16
1. 문화체육관광부 .....	16
2. 국립국어원 .....	19
3. 국어심의회 .....	23
4. 국어책임관 .....	29
5. 국어문화원 .....	32

**제 2장 국어 사용 현황**

제1절 국내 현황 .....	37
1. 공공언어 사용 실태 .....	37
2. 국내외 국어 교육 .....	50
3. 국내 한국어 교육 .....	59
4. 국어 관련 민간단체 .....	63
제2절 국외 현황 .....	71
1. 개요 .....	71
2. 한국어 해외 보급 .....	71

**제 3장 주요 추진 정책**

제1절 주요 업무 .....	83
1. 2009년 .....	83

2. 2010년 .....	84
3. 문화비전 .....	87
제2절 국어발전기본계획(2009-2010) .....	89
1. 개요 .....	89
2. 주요 실적 .....	93
제3절 한국어 보급 확대와 세계화 방안 .....	115
1. 추진 배경 .....	115
2. 추진 내용 및 실적 .....	115
제4절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편찬 .....	123
1. 추진 배경 .....	123
2. 추진 전략 .....	125
3. 사업 추진 체계 및 추진 방식 .....	126
4. 주요 추진 내용 .....	128
5. 단계별 사업 내용 .....	132
6. 기대 효과 .....	135
제5절 언어의 공공성 향상 .....	135
1. 추진 배경 .....	135
2. 추진 내용 .....	136
3. 기대 효과 .....	140

## 제4장

### 향후 추진 계획

제1절 추진 개요 .....	143
제2절 주요 추진 계획 .....	145
1. 한국어 교육 기반 강화 .....	145
2. 쉬운 공공언어 쓰기 확대 .....	148
3. 통합의 국어 문화 확산 .....	151
4.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	154
5. 국어 콘텐츠 구축 및 서비스 .....	157
6. 한글의 국내외 위상 제고 .....	159

## 부 록

1. 국어기본법 .....	163
2. 국어기본법 시행령 .....	170
3.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	188
4. 국어심의회 운영세칙 .....	201

제1장	<표 1-1> 1991년 문화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에 명시된 국어정책 과제	6
	<표 1-2> 국어발전기본계획('07-'11)의 주요 방향	7
	<표 1-3> 2009년 국어정책과와 국립국어원의 추진 과제	7
	<표 1-4> 「국어기본법」의 주요 내용	11
	<표 1-5>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14
	<표 1-6>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내용	15
	<표 1-7> 국어정책과 세출 예산	18
	<표 1-8> 부서별 주요 업무	21
	<표 1-9> 국어심의회 설치 등 관련 주요 연혁	25
	<표 1-10> 국어심의회 의 위상, 기능, 조직 변천	26
	<표 1-11> 국어심의회 의 주요 심의사항	27
	<표 1-12> 국어심의회 분과별 운영 실적(2009. 9. - 2011. 8.)	29
	<표 1-13> 국어책임관의 임무(「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	30
	<표 1-14> 국어책임관 사업 연혁	30
	<표 1-15> 2011년 선정 국어책임관 활동 지원 사업	31
	<표 1-16> 국어문화원 설립 조건	32
	<표 1-17> 전국 18개 국어문화원 현황	33
	<표 1-18> 국어문화원 연혁	34
	<표 1-19> 국어문화원 주요 사업	34
제2장	<표 2-1> 민원 서식 사용에서의 불편함 경험 여부와 그 정도	37
	<표 2-2> 공공기관 사용 서식의 오류 및 출현 빈도	38
	<표 2-3> 초·중등 국어 관련 수업 시수 현황	51
	<표 2-4> 국어, 언어 관련 전공 개설 학과 및 학과별 전임교원 수(2009년)	53
	<표 2-5> 2010년 16개 시도 국어과 공립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 현황	55
	<표 2-6> 2009년 문해 교육 기관과 프로그램 수	56
	<표 2-7> 2009년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 지역별 기관 수	57
	<표 2-8> 한글학교 대륙별 현황(2009년)	58
	<표 2-9> 국내 대학의 한국어 교육 기관 현황(2010년)	59
	<표 2-10>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험 내용 및 합격 기준	60
	<표 2-11>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연도별 실시 현황	61
	<표 2-12>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자 및 교원 양성기관 현황('10년 5월 기준)	62

	〈표 2-13〉 국어 관련 단체 통계	64
	〈표 2-14〉 국어 관련 단체 현황 및 주요 사업	64
	〈표 2-15〉 연도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지원자, 응시자, 합격자 현황	75
	〈표 2-16〉 연도별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76
	〈표 2-17〉 국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과목 채택 현황(2010년)	78
	〈표 2-18〉 해외 대학 한국어 학과 및 강좌 개설 현황	79
제3장	〈표 3-1〉 한글 보급기관의 명칭 통합 방안('09)	84
	〈표 3-2〉 한글박물관 구성 계획	86
	〈표 3-3〉 문화비전 2012의 우리말 가꾸기 중점 과제	88
	〈표 3-4〉 국어문화학교 운영 현황(2001~2010년)	93
	〈표 3-5〉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 추진 실적	103
	〈표 3-6〉 점자·수화 체계 개선 지원 실적	104
	〈표 3-7〉 국어능력 검정시험의 응시자 수	106
	〈표 3-8〉 국어문화원 관련 사업 추진 현황	107
	〈표 3-9〉 국어사용 실태조사 추진 실적	108
	〈표 3-10〉 민족생활어 조사 분야 및 지역	108
	〈표 3-11〉 지역어 조사 실적	109
	〈표 3-12〉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 국가 현황('11년 1월 현재)	118
	〈표 3-13〉 국가별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 현황('11년 1월)	118
	〈표 3-14〉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편찬 참여 기관별 역할	127
	〈표 3-15〉 '09~'10년 순화 대상어와 순화어 목록	136
	〈표 3-16〉 국립국어원의 외부 기관 지원 요청 대응 현황	139
	〈표 3-17〉 교과서 감수 현황	140
제4장	〈표 4-1〉 향후 추진 개요	144
	〈표 4-2〉 세종학당 설립 중기 계획(누계)	145
	〈표 4-3〉 한국어 기본교재 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국립국어원)	146
	〈표 4-4〉 세종학당 교원자격자 충원 비율의 확대	146
	〈표 4-5〉 단계별 사업 내용	157



제1장	[그림 1-1] 새로운 국어정책의 기본 방향	8
	[그림 1-2] 문화예술국 조직도	17
	[그림 1-3] 국립국어원 조직도	20
제2장	[그림 2-1] 계약서, 약관의 언어 개선을 위한 분석틀	41
	[그림 2-2] 사업 추진 흐름도	44
	[그림 2-3] 국어, 언어 관련 전공 개설 대학 수(2009년)	52
	[그림 2-4]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 참여 학습자 수 현황 (2006~2009년)	57
	[그림 2-5]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신청 절차	62
	[그림 2-6] 한국어능력시험(TOPIK) 연혁	75
제3장	[그림 3-1] 한글박물관 조감도	85
	[그림 3-2]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체계	90
	[그림 3-3] 국어문화학교 로마자 표기법 온라인 강좌 1차시	94
	[그림 3-4] 국어문화학교 학습자용 누리집	95
	[그림 3-5] '09년 남북 언어 관련 학술대회 주요 참석자 사진	102
	[그림 3-6] 표준국어대사전 웹 사전	110
	[그림 3-7] 디지털 한글박물관 누리집	112
	[그림 3-8] 베트남 호치민 세종학당 누리집	117
	[그림 3-9]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세종학당 누리집	117
	[그림 3-10] 현지화 교재 및 교원용 지침서(일부)	120
	[그림 3-11] 누리-세종학당 첫 화면	122
	[그림 3-12]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추진 배경 및 목표	124
	[그림 3-13]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의 임무와 미래상	125
	[그림 3-14] 단계별 추진 절차	126
	[그림 3-15]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추진 체계도	127
	[그림 3-16] '10년 사업 추진 실적	129
	[그림 3-17] 공공언어지원 누리집	138





# 제1장 언어정책 개요

제1절 언어정책과 국어정책

제2절 국어 관련 법령

제3절 주요 국어정책 기관



## 제1장 언어정책 개요

### 제1 절

### 언어정책과 국어정책

#### 1. 언어정책의 개념

언어정책에 대한 사전적 정의로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국가가 그 나라에서 쓰는 말을 통일·발전시키려고 쓰는 정책”으로 규정하고, 그 예로 표준어의 규정, 맞춤법의 확립, 글자의 통일이나 개혁, 외국어 교육, 문맹 퇴치 등을 들었다. 그러나 이런 풀이는 우리나라에 한정하여 통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은 ‘정책’이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이므로 언어정책은 곧 ‘국가가 주체가 되어 국가의 정치적 목적이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언어 사용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취하는 모든 활동’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언어정책의 범주는 맞춤법이나 표준어 등의 어문규범 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정책이 직간접적으로 그 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활동을 포괄한다.

언어정책의 실현 주체가 국가라는 점에서 국가가 아닌 민간에서 펼쳐고 있는 각종 언어 관련 활동은 그것이 표준어 확립이나 맞춤법 제정, 외국어 교육, 문맹 퇴치 활동, 국어순화 등 전체 국민의 언어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할지라도 언어정책에 포함하지 않는다. 민간에서 행해지는 이와 같은 활동은 ‘언어운동’이라 하여 언어정책과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언어정책과 언어운동의 구분이 늘 명확한 것은 아니다. 국가가 언어정책을 실행하면서 대중적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언어운동의 형식을 빌리기도 하며, 민간단체의 언어운동이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가의 행정력에 의존하기도 한다.

## 2. 언어정책의 유형

언어정책은 유형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언어정책의 주체인 국가의 개입 방식 또는 개입 정도에 따라 ‘국가 개입주의 언어정책’과 ‘방임주의 언어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언어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을 통해 국가가 직접 언어 문제에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언어정책을 국가 개입주의 언어정책이라고 하며, 언어 문제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을 자제하고 민간에서의 자율적인 개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언어정책을 펼치는 것이 ‘방임주의 언어정책’이다. 전자를 시행하는 국가로는 프랑스가 대표적이다. 사법과 행정은 다른 어떤 언어도 아닌 프랑스어로만 처리하게 함으로써 프랑스어를 지배적인 언어로 이끌어 내었던 「빌레르-코트레 칙령」(1539년)으로부터 프랑스 내의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 광고는 반드시 프랑스어를 사용해야 하고 만일 외국어 광고인 경우에는 프랑스어로 번역한 문장을 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1994년의 「투봉법」은 국가가 영어에 위협받는 자국어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례이다. 방임주의 언어정책은 주로 영어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언어정책은 국가의 규제를 많이 받지 않는다. 국가는 민간 자율적인 활동으로 사전 편찬, 교육, 보급 등을 후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펼친다. 물론 한 국가가 전적으로 개입주의나 방임주의 언어정책을 취하지는 않지만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는지는 구분된다.

언어정책의 유형은 ‘언어계획’(language planning)의 측면에서도 구분할 수 있다. 언어계획은 언어 공동체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한 사회의 언어 기능을 변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공인하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가하는 의식적인 노력을 말한다. 이 말은 주로 제3세계 국가의 근대화 과정에서 많이 언급되었다.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언어 표준화는 매우 중요한 언어정책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언어계획에 따른 유형은 크게 ‘위상 계획’, ‘자료 계획’, ‘습득 계획’으로 구분된다. ‘위상 계획’은 한 언어 공동체 내에서 특정한 언어의 사용 범위와 기능을 변화시키려는 노력과 관계된 것으로 여러 언어가 있을 때 어떤 언어를 국어로 삼고 어떤 것을 공용어로 삼을 것인지, 혹은 어떤 언어를 표준어로 두고 어떤 것을 방언으로 둘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어떤 문자를 쓸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기도 한다. 지위 계획은 특히 한 국가가 독립할 때 매우 중요하다. 어떤 민족이 자녀들에게 자국어 교육을 소홀히 함으로써 머지않아 그 언어는 기존의 지위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 계획’은 특정 언어의 체계와 형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으로 한 언어를 표준화하기 위한 철자법 제정, 사전편찬, 문헌 정리, 신어 개발, 전문 용어 정비, 어휘의 현대화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자료 계획은 한 공동체의 언어가 대화나 공적생활, 교육 등에 있어서 문제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습득 계획’은 특정 언어를 교육함으로써 그 사용자의 수와 사용 능력을 증대시키려는 노력과 관계된 것이다. 학교에서의 모어 또는 제2언어 교육,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한 각종 언어 학습, 문해력 증진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언어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각 국가들은 자국민을 위한 교육기관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 문화원을 운영하여 자국어 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나라에서 영어 공용어화나 해외 한국어 보급 문제는 위상 정책과 관련된 것이며, 한글 맞춤법이나 외래어 표기법의 제정 및 개정 문제는 자료 정책과 관련된 것이다. 국민의 기초 문해력 향상이나 초등학교에서의 영어 공교육 강화 문제는 습득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언어정책은 한 국가 내 언어의 기능과 존재 양상에 따라 ‘단일 언어 사용 정책’, ‘이중 또는 삼중 언어정책’, ‘다중 언어 사용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일 언어 사용 정책’을 펴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아이슬란드, 프랑스, 그리고 우리나라를 들 수 있다. 아이슬란드와 우리나라가 역사적, 지리적 요인에 의해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라면, 프랑스를 포함하여 단일 언어정책을 시행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실제 다민족으로 구성된 다중 언어를 사용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1국가 1언어의 효율성을 위해 강력한 단일언어 사용을 추진한다.

벨기에, 캐나다, 스위스 등은 ‘이중 또는 삼중 언어 사용 정책’을 사용하는 국가이다. 벨기에에서는 네덜란드어와 프랑스어가, 캐나다에서는 영어와 프랑스어가, 스위스에서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가 공용어로 사용된다. 이중 또는 삼중 언어정책에서는 특정 언어들의 사용 범위와 기능에 관한 ‘위상 정책’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다중 언어 사용 정책’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들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의 국경선 대부분은 구 식민 지배 국가들의 이해 관계에 의한 것으로 그들의 언어적, 민족적 경계와 상관없이 그어졌다. 식민지 시대에 서로 다른 민족 또는 언어 공동체 간의 의사소통은 지배 국가의 언어에 의존했던 탓에 한 개 또는 두세 개의 토종 국민어가 성립할 수 없었다.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후에 몇몇 언어가 비교적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선호되기는 했지만 그 지위는 아직도 가변적이다. 그러므로 다중 언어 사용 정책에서는 특정 언어들에 특별한 지위와 기능을 부여하는 '위상 정책' 측면이 가장 주목을 받게 된다.

### 3. 국어정책의 방향

199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국어정책은 국어 순화, 어문규범 정비, 한글 전용 문제 등 언중의 언어 생활과 직접 연관된 문제에 집중되었다. 그러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컴퓨터에서의 언어 처리, 남북 언어 통일 문제, 사전 편찬 등이 새로운 정책 과제로 추진되었다.

〈표 1-1〉 1991년 문화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에 명시된 국어정책 과제

- 한글의 기계화 및 과학화 사업
- 한글 맞춤법 등 어문 제 규범
- 생활 언어 및 언어 순화에 관한 사항
- 한글의 역사적 변천과 방언의 조사 및 연구
- 남북한 언어 통일
- 신문방송 언어의 사용
- 국어의 해외 보급과 해외 거주자의 국어 사용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표준국어대사전》의 편찬과 국어 관련 각종 사전의 발간
- 한자의 사용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2000년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국어정책의 중심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국어원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2001년과 2002년에 들어 국어 관련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2004년에 '국립국어원'으로 기관의 명칭이 바뀌면서 국어정책에 관한 모든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이관 받게 된다. 그리하여 국어정책의 유일한 국가 중심 기관으로 변신하게 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2005년에는 '국어기본법'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이 공포됨으로써 국어정책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할 수 있다.

2005년에는 「국어기본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법적 뒷받침을 받으면서 국어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국어기본법에 따라 2006년에 작성하여 2007년부터 적용시행한 '국어발전기본계획'(07~11)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았다.



〈표 1-2〉 국어발전기본계획('07~'11)의 주요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기본법」의 기본 이념 구현과 실효성 제고</li> <li>○ 국어사용 환경의 점진적 개선과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li> <li>○ 문화상호주의에 입각한 한국어 해외 진흥 확대</li> <li>○ 국제화다문화 사회를 포용하는 다원주의 언어 규범 정립</li> <li>○ 사회 통합적 언어 복지 시책 확대 시행</li> <li>○ 국어문화유산 발굴과 지역어·토착어 조사 사업 확대</li> <li>○ 지식정보문화 시대를 이끌어가는 국어정보화 사업의 지속 추진</li> </u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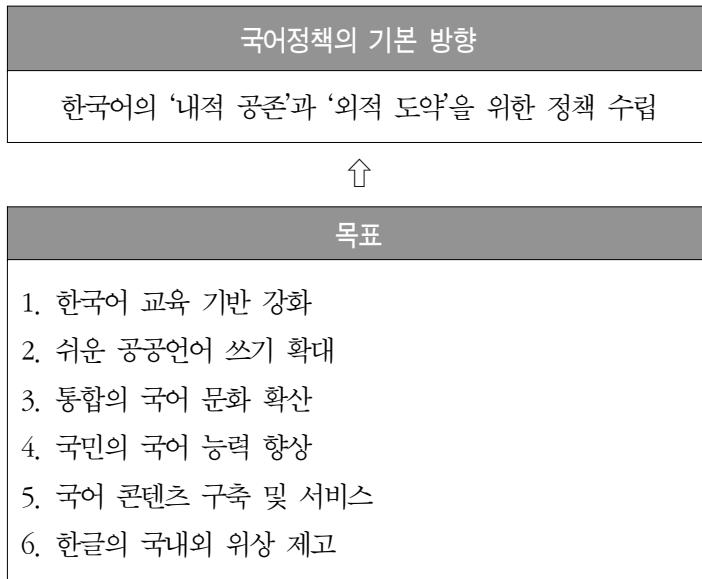
그런데 2004년 11월 이후 문화부에서 국립국어원으로 이관되었던 국어정책 기능이 2009년 5월 다시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로 이관되었다. 국립국어원이 종합적으로 주관해 오던 국어정책 가운데 순수 정책 기능이 2009년 5월을 기준으로 다시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른 두 기관의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다.

〈표 1-3〉 2009년 국어정책과와 국립국어원의 추진 과제

국어정책과 추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언어 관련 법령, 제도 및 어문 규범의 정비</li> <li>○ 국어언어 관련 정보화 정책 수립 및 시행</li> <li>○ 국어책임관 운영평가</li> <li>○ 언어와 문자, 전문용어 등의 표준화</li> <li>○ 국민의 언어능력 향상 및 언어 소외 계층 지원</li> <li>○ 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li> <li>○ 지역어 발굴 및 보전</li> <li>○ 국어문화원 지정 및 지원 등</li> <li>○ 한글날 행사, 한글 산업화, 한글 가치 확산 및 진흥홍보</li> <li>○ 한국어 보급 기관의 설치지원 등 한국어 보급</li> <li>○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li> <li>○ 외국인·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정책</li> </ul>
국립국어원 추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언어정책 관련 법·제도의 조사연구</li> <li>○ 언어와 문자, 특수 언어에 관한 조사연구</li> <li>○ 언어와 문자의 정보화 및 표준화와 정보 자원 구축관리</li> <li>○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li> <li>○ 공공 기관 및 신문방송인터넷 언어의 공공성 향상</li> <li>○ 전문용어 표준화 및 정비 지원</li> <li>○ 국민의 국어 능력·국어 의식·국어 사용 환경 등 실태 조사</li> <li>○ 올바른 국어의 보급 및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li> <li>○ 국어·한국어 관련 교육 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li> <li>○ 국어·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li> <li>○ 국어문화원 교육 활동 지원</li> <li>○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li> <li>○ 한국어 교육 과정, 교재 및 자료 등 개발·보급·운영</li> </ul>

이렇게 정책 수행 기능과 연구 기능이 국어정책과와 국립국어원으로 분리되었지만 이들 과제는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것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두 기관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

한 나라의 언어정책은 나라 안팎의 환경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하기 마련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언어 사용 실태를 보면 국내적으로는 영어의 확산에 의해 학문적인 활동 외에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도 국어의 사용 영역이 줄어드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외래어·외국어의 오남용이 심각하며 인터넷 통신언어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국어 환경이 점차 악화되어 가고 있다. 도시화와 세대교체로 인해 지역어와 민족 문화 생활어는 빠른 속도로 소멸되고 있다. 반대로 나라 밖에서는 한국의 비약적인 경제 성장에 힘입어 중국과 일본, 동남아 등지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전대미문의 한국어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 한편 새터민, 국제결혼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등의 증가로 언어 집단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지구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한국적인 다문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남북한의 정세 변화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빠른 언어 환경의 변화를 체험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언어정책은 이러한 우리의 언어 환경을 외면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으면서도 그 장점을 십분 활용하여 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1-1] 새로운 국어정책의 기본 방향

## 제2절 국어 관련 법령

### 1. 국어기본법

신규제정 2005. 1. 27. 법률 제7368호  
 (타)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일부개정 2008. 3. 28. 법률 제9003호  
 일부개정 2009. 3. 18. 법률 제9491호  
 일부개정 2011. 4. 14. 법률 제10584호

#### 가. 「국어기본법」 개관

「국어기본법」은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 1월 27일 제정하여 같은 해 7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어기본법」은 그동안 산재되어 있던 한국어와 한글에 관한 관련 법령을 한 곳에 모으고 새로운 제도를 추가하였다. 추가된 새로운 제도로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국어 문제를 담당하는 ‘국어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한국어 교육 전문가에게 전문성을 인정하는 자격증을 부여하며, 국민의 국어 능력을 검정하고 국어 능력을 키우기 위한 상담 제도를 운영토록 하였다. 또한 5년마다 정기적으로 국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년마다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국어정책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였다.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한글 관련 주요 법령이었지만 거의 사문화되었던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다. 또한 「국어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국어 기본법」이 명실상부 국가 단위의 국어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최상위 법임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이 법의 제정으로 국어와 관련된 모든 정책과 연구 지원, 교육의 기본 틀을 정하고 보급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 나. 「국어기본법」 연혁

국어기본법은 정부 입법으로 제정이 추진되었다. 2002년 10월 9일 발표된 국어발전종합계획에 「국어기본법」 추진 방침이 포함되었으며, 2003년 1월 13일 국어기본법 입법 소위원회(위원장 홍윤표 연세대 교수)가 구성되었고, 같은 해 2월 28일에 「국어기본법」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재정부, 교육부,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부안으로 확정되었고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2004년 12월 7일에는 국회 문광위를, 같은 해 12월 21일에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을 거치고 12월 29일에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05년 1월 「국어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몇 차례 개정이 있었다. 2008년 3월 28일 일부개정(법률 제9003호)에서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가 국가로 되어 있던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국민의 국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되는 국어상담소가 국어 관련 전화 상담만을 하는 시설로 인식되는 오해를 피할 수 있도록 국어문화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효율적인 국가자격시험 관리를 위하여 국어 관련 전문기관단체뿐만 아니라 검정전문기관에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위탁 규정을 확대하였다. 2011년 4월에는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법령을 정비하였다.

## 다. 「국어기본법」의 의의

「국어기본법」 이전에 국어와 관련된 규정은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과 「문화예술진흥법」 등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어서 실효성 있는 국어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1946년에 제정된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라는 단 하나의 조항만으로 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시행령이 없어 상징적인 의미가 컸다. 「문화예술진흥법」 역시 국기는 국어정책을 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어문규범을 제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어심의회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뿐 국어 발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없었다.

이에 반해 「국어기본법」에서는 ‘국어’가 대한민국 공용어로서 한국어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한글 역시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문자임을 밝혀 그동안 관습적으로 정의되었던 ‘국어’와 ‘한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한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어 발전을 통해 민족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라. 「국어기본법」의 주요 내용

「국어기본법」은 총 5장 2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중점을 두었으며, 인위적 규제 및 단속 등의 규정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 1-4>와 같다.

<표 1-4> 「국어기본법」의 주요 내용

분류	조항	주요 내용
‘국어’와 ‘한글’의 명시적 규정	제3조	국어는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이며 ‘한글’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어임을 명시적으로 밝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지역어의 보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함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위한 국어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함
	제8조	정부의 국어 발전과 보급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결과 등에 대한 연차 보고서를 2년마다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실태조사	제9조	국어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함. 국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가고 국민들이 국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어정책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 의식, 국어 능력, 국어사용 환경 등에 대한 자료의 수집 및 실태 조사를 할 수 있게 함
국어책임관	제10조	공공기관에 국어진흥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 제도를 두도록 함
어문규범의 영향 평가	제12조	「국어발전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추진과 실적 평가, 국어 환경 개선 시책 추진, 국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시행 등 국어시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이 국민의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
국어심의회	제13조	국어발전기본계획 수립에 관련된 심의 사항이 추가됨
공문서 작성	제14조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국어 정보화 촉진	제16조	국어 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말판 마련
전문용어의 표준화	제17조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도록 함
국어의 보급	제19조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자에게 일정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민간 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21조	국어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가 마련됨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제2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균등을 위해 힘써야 함을 명시함
국어능력의 검정	제23조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해 국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함
국어문화원 지정	제24조	국민들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각종 상담에 응할 수 있는 국어문화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2. 국어기본법 시행령

신규제정 2005. 7. 27. 대통령령 제18973호  
일부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6호  
일부개정 2008. 10. 20. 대통령령 제21087호  
일부개정 2010. 12. 14. 대통령령 제22529호

### 가. 「국어기본법 시행령」 개관 및 연혁

「국어기본법 시행령」(제정 2005. 7. 27. 대통령령 제18973; 일부개정 2010. 12. 14)은 「국어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어기본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현 국어정책과)와 국립국어원에서는 2005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국어기본법」의 취지를 살려서 내용을 선정하고 관계 전문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을 거쳐 국어기본법 시행령 안을 마련하였다. 이어 5월부터 7월까지 부처 협의, 입법 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23개조(전문 19개조, 부칙 4개조)로 제정·공포되었다.

「국어기본법」이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시행령은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족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22529호에 따른 일부개정(2010. 12. 14)에서 국어심의회 운영을 위한 ‘세칙’ 마련 근거를 규정하고,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요건, 기준 및 절차 등을 명확히 정비하는 등 법적·제도적 미비 사항을 보완·개선하였다. 후자의 내용을 요약하면, 먼저 한국어 교육 경력 인정 기간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에만 한정했던 것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등으로 확대하였다.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의 체계화 및 수준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학 등으로부터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적합 여부를 신청 받아 그 운영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나. 제정 목적과 주요 내용

「국어기본법 시행령」은 「국어기본법」의 정신과 제도적 운영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국어가 문화 창조와 발전을 선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핵심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기관의 홍보담당부서의 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것을 명시(제3조)하고 있다. 또한 국어연구자를 중심으로 국어생활과 관련된 제반 문의 사항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국어문화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제19조). 이는 국가의 국어정책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조직을 국가 책임 하에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국어운동과 국가의 국어정책이 상호 보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명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외국에서 급증하는 한국어 수요에 부응하면서 한국어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을 담당할 전문요원의 양성에 대해서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제13, 14조). 외국어학습은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때 더욱 높은 효과를 나타낸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역시 한국어를 바탕으로 우리 문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진행될 때 진정한 문화교류로서의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교육 담당자와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법률에 의거해 명시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의 바탕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국민의 국어능력(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전반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제2조). 이는 단순히 국민들의 국어 실력을 확인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어정책의 과제와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또한 국민들이 국어에 대해 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극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또한 각종 어문규범의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제4조) 실생활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국민의 국어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언어규범이 제정·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과 관련된 기준을 명시(제11조)하고, 학술 및 법률 관련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순화(제12조)할 것을 분명히 한 것은 국어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공익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의한 국어능력평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로써 일반 국민들이 언제나 자신의 국어능력을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질적 도약을 위한 준비를 스스로 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전문 19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5〉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분류	조항	주요 내용
국어 실태 조사	제2조	- 국어정책 수립에 필요한 국어의 실태 조사 실시 - 국민의 국어 능력·국어 의식·국어 사용 환경에 관한 조사 실시
국어책임관의 지정 임무	제3조	- 중앙 행정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국어책임관을 둘 수 있음
어문규범의 영향 평가	제4조	- 어문규범의 제정, 개정 시에 어문규범에 대한 인식, 만족도 조사
국어심의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제10조	- 국어심의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함 - 언어정책분과, 어문규범분과, 국어순화분과의 세 분과위원회 설치
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	제11조	- 공공 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함
전문용어의 표준화, 체계화	제12조	- 각 분야의 전문 용어를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해야 함 - 각 부처에 5~20인의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 두어 전문 용어 표준화안 심의 - 문화관광부는 국어심의회를 거쳐 회신하고 각 부처는 확정안을 고시, 사용해야 함 - 문화관광부는 국어심의회를 거쳐 회신하고 각 부처는 확정안을 고시, 사용해야 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한국어교원 능력 검정 시험	제13조, 제14조	- 재외 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을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과 자격 등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의 이수, 한국어 교육 경력이나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의 합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한국어교원의 자격을 1급부터 3급까지 구분하여 부여하도록 함 - 한국어교원의 자격 기준을 정함으로써 한국어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한국어 교육 분야의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글날 기념행사	제15조	- 한글발전유공자 포상, 세종문화상 수여
국어능력향상정책협 의회의 설치, 구성, 운영	제16조, 제17조	- 국어능력의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 관계 중앙 행정 기관 간의 협의 기구로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를 둠 -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등 14개 부처 국어책임관으로 구성함
국어능력 검정	제18조	- 국어능력의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해 국어 능력을 검정함 -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에 대해 검정함
국어문화원 지정과 지원	제19조	- 국민들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국어문화원을 지정함 - 국어문화원의 지정 요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음



### 3.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신규제정 2010. 12. 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3호

#### 가.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개관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신규제정 2010. 12. 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3호)은 한국어교원 자격의 취득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승급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대통령령 제22529호, 2010. 12. 14. 공포·시행) 제13조 및 제13조의 2에 따라 제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한국어교원 자격의 요건 등에 관한 세부 심사기준, 심사 횟수,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의 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 나.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

전문 6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은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1-6〉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내용

- 한국어교원 자격의 세부 심사 기준
-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 및 공고
-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신청
-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첫째, 한국어교원 자격 세부 심사 기준으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의 적합성 여부,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세부 심사 기준을 정하였다(규정 제2조).

둘째,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횟수를 연 2회로 하고, 심사 실시 30일 전에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하였다(규정 제3조). 한국어교원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화체육부장관이 심사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융통성을 두었다.

셋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의 임기 및 심의사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규정 제4조),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넷째, 자격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격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규정 제5조).

다섯째, 대학(원) 및 양성과정의 심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규정 제6조).

## 제3절 주요 국어정책 기관

### 1. 문화체육관광부

#### 가. 국어정책과 설립 목적 및 연혁

우리나라는 세종조에 집현전(集賢殿), 개화기에 국문연구소가 어문 연구를 담당하였다. 정부 수립 후 1989년까지 국어정책은 문교부 편수국(編修局)에서 교육 기능과 연계하여 다루어 왔으나 1990년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문화부로 이관되었다. 1990년 3월 6일에 문화부의 직제 개정으로 어문출판국 어문과를 신설하여 말과 글에 관한 정책을 문화정책의 영역에 포함하였는데, 이는 국어정책이 교육의 차원을 넘어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지향점이 바뀌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함께 국어연구소(문교부 산하 학술원 부설, 1984. 5. 10 설치)도 「정부조직법」의 개정(대통령령 제12895호, 1990. 1. 3)에 따라 교육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되었고, 「국립국어연구원직제」(대통령령 제13163호, 1990. 11. 14)에 의거하여, 1991년 1월 23일 문화부 소속 기관인 국립국어연구원으로 확대개편되었다. 이로써 국어정책은 정책 수립 및 집행기능은 문화부 본부의 어문과가, 정책 수립에 관한 기초 조사·연구 등 연구 기능은 국립국어연구원이 담당하는 체제로 수행되어 왔다. 그 후 어문과는 1994년 5월 4일에 어문출판국이 폐지됨에 따라 문화정책국 어문과로, 1997년 3월

20일에 국어정책과로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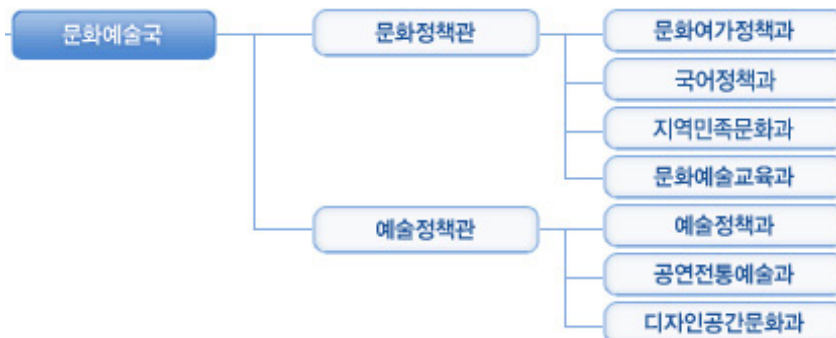
그동안 어문과 및 국어정책과는 우리말과 글에 대한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우리말과 글의 체계적 정리 보급, 우리말과 글의 해외 보급, 우리말과 글의 정보화·과학화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추진, 국어심의회 운영, 남북 어문 규범 관련 업무 및 어문 자료 교류, 어문 연구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국립국어연구원과의 공조, 그리고 문화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정리와 자료실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

2004년 11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국어정책과’에서 ‘국어민족문화과’(2006. 7. 25 국어민족문화팀으로 변경)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2011년 6월 16일 부서 신설 및 부서 간 업무 분장 조정과 국어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앞의 시행규칙에 따라 다시 ‘국어정책과’로 변경되었다. ‘국어정책과’는 문화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국어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어의 보존·발전에 관한 법령·제도를 정비하며, 어문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등 제도적 기반 구축 등에 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 나. 조직 및 예산

### 1) 문화예술국 조직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내 국어정책을 주관하는 부서는 ‘국어정책과’이다. ‘국어정책과’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관할 하에 있는 문화예술국 산하의 문화정책관 소속으로 되어 있다.



[그림 1-2] 문화예술국 조직도

## 2) 예산

〈표 1-7〉 국어정책과 세출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09	2010	2011	증감		비고
	예산	예산(A)	예산(B)	B-A	%	
민족문화 계승기반 구축	13,541	4,194	2,443	△1,751	△41.8%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1,181	1,700	1,530	△170	△10.0%	
한글의 가치 확산	3,420	4,250	4,275	25	0.6%	
한글박물관 건립	200	2,000	5,000	3,000	150.0%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	1,622	1,426	△196	△12.1%	
국어진흥기반 조성	2,320	1,399	1,465	66	4.7%	
전통문화자원 발굴활용	720	0	2,000	2,000	순증	
한스타일 육성지원(민간)	3,400	1,899	720	△1,179	△62.1%	관광기금
공공언어개선(쉬운 우리말 쓰기)	-	150	100	△50	△33.3%	토토기금
문화원형 디지털화	3,420	-	-	-	-	
계	28,202	17,214	18,959	1,745	10.1%	

### 다. 주요 업무

2011년 6월 16일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국어정책과의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

항	주요 업무
1	언어정책 및 국어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2	국어·언어 관련 법령 및 제도, 어문규범의 정비
3	국어심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국어·언어 관련 정보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국어책임관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언어와 문자, 전문용어 등의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7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및 언어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지역어 발굴 및 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
10	국어문화원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한글날 행사, 한글 산업화, 한글가치 확산 및 진흥·홍보에 관한 사항
12	한국어 보급기관 설치·지원 등 한국어 보급에 관한 사항
13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15	어문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16	국립국어원에 관련된 업무

## 2. 국립국어원

### 가. 설립 목적 및 연혁

국립국어원의 전신인 국어연구소는 학술원 산하의 임의 연구 기관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48에서 업무를 개시하였다. 1990년 1월 3일 「정부 조직법」 개정(대통령령 제12895호)에 따라 문화부가 신설되고 어문 정책이 문교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되면서 국어연구소의 위상 제고는 1990년도 문화부의 주요 사업으로 대두되었다. 1990년 11월 14일 대통령령 제13163호에 따라 서무과, 연구1부, 연구2부, 연구3부의 정원 35명으로 직제가 확정되면서 1991년 1월 23일 국립국어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며, 합리적인 국어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던 국립국어연구원은 2004년 11월 11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정책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국립국어원으로 기관 명칭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국립국어원은 우리나라 유일의 언어정책 및 연구 통합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2009년 4월 17일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정책 집행 업무는 다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됨으로써 국립국어원은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연구 활동을 관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게 되었다.

국립국어원은 우리나라의 어문 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과학적·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어문 정책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어 생활에 필요한 어문규정을 관리하며 국어사전을 편찬하는 등 교양 있고 표준적인 언어생활의 기초를 다짐으로써 국어 생활의 향상을 꾀하며 국어정책의 개발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 나. 조직 및 예산

#### 1) 조직

국립국어원의 조직은 1실(어문연구실), 1단(공공언어지원단), 1부(교육진흥부), 3과(기획관리과, 국어능력발전과, 한국어교육진흥과), 2팀(어문연구팀, 언어정보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 8

월 현재 정원은 연구직 24명을 포함하여 45명이며 현원은 42명(연구직 21명)이다.



[그림 1-3] 국립국어원 조직도

## 2)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예산액	예산액	예산액
합 계	11,835	10,870	12,915
○ 언어 정책기반조성 및 진흥	1,612	989	793
○ 국어능력 향상 및 환경개선	1,915	1,470	1,616
○ 청사관리운영	998	948	965
○ 다문화사회의 한국어 교육 진흥	580	1,466	1,393
○ 개방형한국어통합사전 구축	-	1,833	4,000
○ 세종학당 개설 및 운영	1,800	-	-
○ 국어실태조사 및 자료구축	1,300	679	571
○ 국어정보화	806	716	680
○ 국립국어원 인건비	2,454	2,362	2,493
○ 국립국어원 총액인건비대상 기본경비	144	144	144
○ 국립국어원 기본 경비	226	263	260

## 다. 주요 업무

2011년 6월 7일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장 제39조~27조에 따른 부서별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표 1-8〉 부서별 주요 업무

부서	주요 업무
어문연구팀	국어·언어정책 관련 법·제도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국어·언어 관련 정책통계 생성 및 수집 언어와 문자, 언어 소외계층을 위한 특수언어 등에 대한 연구 어문규범 관련 연구 및 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국어의 시대적 변천, 국어의 지역적·계층적 변이에 대한 연구 및 사회구성원 간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 국어 분야 학술 교류에 관한 사항 남북언어 통일 및 동질화를 위한 연구 세계 언어 연구기관 등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언어정보팀	국어와 언어 정보화 관련 연구·실태조사 언어와 문자 관련 정보자원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 등에 관한 사항 언어와 문자의 전산처리 규격, 표준화에 대한 연구 자연어 처리 기반의 사전 편찬 및 분류 체계 연구 국어·언어·문자 관련 문헌·자료 등의 수집·관리·연구·조사·발간 등에 관한 사항 국어 관련 홍보물 등의 제작·보급에 관한 사항 전산실 및 자료실의 운영 언어 정보화 분야의 업무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
공공언어지원단	공공기관의 언어 감수에 관한 사항 신문·방송·인터넷 언어의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 전문용어 정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국민의 국어능력·국어의식·국어사용 환경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올바른 국어의 보급 및 언어순화 활동에 관한 사항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국어능력발전과	국어문화학교 운영 국어능력 검정 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국어 관련 교육연수 발전계획의 수립 및 교육연수 과정의 개발 국어문화학교 및 국어 전문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국어책임관 등 국어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국어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신문·방송·인터넷 등의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국어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국어문화원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한국어교육진흥과	국내외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사업 한국어 관련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연수 과정의 개발 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한국어교육기관의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한국어 교육과정, 교재 및 자료 등의 개발·보급·운영에 관한 사항 한국어 보급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한국어교원 국제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1) 국민의 표준 언어 생활 지원과 한국어 자료 집대성

국립국어원은 국민의 표준 언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국어대사전》이 포함된 국어 정보 통합 검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어문규정, 외래어 표기 용례, 사전 등 각종 어휘 자료 및 국어 관련 자료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편의를 제고한다. 특히 21세기 세종계획 등 국어 정보 처리 성과물의 통합 유통, 관리 체계와 관련어 중심의 한국어 어휘의 미망 구축 및 연계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표준적인 언어 생활 지원과 관련하여 개방형 한국어 지식대사전 편찬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디지털 한글박물관을 통한 한글 자료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하여 한글 고전 자료의 원문 이미지 및 해설 자료를 제공하고 주제별 한글 고전 자료 특별 기획전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국어 문화유산의 현대화, 디지털화를 위해 훈민정음 해례본의 번역판(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을 출간하고 한글 고전 자료 정리 및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방언자료 등 한국어 음성 자료 디지털화를 수행하고 있다.

국어에 관한 다양한 교양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계간지 『새국어생활』을 발간하며 온라인 소식지인 ‘쉽표, 마침표’를 제작하여 누리집이나 전자우편을 등을 통해 보급하고 있다. 또한 구어 분야의 연구 성과 및 현황과 관련 활동을 정리·소개하는 『국어 연감』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 2) 국민의 언어생활과 직결된 공공언어지원 체계 구축

공공기관의 언어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서식과 문서의 국어 사용 실태를 분석하고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초중고 교과서 언어의 표기·표현을 감수하며 표준화법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및 방송 언어의 품격을 향상하기 위하여 방송에서의 외래어·외국어 사용 지침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올바른 인터넷 언어사용을 위한 교육용 전자책(e-book)을 발간하며, 인터넷 국어 순화 사이트 ‘말터’(http://www.malteo.net)를 운영하는 등 국민의 바른 언어 생활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3)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국어문화학교 운영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국어문화학교를 운영하여 국어 전반에 관한 실질적이며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는 수강 인원 30명 이상이면 전국 어느 기관·단체에서나 신청이 가능하며, 날짜, 시간, 과목 등을 정하여 신청하면 교재와 강의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



한 언론·출판인 대상 교정·교열 과정, 국어책임관 공공언어정책 과정 등 대상별·내용별 특별 과정도 운영한다.

#### 4) 국내외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국내의 한국어교원을 위한 교육 지침서를 개발하고 여성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 등을 위한 다양한 한국어 교재를 개발한다. 온라인 교육 강좌와 함께 방송 프로그램 등을 제작하고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 학습지, 시청각 보조 자료, 놀이 교재 등을 개발하며 다문화 가정 ‘한국어 방문 지도사’를 위한 교사용 지침서와 언어권별 해설서 개발 등 국내외 한국어 학습 수요자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교재를 개발한다.

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과 교육 연수 과정의 표준화를 위해 세종학당 등 국외의 한국어 교원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하며 한국어교원과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표준화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또한 국어기본법의 규정에 의해 ‘한국어교원자격’을 심사하고 자격증 발급 업무를 수행한다.

#### 5) 그 밖에 국민의 언어 생활 지원 서비스

언어 소외계층을 위한 언어복지 강화의 일환으로 표준수화 등 장애인용 언어 도구를 확립하고 이를 표준수화 학습 방송이나 점자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보급한다. 북한 이탈 주민의 한국어 발음 교재 및 학습 시디를 개발하고 차별적 언어문화 관행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사하고 홍보한다.

그 밖에 한국어 어문규정을 비롯한 국어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나다 전화’ 등을 운영하고 있다.

### 3. 국어심의회

#### 가. 개관

국어심의회는 장관 자문기구로서 「국어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0조에 근거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법정 위원회이다. 그 심의 사항은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이다.

국어심의회의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국어·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언어정책분과위원회, 어문규범분과위원회, 국어순화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구성·운영되고 있다. 국어심의회의는 상시적인 조직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국어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6조)

## 나. 연혁

국어심의회의는 1953년 3월 문교부령 제31호에 의해 처음 조직되었는데 문교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하는 실질적인 최고 기구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은 1964년 대통령령 제1977호에 따라 문교부 장관의 자문 기구로 출범하면서부터이다.

문교부 당시 대통령령 제1977호(1964. 11. 10.)에 의거하여 설치된 국어심의회의는 정부 기구 개편에 따라 1990년에 국어정책이 문화부로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어의 발전 및 보급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1991년에 국립국어연구원이 설립되어 조사, 연구 기능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조사, 연구 기능까지 아울러던 국어심의회의는 심의 역할만을 전담하게 되었다. 한편, 2005년 제정된 ‘국어기본법’에서 5년마다 ‘국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국어심의회의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국어심의회의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1994년까지 국어심의회의는 한글분과, 한자분과, 국어순화분과, 표기법분과, 학술용어분과 등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었으나 1995년 1월 5일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 공포되고 1995년 7월 13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727호)이 발효됨에 따라 그 위상이 격상되었으며, 일부 분과위원회가 조정되어 5개 분과 위원회 중 학술용어분과위원회가 폐지되고 국어정보화분과위원회가 신설되었다. 또한 같은 해 12월 23일 「국어심의회의운영세칙」(문화체육부훈령 제55호)을 제정하여 국어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2005년 1월 27일 「국어기본법」이 제정되고 2005년 7월 28일 동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기존의 5개 분과 위원회는 3개 분과로 통합·조정되었다. 이때 표기법분과와 한자분과가 어문규범분과로 통합되고 한글분과와 국어순화분과가 국

어순화분과로 통합·조정되었으며, 국어정보화분과가 언어정책분과로 확대·개편되었다.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8조 및 제22조는 삭제되고, 「국어심의회운영세칙」의 근거 법령도 「국어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 10월 11일 「국어심의회운영세칙」을 개정하였는데, 국어정책 심의 기능 확대와 전문성·대표성 강화를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고, 위원 결원 보충 및 그 임기, 회의의 의결, 회의록 및 검토 의견서 작성 등 심의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다.

2009년에는 이전 국어심의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9월 1일 당연직 13명, 위촉직 34명으로 국어심의회를 다시 구성하고 구성 범위도 국어, 언어, 정책 관련 전문가 및 관련 단체장 등으로 확대하여 전문적인 심의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언어생활에 밀착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53년 이후 국어심의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중심으로 주요한 연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9〉 국어심의회 설치 등 관련 주요 연혁

시기	주요 내용	근거 법령
1953년	한글 간소화 개정의 학술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설치	문교부령 제31호
1964년	「국어심의회규정 제정」 - 문교부 장관 자문 기구(조사·연구·심의)로 설치	대통령령 제1977호
1976년	「국어심의회규정」 일부 개정 - ‘국어순화분과위원회’ 설치	대통령령 제8279호
1990년	「국어심의회규정」 일부 개정 - 문화부 장관 산하 심의 기구로 설치	대통령령 제12895호
1991년	「국어심의회규정」 일부 개정 - 국립국어연구원 설립으로 ‘조사·연구’ 기능 이관	대통령령 제13491호
1993년	「국어심의회규정」 일부 개정- 문화체육부 장관 산하 심의 기구로 설치	대통령령 제13869호
1995년	「국어심의회규정」 폐지	대통령령 제14727호
1995년	「문화예술진흥법」으로 설치 근거 법령 변경	법률 제4883호
1995년	「국어심의회운영세칙」 제정	문화체육부훈령 제55호
2005년	「국어기본법」 제정으로 설치 근거 법령 변경 및 심의, 분과 구성 변경	법률 제7368호
2009년	국어심의회운영세칙 전부 개정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11호

국어심의회의는 국립국어연구원이 설립되어 조사와 연구 기능을 이관하고 심의만 전담하게 된 1991년과 「국어기본법」이 제정되어 심의 범위가 확대되고 분과의 구성이 변경된 2005년에 기능과 역할에 두드러진 변화가 있었다. 이 두 시점을 중심으로 국어심의회의의 위상, 기능, 조직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0〉 국어심의회의의 위상, 기능, 조직 변천

시기	위상	기능	조직	직원	예산
1991년 이전	문교부장관 지문기구	국어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연구·심의	한글분과, 한지분과, 학술용어분과, 표기법분과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1991년 ~ 2005년	문화체육부 장관 지문기구	국어 발전 및 보급을 위한 제반시책을 심의	한글분과, 한지분과, 국어정보화분과, 표기법분과, 국어순화분과	간사 및 서기 각 1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2005년 이후	문화체육관 광부 산하 심의기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	언어정책분과, 어문규범분과, 국어순화분과	국어심의회의와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 다. 기능 및 역할

국어와 관련된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국어심의회의의 기능은 분과위원회별로 나뉘어 있다. 분과위원회는 2005년 국어기본법 제정 이전과 이후를 중심으로 변화 과정을 제시할 수 있다. 국어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1964년부터 유지되던 ‘학술용어심의위원회’가 2002년에 ‘국어정보화분과’로 대체되었다.

2005년 국어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이전의 5개의 분과위원회가 3개로 통합되었다. 이전의 분과위원회가 독립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설정된 것이라면 지금의 분과위원회는 통합할 수 있는 공통적인 기능에 따라 설정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8조(분과위원회)에 나오는 분과별 심의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1〉 국어심의회의 주요 심의사항

분과	심의 사항
언어정책분과위원회	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나.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사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다.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라.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다른 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어문규범분과위원회	가. 한글맞춤법에 관한 사항 나. 표준어규정 및 표준어발음법에 관한 사항 다. 외래어 및 외국어의 한글 표기에 관한 사항 라.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를 외국 문자로 표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마. 한자의 자형(자형)·독음(독음) 및 의미에 관한 사항 바.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에 대한 사항
국어순화분과위원회	가. 국어순화에 관한 사항 나. 전문 분야 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국어심의회의 분과위원회가 3개로 줄어들었다고 해서 실제 기능이 축소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언어와 관련된 문제가 갈수록 전문화되고 복잡해지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서 필요할 경우 전문 소위원회를 각 분과위원회 밑에 두어 전문성을 살리면서 세부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라. 심의회의 운영 방법 및 운영 실적

### 1) 심의회의 운영 방법

국어심의회의 운영은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같은 「시행령」 제5조와, 같은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운영세칙」에 따른다.

국어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국어기본법」 13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시행령」 제5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분과위원회의 정책 심의 기능 확대와 심의회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어와 정책 분야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기관, 단체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또한 분과위원회 운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심의위원 일부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

회를 필요한 수단쯤 들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심의회 위원장은 모든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및 합동위원회 또는 그 하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2) 국어심의회 운영 실적

국어심의회는 임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문규범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국어심의회는 1958년에 로마자의 한글화표기법, 1968년에 인명·지명·숫자 표기법, 1969년 11월에 기관명의 준말 작성법, 같은 해 12월 외래어 한글표기법 등을 심의했다. 1970년 ‘국어조사 연구위원회’를 구성, ‘개정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마련했고 1979년 어문관계 표기법 개정안(맞춤법안, 표준말안, 외래어표기법안,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안)을 심의했다. 1976년부터는 순화대상용어를 심의하여 국어순화에 힘썼다. 1985년 12월에는 외래어표기법을, 1988년 1월 19일에는 새로 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을 심의·확정했다.

국어심의회는 대표적인 수행 실적으로 1988년 1월에 고시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들 수 있다. 1988년의 어문규범 개정은 1979년 문교부안, 1984년 8월 학술원안, 1987년 4월 국어연구소안 등의 시안과 1987년 6월 검토위원회의 검토와 조절위원회의 조절을 거쳐 1987년 12월 국어심의회 심의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1988년 어문규정 개정 이후에도 <표준어 모음 제2집 심의>(1990.7.), <표준화법 심의, 두음 표기, 아래아 표기>(1992.10.), <국악 관련 용어 표준(안) 심의>(1994.9.), <한글 맞춤법 일부 조항 재심의>(1994.12.), <외래어 표기법 및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여부 심의>(1991.5.), <외래어 표기법 개정 및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심의>(1992.4.), <북구 3개국 언어(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표기법 심의>(1995.1.),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안 심의>(1996.3.),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안 자문 및 심의>(1997.6.), <한국 점자 규정안 심의>(1997.11) 등의 실적이 있다.

1990년대에는 국어순화분과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국어순화분과의 활동으로는 <법무부가 요청한 행정 용어 순화안 심의>(1990.7.), <일본어투 표현 순화 자료 심의>(1991.6./1991.7.), <건설 용어, 미술 용어 심의>(1992.2~5), <글자체 용어 심의>(1992.10), <식생활 용어 심의>(1992.11), <행정 용어 심의, 신문 인쇄 용어 심의>(1992.12), <생활 외래어·전산기 기본용어·행정용어·선거·정치용어심의>(1993.12), <임업·봉제용어 심의>(1994.9~12.), <일본어투 생활 용어 심의>(1995.7~8.), <행정 용어 심의 및 건설, 미술, 식생활, 신문 제작 용어 사용

구분 표시 심의 >(1995.12.), < 입업 용어 심의 >(1996.11~12.), < 일본어투 생활 용어 심의 >(1997.6), < 운동 경기 용어 순화안 심의 >(1997.12) 등을 수행하였다.

「국어기본법」에서는 국어심의회에 역할에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심의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국어심의회는 2009년 9월 국어발전기본계획 주요 과제 추진 실적과 국어책임관 제도 운영 실적을 심의하였다.

국어심의회 운영 실적(2009. 9. ~ 2011. 8.)은 다음과 같다.

<표 1-12> 국어심의회 분과별 운영 실적(2009. 9. - 2011. 8.)

분과위원회	안건 내용	회의 결과
전체 회의	국어정책 추진 계획 보고, 성씨의 두음법칙 예외 허용 여부 심의(09.09.16)	성씨의 두음법칙은 유지하되, 해설서의 일부 강제 조항 삭제
	표준어 자격 여부/표기 추가 여부 심의(10.02.23)	소위 구성 후 안건 정리하여 다음 회의에 다시 상정
언어정책분과 위원회	국어발전기본계획 주요 과제 추진 실적, 국어책임관 제도 운영 실적 보고(09.09.16)	
어문규범분과 위원회	로마자표기법영향평가 등 어문규범 정비 계획 보고(09.09.16)	
	표준어 자격 여부/표기 추가 여부 심의(10.12.03)	표준어 36개, 표기 3개 심의 의결
	로마자 및 외래어표기법 영향평가 결과 보고, 표준어 영향평가 계획 보고(11.06.27)	
국어순화분과 위원회	전문용어표준화 추진, 한글사랑지원단 운영 현황 보고(09.90.16)	

#### 4. 국어책임관

##### 가. 개요 및 운영 현황

국어책임관은 「국어기본법」 제10조 1항에 근거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국어책임관은 소속 공무원 가운데 홍보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 2010.12.14. 대통령령 제22529호) 제3조에서 규정한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표 1-13〉 국어책임관의 임무(「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

-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의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를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 해당 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 해당 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이 법에 따라 2005년 12월부터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국어책임관 지정을 요청하여 그 결과 54개 중앙 부처와 16개 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22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등에 국어책임관을 지정하였으며, 2008년 2월 29일 정부 조직이 크게 개편됨에 따라 44개 중앙 행정기관에 대해 국어책임관을 재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나. 국어책임관 연혁

국어기본법 제정(2005. 1. 2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2005. 7. 27.)에 따라 2005년 12월 중앙 행정기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국어책임관 지정을 의뢰하였다. 이후 국어책임관 사업 연혁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14〉 국어책임관 사업 연혁

연도	주요 내용
2006. 5.	제1회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 개최
2006. 7.	국어책임관 전용 누리집(www.korean.go.kr/klofficer) 개설
2006. 8.	“국어책임관, 어떤 일을 하나?” 발간
2006. 9.	제1차 광역자치단체 국어책임관회의 개최
2007. 4.	54개 중앙 행정기관(부·처·청·위원회) 및 160개 소속 기관의 국어책임관 지정 완료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22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국어책임관 지정 완료
2007. 7.	제2회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 개최
2007. 9.	제2회 지방자치단체 국어책임관 회의 개최
2008. 11.	제3회 지방자치단체 국어책임관 회의 개최(대구광역시청)
2008. 11.	국어책임관 안내서 “2008 국어책임관, 어떤 일을 하나?” 발간
2009. 12.	공공언어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과정(국어책임관 대상)
2010. 3.	공공언어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과정(국어책임관 대상)
2010. 5.	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 공동연찬회 개최(안동)
2010. 11.	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 공동연찬회 개최(서울)
2010. 12.	공공언어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과정(국어책임관 및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대상)
2010. 4.	국어책임관 활동지원사업 공모
2011. 3.	국어책임관 활동지원사업 공모
2011. 5.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찬회 개최(서울)



### 다. 역대 주요 사업

국립국어원에서는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첫째, 2006년,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국어책임관, 어떤 일을 하나>라는 안내 책자를 만들어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에게 배포하였다. 둘째, 2006년 5월, 2007년 7월 등 2차례에 걸쳐 중앙 행정기관 국어책임관 회의인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고, 2006년 9월, 2007년 9월, 2008년 11월 등 매년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셋째, 매년 국어책임관의 업무 실적 보고서와 함께 별도로 조사한 주요 공공 기관 누리집(홈페이지) 언어 사용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어책임관 활동을 평가했는데, 2007년 5월에는 중앙 행정기관 가운데 정보통신부·외교통상부,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특별시청·경상남도청을 우수 국어책임관 운영 기관으로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이 가운데 중앙 행정기관 국어책임관 회의인 정책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7조에 따라 국민의 국어능력의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 간의 협의 기구로 설치된 것이었다. 정책협의회는 2006년 27개 중앙 행정기관의 국어책임관으로 설치·구성되어, 같은 해 5월 제1차 회의에서 향후의 활동 방향과 추진 사업을 협의하였고, 2007년 7월에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는 국어책임관 제도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정책협의회는 2008년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 과정에서 폐지하기로 결정되어, 정책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의 근거 법령인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7조가 2008년 10월 20일 완전 삭제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 활동을 지원하고 국어책임관의 우수 활동 사례를 발굴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기 위한 국어책임관 활동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하였다. 2010년에는 전남, 울산, 제주, 충북, 대전, 대구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었으며 2011년에는 제주를 포함 대전, 충북, 전남, 대구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었다.

<표 1-15> 2011년 선정 국어책임관 활동 지원 사업

- 대전(국어생활 통합 서비스체계 구축 사업)
- 충북(제2회 전국 우리말 사랑왕 선발대회)
- 전남(알기 쉬운 행정용어집 발간 및 결혼이주 여성 한국어 교육)
- 대구(대구시 공공기관 누리집 언어사용 개선)
- 제주(제주 문화의 얼굴 문화재 안내 문구 바꾸기)

## 5. 국어문화원

### 가. 개요 및 현황

국어문화원은 「국어기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민의 국어 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5년 10월 전국 11개소에 ‘국어상담소’를 지정한 것이 출발이다.

‘국어상담소’는 2008년 3월 28일 「국어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어문화원’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이 조치는 국민의 국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하는 국어상담소가 소극적으로 국어 관련 상담만을 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국어 관련 각종 교육·홍보 활동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해당 지역민의 국어능력을 키우고 고품격의 언어문화가 널리 퍼지는 데 일익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 2010.12.14, 대통령령 제 22529호)에 따라 상근 책임자 1명, 상근 상담원 2명 이상의 상담 전문 인력을 갖추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전년도의 상담 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표 1-16〉 국어문화원 설립 조건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9조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상담전문인력을 갖추 것
  - 가. 국어국문학·국어교육학 또는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거나 박사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대학의 국어 관련 학과와 그 부설 연구소·상담소, 국어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8년 이상 강의·연구·상담 또는 근무 경력이 있는 상근 책임자 1인
  - 나. 국어국문학·국어교육학 또는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의 국어 관련 학과와 그 부설 연구소·상담소, 국어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6년 이상 강의·연구·상담 또는 근무 경력이 있는 상근 상담원 2인 이상
2. 상담실 및 행정실과 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상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 것

〈표 1-17〉 전국 18개 국어문화원 현황

번호	문화원	원장	지정일	누리집
1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남영신	'05. 10.	www.barunmal.org
2	경북대학교 국어문화원	남길임	'05. 10.	knukorean.knu.ac.kr
3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	황병승	'05. 10.	ckc.gnu.ac.kr
4	동아대학교 국어문화원	엄정호	'05. 10.	korean.donga.ac.kr
5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	구현정	'05. 10.	smkorean.net
6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원	김기호	'05. 10.	ccrk.yu.ac.kr
7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	강진옥	'05. 10.	munjang.net
8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	서상준	'05. 10.	kor.chonnam.ac.kr
9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김희숙	'05. 10.	www.koreanlab.or.kr
10	충북대학교 국어문화원	김진식	'05. 10.	korean.chungbuk.ac.kr
11	한국방송 국어문화원	유애리	'05. 10.	korean.kbs.co.kr
12	강원대학교 국어문화원	남기탁	'07. 1.	kcc.kangwon.ac.kr
13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소강춘	'07. 1.	korean.jj.ac.kr
14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강영봉	'07. 1.	malgeul.jejunu.ac.kr
15	울산대학교 국어문화원	이은섭	'08. 12.	uoukorean.ulsan.ac.kr/home
16	한남대학교 국어문화원	강정희	'08. 12.	urimal.hnu.kr
17	한양대학교(안산) 국어문화원	김정수	'10. 06.	
18	인하대학교 국어문화원	박덕유	'11. 02.	

### 나. 국어문화원 연혁

국어문화원의 전신인 국어상담소는 2005년 7월 국어상담소 운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난 뒤,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지정되었다.

2005년 10월 전국 11개소로 출발한 국어문화원(국어상담소)은 2007년에 강원, 제주, 전북의 세 지역이 추가로 포함되어 14개소가 운영되었다. 2006년 1월에는 전체 국어문화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대국민의 국어 서비스 질을 높이고 국민의 국어생활 수준을 높이는 정책을 펴기 위하여 전국 국어상담소 소장이 모여 '전국국어상담소연합회'를 결성하였다. 2008년에는 울산과 대전 지역에 이어 2010년에 경기, 2011년에는 인천 지역에 국어문화원을 새로 지정하여 현재는 전국적으로 18개의 국어문화원이 운영되고 있다. 국어문화원의 주요 연혁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18〉 국어문화원 연혁

연도	주요 내용
2005년 7월	국어상담소 운영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05년 8월	선정 기준 마련 및 신청서 접수
2005년 9월	심사회의 개최 및 실사 실시
2005년 10월	국어상담소 지정(11곳)
2006년 4월	전국국어상담소 연합회 결성
2006년 6월	「국어상담」 창간호 발행
2007년 1월	전북, 강원, 제주 지역 3곳 추가 지정
2008년 3월	국어기본법 개정에 따라 '국어문화원'으로 명칭 변경
2008년 12월	인천, 대전 지역 2곳 추가 지정
2010년 6월	경기 지역 1곳 추가 지정
2011년 현재	18곳 지정 운영

#### 다. 주요 사업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된 기관들은 학생, 일반 시민이나 공공 기관의 국어 관련 질문에 답변하거나 조언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어문규범·국어 문법 등 국어와 관련된 궁금증에 대한 답변에서부터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논문 작성법 지도, 공공 기관의 대국민 홍보 문안과 정책 용어 등에 대한 검토, 법령문·안전 설명문·제품 설명서·문화재 안내 표지판이나 간판의 문구 등 실용문에 대한 검토, 시민 대상의 글쓰기·말하기 지도, 어휘력·문장력 향상, 독서 지도, 지역 언어문화의 보존·발전 등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업무를 해당 지역에서 담당하고 있다.

〈표 1-19〉 국어문화원 주요 사업

공통 사업	세부 사업
국어생활 상담 및 지원	국어생활 상담 및 교육, 지자체 국어책임관 지원, 중앙부처 국어책임관 활동 지원, 공공기관 국어 상담 및 감수 지원
국어 관련 행사	한글날 행사 개최, 토론왕 선발대회, 글짓기 대회, 한국어말하기 대회, 황금사전 선발대회, 시투리 말하기 대회 등
언어 환경 개선	관광지 안내문, 문화재 해설문, 간판·도로표지판 조사, 지역 방송·언론 등 공공기관 언어사용 모니터링, 지역 언어 실태 조사
찾아가는 문화학교	국어원의 찾아가는 문화학교 분담



## 제2장 국어 사용 현황

제1절 국내 현황

제2절 국외 현황



## 제2장 국어 사용 현황

### 제1 절

### 국내 현황

#### 1. 공공언어 사용 실태

##### 가. 개요

공공성을 가진 각종 문서들, 예를 들어 각종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민원 서식이나 안내문, 게시문, 계약서, 약관 등에 쓰이는 국어는 국민의 언어생활과 직결된 대표적인 공공언어이다. 그런 점에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과 안내문, 게시문, 계약서 약관 등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법에 맞는 바른 표현과 쉬운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2009년 남녀 1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민원 서식 사용에 불편함을 겪었던 경험에 대해 22명(11.8%)이 ‘자주 있다’고 응답하였고, ‘약간 있다’고 응답한 수도 73명(39.2%)에 이른다. 또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수도 55명으로서 전체의 29.6%를 차지한다. 이상의 수치를 합하면 51%에 이르러, 평소 서식 사용에서 불편함을 경험한 일이 ‘있다’고 응답한 것이 전체의 80.6%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 민원 서식 사용에서의 불편함 경험 여부와 그 정도

		민원 서식 사용에서의 불편함 경험 여부와 그 정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자주 있다	22	11,8	11,8	11,8
	약간 있다	73	39,2	39,2	51,1
	보통이다	55	29,6	29,6	80,6
	거의 없다	33	17,7	17,7	98,4
	없다	3	1,6	1,6	100,0
	합계	186	100,0	100,0	

민원서식 작성에서 느끼는 어려움의 요인으로는 ‘문서 용어 > 작성 절차 > 작성 안내 설명문 > 문서 제목’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실제 국민들이 공공문서의 서식을 작성하거나 문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었고, 그 원인이 언어 사용과 관련된 것이었다.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치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이는 결손된 차이로 인정하지 않는다. (생명보험 표준 약관, 장애 판정 기준)”

위의 한 생명보험 표준 약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약서, 약관의 언어 사용이 국민들의 이해 능력을 넘어서고 때로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중요도가 높아진 또 하나의 공공언어 구현 수단은 인터넷이다. 이제 인터넷은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보 전달의 매체가 되었다. 하지만 인터넷에 난무하는 잘못된 언어 사용은 그 도를 넘어 우리 언어를 파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물론 사적인 공간에서 친교를 위한 목적이라면 상호간의 암묵적인 합의하에 어느 정도 자율이 허용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이라면 쉽고 올바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나. 공공기관 서식·문서의 국어 사용 실태

2009년 『공공기관 서식·문서의 국어 사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서식에 나타나는 오류 유형 및 출현 빈도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2〉 공공기관 사용 서식의 오류 및 출현 빈도

		오류 대유형				전체
		표기 차원	단어 차원	문장 차원	텍스트 차원	
오류	맞춤법 및 표준어	120				120
	띄어쓰기	1185				1185
소유형	부정확한 단어 사용		152			152
	틀린 용어 사용		68			68
	외래어 남용		13			13
	한자어 남용		88			88



	오류 대유형				전체
	표기 차원	단어 차원	문장 차원	텍스트 차원	
조사			54		54
명사화			57		57
관형화			10		10
부사화			25		25
성분의 호응 관계			58		58
성분의 생략, 중복, 위치 부정확			170		170
번역 투 표현			49		49
제목 내용 불일치				7	7
부적절한 문단 연결				10	10
과도한 생략				3	3
비논리적 전개				26	26
전체	1305	321	423	46	2095

위 표에 나타난 오류 내용은 간단히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표기 차원의 오류

가. 표기 차원 오류에서 맞춤법 및 표준어 오류는 9.2%, 띄어쓰기 오류는 90.8%를 보임.

나. 맞춤법 및 표준어 오류는 단순 오기로 인한 오류, 맞춤법 및 표준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오류, 문장 부호 사용 오류, 외래어 표기 오류 등으로 구분됨.

단순 오기	‘기재합니다(→기재합니다)’, ‘촬영한(→촬영한)’, ‘기재시항(→기재사항)’
맞춤법 이해 부족	‘뒷쪽(→뒤쪽)’, ‘주십시오(→주십시오)’, ‘있습니다(→있습니다)’, ‘년월일(→연월일)’, ‘지정계좌로써(→지정계좌로서)’
문장 부호 오류	문장의 끝에서 ‘온점(.)’을 쓰지 않은 경우 등
외래어 오류	‘싸인펜(→사인펜)’, ‘카다로그(→카탈로그)’, ‘콘테이너(→컨테이너)’

### 2) 단어 차원의 오류

가. 단어 차원의 오류는 부정확한 단어 사용 47.4%, 틀린 용어 사용 21.2%, 외래어 남용 4%, 한자어 남용 27.4%의 비율을 보임.

- 나. 부정확한 단어를 사용한 경우는 본래의 단어를 임의로 줄여 쓰거나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쓴 경우, 과거의 용어를 쓴 사례 등으로 분류됨.
- 다. 틀린 용어를 사용한 경우에는 틀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단어를 쓴 경우 등이 포함됨.
- 라. 외래어 남용의 오류를 보인 경우는 비교적 적었으나, 일부 외래어의 사용이 두드러졌음.
- 마. 한자어 남용 오류의 경우 관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한자어가 확인되었으며, 한자어를 남용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한자어를 사용하는 것이 확인됨.

### 3) 문장 차원의 오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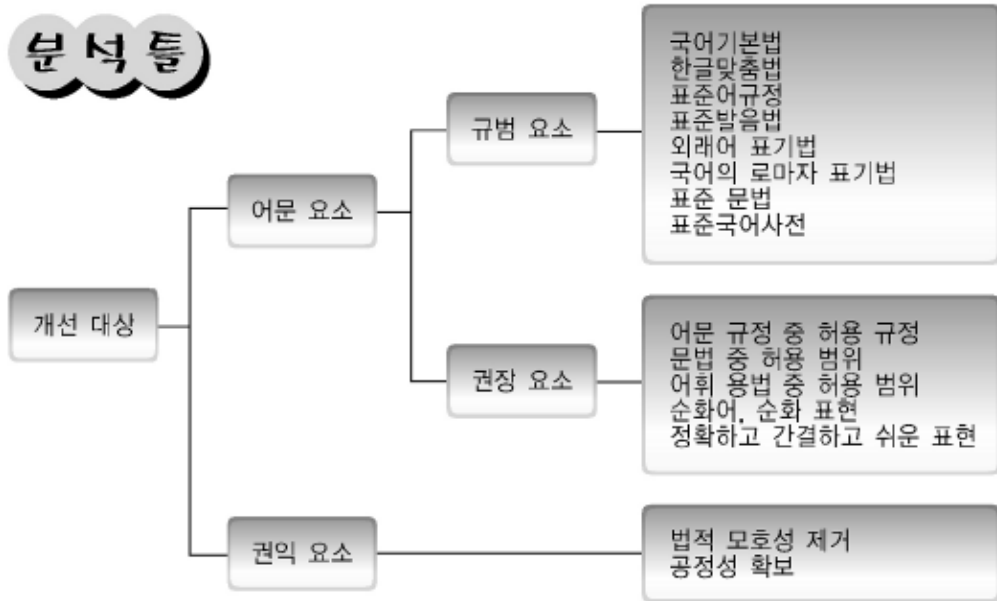
- 가. 문장 차원의 오류에서 조사 오류는 12.8%, 명사화 오류는 13.5%, 관형화 오류는 2.4%, 부사화 오류는 5.9%, 성분의 호응 관계에 관한 오류는 13.7%, 성분의 생략·중복·위치 부정확으로 인한 오류는 40.2%, 번역투 표현 오류는 11.6%의 비율을 보임.
- 나. 조사 오류로는 필요한 조사를 생략하거나 문맥상 자연스럽지 않은 조사를 사용한 경우 등이 확인됨.
- 다. 높은 비율은 아니나 명사구나 관형어를 반복 나열하여 발생한 오류, 적절하지 않은 자리에 사용된 부사어로 인한 오류 등이 확인됨.
- 라. 성분의 호응 관계가 적절하지 않아 생기는 오류보다는 성분의 생략, 중복, 위치 부정확에 따른 오류가 더 빈번함이 확인됨.

### 4) 텍스트 차원의 오류

- 가. 텍스트 차원의 오류에서 제목·내용의 불일치를 보인 경우는 15.2%, 부적절한 문단 연결로 인한 오류는 21.7%, 과도한 생략으로 인한 오류는 6.5%, 비논리적 전개로 인한 오류는 56.5%의 비율로 확인됨.
- 나. 텍스트 차원의 오류는 대유형별 오류 가운데 2.2%의 비율을 보여 다른 차원의 오류에 비해 매우 낮음.
- 다. 공공기관 서식의 경우 대부분 짧은 텍스트가 사용되어 텍스트 차원에서 논의할 사항을 발견하기 어려움.

### 다. 계약서, 약관에 나타난 국어 사용 실태

계약서·약관 등의 언어 사용 실태는 다음과 같은 분석틀을 활용할 수 있다. 각각의 요소별로 몇 가지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그림 2-1] 계약서, 약관의 언어 개선을 위한 분석틀

#### 1) 규범 요소: 어문규범과 문법 등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

##### • 띄어쓰기

조사의 띄어쓰기	도달일 부터 -> 도달일부터(은행여신거래)
어미의 띄어쓰기	유효한 지 여부를 -> 유효한지 여부를(전자보험)
접사의 띄어쓰기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으로 -> 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으로(화물취급업)
관형사의 띄어쓰기	각호의 -> 각 호의(화물운송, 전자금융, 건설, 전자보험)
부사의 띄어쓰기	하여서는 아니된다 -> 아니 된다(건설공사)
의존명사 띄어쓰기	갑과 을간의 -> 갑과 을 간의(음식료업)
명사의 띄어쓰기	입었을때는 -> 입었을 때는(가구업종)
용언의 띄어쓰기	돌려 보내거나 -> 돌려보내거나(이륜차)

• 맞춤법

두음법칙	년 ( )회 -> 연 ( )회 (외식업)
조사 형태	금액를 -> 금액을(장기손해)
어미 형태	해약하고저 -> 해약하고자(사무실임대차)
오자, 탈자	보즈인의 -> 보증인의(근보증서)
외래어 표기법	로알티 -> 로열티(외식업)

• 조사, 어미

조사	갑에 반환한다 -> 갑에게 반환한다(건설공사)
어미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 이익을 가산하는(화물운송)

2) 권장 요소: 더 간결하고 더 정확하고 더 논리적으로 표현하기

• 조사

로부터	'갑' 이 을로부터 받은 -> 갑이 을에게서 받은(상가분양)
의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 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이사화물)

• 접속부사

및	갑을 및 발주자 간에 -> 갑·을 발주자 간에(건설공사)
또는	갑 또는 감독원에 대하여 -> 갑이나 감독원에게(건설공사)

• 부정적 표현

명사형 표현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 반환을 청구하면(휴양콘도)
피동표현	정상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 정상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종합유선)
어려운 표현	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 침해를 막기 위해(대중가수)
모호한 표현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 자산의 가격 변동 때문에(채권투자)
부적절한 표현	채권자의 청구 있는 대로 ->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저당권)
불필요한 표현	요금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 요금 등의 등락액이(건설공사)
상투적인 구문	계약이행에 있어서 -> 계약을 이행할 때(건설업종)

### 3) 권의 요소: 법률적으로 모호하거나 공정하지 않은 표현 개선

#### • 법적 명료성

지나친 생략	입점지정일이 당초 입점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에는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여야만 입점할 수 있다(상가 분양 표준 약관) -> <b>입점 지정일이 당초 입점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에는 기한 미도래 중도금(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여야만 입점할 수 있다.</b>
기간 계산 단위 불일치	이 경우 환급요청 받은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환급하며(영화관람 표준약관) -> <b>때부터</b>
대상이 모호한 문장	가맹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설비·기기의 소유권은 <u>그에게</u> 있다. -> <b>가맹사업자에게 있다.</b>

#### • 공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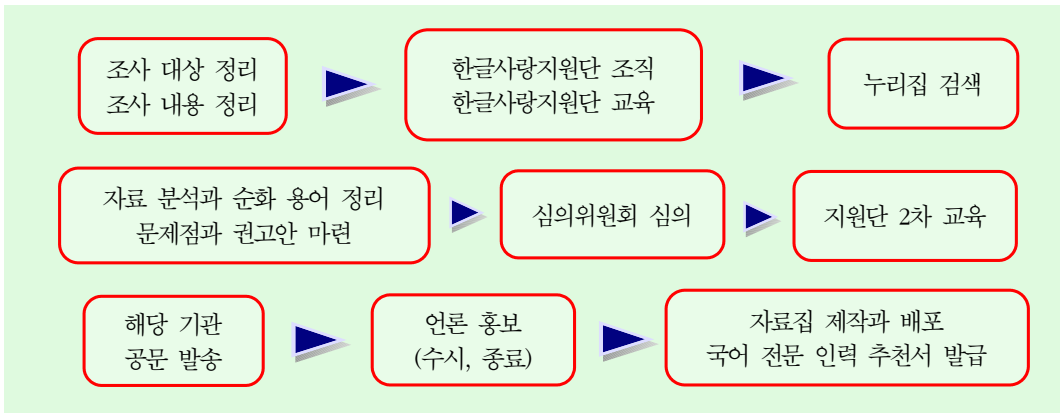
경과실 책임의 형평성	갑(백화점)의 고의 또는 <u>중대한 과실로</u> 인한 화재 또는 도난 등의 경우 그 책임은 갑에게 있다. -> <b>과실로</b>
불공정한 이익 계산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으며,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날짜 수만큼(은 행여신거래 기본약관) -> <b>지급한 다음날부터</b>
약자에게 불리한 규정	월 중도에 임대차계약이 종결되는 경우 임대료는 <b>1개월분으로</b> 계산한다.(임대차계약서) -> 일수에 따라

#### • 정보성

잘못된 정보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20만원 <b>이하인</b> 경우(신용카드 개인회원표준약관) -> <b>미만인</b>
정보 누락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대부거래 표준약관) -> <b>'관계인' 정의를 정해야 함.</b>

### 라. 공공기관 누리집 언어 사용 실태

2009년 한글학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한글사랑 지원단'을 구성하여 우리나라 공공기관 누리집의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공공언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일을 수행한 바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잘못된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어려운 말을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에서 수용할 만한 대안으로 권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인터넷 언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그림 2-2] 사업 추진 흐름도

조사대상으로는 중앙행정기관(44곳), 입법기관(1곳), 사법기관(2곳), 광역자치단체(16곳), 기초자치단체(134곳), 기타(253곳)였다.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말 훼손
  - 서술 호응이 잘못된 문장(주어와 목적어, 서술어 호응)
  - 너무 길어서 뜻을 정확히 알기 힘든 문장
  - 영어, 일어 번역체 말투
  - 부적절한 낱말을 사용한 문장
- 외래어와 외국어 오·남용
  - 외국어 남용
  - 외래어 오·남용
- 어문규범에 어긋난 말들
  - 맞춤법과 띄어쓰기의 잘못
  - 우리말의 로마자 표기 잘못
  - 외래어와 외국어의 한글 표기 오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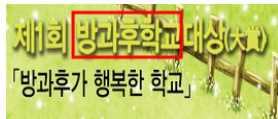
이 사업에서는 공공기관 누리집에 나타난 언어 가운데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고 해당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권고·유도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실태조사 차원을 넘어 해당 기관의 의지에 따라 실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 누리집 실태를 조사하여 순화어를 제안하거나 개선된 표현을 제시한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정책과제(내용)-알기 쉬운 우리말 제안

####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사업-01]

살핀 곳	첫화면	
처음	제1회 방과후학교대상(大賞)	
고침	...	
보탬말	정책 이름으로 굳어진 ‘방과후학교’에는 특기적성 교육부터 부족한 과목 보충수업까지 여러 가지 뜻과 하는 일이 담겨 있어 이 모두를 바꿀 만한 말이 딱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학교 공부를 마친 뒤에 여러 가지 재미난 특기적성 공부를 한다는 뜻으로 ‘놀이 학교’를, 또는 학교 공부에 더하여 부족한 공부를 채운다는 뜻을 새겨 ‘더하기 학교’는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누구나 알기 쉬운 말로 이름을 붙이면 더 좋을 듯합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사업-02]

살핀 곳	첫화면	
처음	2010 입학사정관제 길라잡이	
고침	...	
보탬말	입학사정관제는 ‘입학사정관’을 도입해 대학입학을 돕는 제도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입학사정관’은 한눈에 알기 어려운 말입니다. ‘사정관’처럼 어려운 말이 들어간 제도 이름은 쉽게 바꾸면 좋겠습니다.	

## 2) 알기 쉬운 우리말 제안

### 가) 고쳐서 쓴 목록 보기

처음	고침
국민제안	나도 한마디
정책포럼	정책토론/토론마당
규제개혁센터	규제개혁마당
인사고충 의견수렴	인사 관련 의견 내기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	과학기술인 자신감 북돋우기/ 과학기술인 자신감 드높이기
디지털도서관	전자도서관/누리도서관
e-브리핑	간추린 영상보기/영상보고
인터뷰 연설	연설 모음/이야기 모음
데이터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온라인 민원	전자민원발급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 사례 길잡이책/학교폭력 사례 모음
학원부조리신고센터	학원부조리 신고마당/학원부정부패 신고터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다양한 고교 300개 만들기
마이스터고	맞춤 직업학교
대입업무 대교협, 전문대교협 이양	대입업무 대교협, 전문대교협 넘김
기초학력미달 제로 플랜	기초학력미달 없애기 계획
고등학교 입학전형 가이드북	고등학교 입학 안내서/고등학교 입학 길잡이책
R&D사업 의사결정 시스템, 국가 R&D현황 한눈에, 연구자 R&D 애로사항 해결	연구개발사업 의사결정 체제, 국가 연구개발 흐름을 한눈에, 연구자 연구개발 어려움 해결
이양	넘김

### 나) 이런 낱말은 고쳐 주세요

[교육과학기술부 낱말-01]

살핀 곳	첫화면) 알림마당
처음	e-브리핑 ★
고침	간추린 영상보기/영상보고
보탬말	교육과학기술부 행사들을 볼 수 있는 동영상 자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전자를 뜻하는 'e'는 없어도 됩니다. '브리핑'은 '간추린 보고'로 고쳐쓸 수 있지만 이 게시판은 '영상보고'라는 말도 어울릴 듯합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낱말-02]

살핀 곳	첫화면>국민참여와 민원>인사참여
처음	인사고충 의견수렴
고침	인사 관련 의견 내기
보탬말	‘인사고충 의견수렴’ 게시판이 어떤 자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뚜렷하게 알릴 수 있는 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런 문장은 손질해 주세요

## [교육과학기술부 문장-01]

살핀 곳	첫화면>국민참여와 민원>이용안내
처음	민원신청하기를 <b>클릭하시면 해당페이지로</b> 이동합니다.
고침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해당 화면이 열립니다.
보탬말	‘클릭’이나 ‘페이지’ 같은 영어는 안 써도 됩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문장-02]

살핀 곳	첫화면>정보마당>국정과제>학교교육만족도제고
처음	학생의 <b>문화소양을 발현시키는</b> 학교 만들기
고침	학생의 문화 소질을 이끌어 내는 학교 만들기
보탬말	‘소양’은 좀더 흔히 쓰는 ‘소질’로 바꾸며 ‘발현’은 알기 쉽게 다듬어 봅니다.

## 3) 부서 이름과 조직 열개 살피기

## [교육과학기술부 조직부서-01]

살핀 곳	첫화면>기관소개>일반현황>조직
부서	교육선진화정책관, 대학선진화과, 학교선진화과
하는 일	교육선진화정책관은 아래에 따른 ‘과’들을 맡아 보는 부서입니다. ‘대학선진화과’는 대학특성화와 대학구조개혁을 맡아 봅니다. ‘학교선진화과’가 맡은 일을 찾아보니 선진화와 연결된 부분은 ‘국립대학 부설학교 선진화 방안’밖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탬말	‘선진화’란 말들이 이렇게 여러 번 쓰이니 하는 일을 알아차리기 힘들지만 두 과가 다른 점도 모르겠습니다. ‘선진화’는 일을 꾸려 나가려는 다짐으로 그치면 좋겠습니다. 부서이름은 두 과가 하는 일을 또렷하게 ‘대학개발과’, ‘학교운영과’로 나눠 적으면 알기 쉬울 듯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조직부서-02]

살핀 곳	첫화면) 기관소개) 일반현황) 조직
부서	대학자율화팀
하는 일	대학학생선발제도 운영·개선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 수립, 입학사정관제도, 대학교육협의회 운영지원 일을 맡고 있습니다.
보탬말	‘자율화’는 태두리가 커서 어떤 자율을 뜻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팀’도 ‘조’나 ‘단’처럼 알맞은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부서가 맡은 일을 생각해 ‘대학입시 자율조’는 어떨까요?

4) 기관 상징물과 구호 살피기

상징글씨 (로고/로고타입)	다짐말 (캐치/구호/미션/비전)	상징말 (BI/브랜드/슬로건)
	선진일류국가 건설	미래를 위한 교육 미래를 향한 과학기술 교육과학기술부가 함께합니다
상징무늬 (CI/마크/심벌/심볼)	상징그림 (캐릭터)	상징모양 (시그니처)
		

공공기관에서 쓰는 이름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쳐 봅니다.
로고, 로고타입, 로고마크, logo type, mark, 상징로고, 로고소개, 워드마크	상징글씨
캐치프레이즈, 캐치, 구호, 비전, 비전, 미션, vision, mission	다짐말
BI, 브랜드슬로건, 도시브랜드, 슬로건, 브랜드, 브랜드마크	상징말
CI, MI, UI, AI, 마크, 심볼마크/심벌마크, 심볼/심벌, symbol mark, symbol, 상징마크, 메인 심볼마크	→ 상징무늬
캐릭터 / 마스코트	상징그림
시그니처, 시그니취, 시그너취, 시그너처, signature	상징모양
엠블렘, 엠블렌, 엠블럼, 엠블링	상징도장

상징얼굴: ‘상징물’, ‘상징무늬’, ‘상징말’ 들을 모두 아우를 때 붙이는 말

## 마. 개선 방안

### 1) 공공기관 서식·문서의 실태 개선

공공기관 서식·문서를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국어책임관 제도의 실효적 개선을 들 수 있다. 국어책임관 제도는 국어기본법 제10조 1항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중앙 행정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속 공무원 중 1인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는 국어 정책 중 하나이다. 공공기관의 국어 문제를 정부 관계기관에서 직접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부 시책이므로 제도의 효율성과 실효성이 보장된다면 대단히 의미 있는 활동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비체계적인 제도 운영과 업무 부담으로 인한 활동 제한 등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국어책임관의 담당 업무 시간을 보장하고, 활동 실적이 우수한 국어책임관이나 해당 기관에 대한 보상책 및 포상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국어책임관 제도의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실제 업무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교육 교재를 배포하는 일도 국어책임관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국어책임관 교육 및 공무원을 위한 국어교육 기회도 확대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서식 등 공문서의 개선을 위해서는 결국 공무원의 전반적인 국어 능력 향상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 스스로 국어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일이 필요하다. 많은 공무원들이 쉽고 정확한 공문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국어책임관들은 ‘관행에 따라 잘못되거나 어려운 공문서를 반복하여 재생산하고 있는 현실’과 ‘공무원 임용 후의 국어교육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공무원의 국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무엇보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어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특화된 국어교육이 필요하며, 의무적으로라도 일정 시간 국어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참조할 수 있는 실무 위주의 자료집도 도움이 될 것이다. 공무원 임용 국어 시험을 현재의 단순 국어 지식들을 진단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임용 후의 실무 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공무원들이 임용 후 공무를 수행하면서 많이 활용해야 하는 부분이 쓰기 및 어휘·어법 능력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요소의 출제 비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2) 계약서, 약관의 국어 사용 개선

계약서, 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한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 「국어기본법」에 약관 언어를 규제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계약이나 약관과 같이 국민 공익에 영향이 큰 문서의 경우 국립국어원이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기관에 약관 문안 감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그 내용일 수 있다. 또한 제정 및 개정된 주요 계약서, 약관을 상시적으로 조사하도록 민관 기관에 의뢰하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이와 관련된 세미나 또는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대중이 같이 심사숙고하는 기회를 갖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3) 공공기관 누리집 언어 사용 개선

‘한글사랑 지원단’을 구성하여 공공언어 누리집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알리는 사업은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이다. 문장 표현이나 어휘 사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명백한 어문규범의 오류나 비문법적인 문장을 제삼자가 객관적인 눈으로 바로잡아준다면 효율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리집은 성격상 정보가 항구적이기보다는 시시때때로 바뀌고 새로 추가되거나 없어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업이 지속적인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한글사랑지원단과 같은 성격의 조직을 상설 기구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누리집을 새로 개설하거나 주요 내용을 수정할 때는 이런 곳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감수토록 하는 것이다. 또는 각 지역에 있는 국어문화원이 이런 역할을 주요 업무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2. 국내외 국어 교육

### 가. 국내 국어 교육

국어교육은 우리말을 바르게 익혀 언어생활을 원활하게 누리고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며, 국민 문화 계승 및 창조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한다.

넓은 의미에서의 국어교육은 가정과 학교, 사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어교육이라고 할 때는 학교기관에서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국어교육은 일반교육으로서의 국어교육과 전문교육으로서의 국어교육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 교양과정에서의 국어교육은 일반교육으로서의 국어교육이고, 대학이나 대학원의 국어국문학 전공 학생에게만 실시하는 국어교육은 전문교육으로서의 국어교육이다. 일반교육으로서 국어교육은 언어기능(말하기·듣기·읽기·쓰기 기능) 교육언어학 교육문학 교육 등을 하위영역으로 포함한다.

### 1) 국어 수업 시수 현황

초·중·고등학교에서 국어교과의 비중은 주당 수업 시수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표는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에 따라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어 관련 수업 시수를 다른 외국어 강의 시수와 비교한 것이다.

〈표 2-3〉 초·중등 국어 관련 수업 시수 현황

과목	학년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선택중심 교육과정	총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2	3	4	5	6	7	8	9	10	11		
국어	210	238	238	204	204	204	170	136	136	136	102	102	2,080	
영어	.	.	34	34	68	68	102	102	136	136	102	102	884	
기타 외국어	.	.	.	.	.	.	.	.	.	.	102	102	204	
총계	210	238	272	238	272	272	272	238	272	272	408	408	3,372	
언어교과 중 국어 비율	100	100	87.5	85.7	75.0	75.0	62.5	57.1	50.0	50.0	25.0	25.0		
연간 총 수업 시간수	830	850	952	952	1054	1054	1122	1122	1122	1190	2380			
전체 과목 중 국어 비율	25.3	28.0	25.0	21.4	19.3	19.3	15.1	12.1	12.1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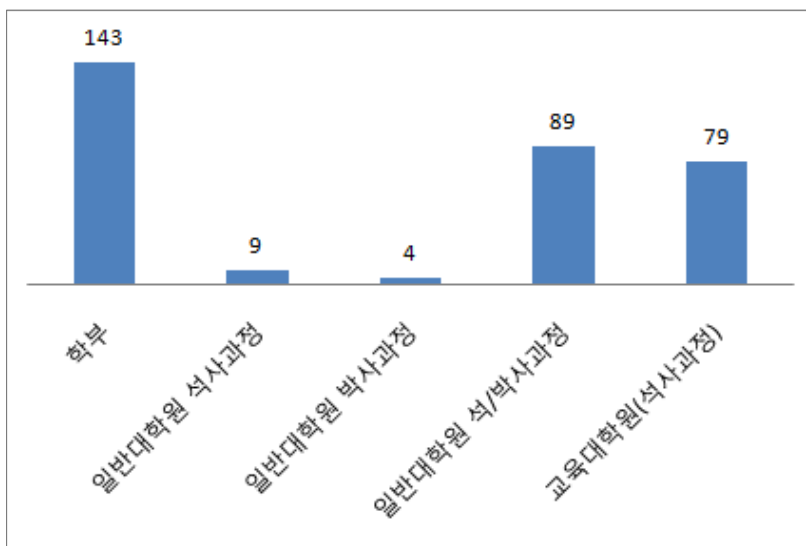
※ 2009. 11.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기준

위의 표를 보면 국어과는 전 교육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저학년으로 갈수록 국어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전체 교과 시간의 25% 이상을 국어교과가 차지하고 있다. 이로써 초등학교 과정에서 국어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학문적·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전체 과목 중 국어 비율이 중학교 1학년은 15.1%, 2~3학년은 12.1%로 계속 낮아지며, 고등학교 1학년은 11.4%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영어 교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국어과는 50%를 약간 초과하는 비중을 보여 학년이 올라갈수록 국어과에 대한 수업 비중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전국 대학의 국어 관련 학과 개설 현황

국어 또는 언어 관련 학과의 명칭으로 대학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왔던 이름으로는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과’ 또는 ‘언어학과’를 들 수 있다. 그런데 국어, 언어, 국어교육 등의 분야가 세분화되고 점차 학과 고유의 전문성을 추구하면서 차별적인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학과 이름으로 ‘언어정보학과’ 또는 ‘언어인지과학과’와 같이 신기술이나 정보, 미디어 등을 강조하는 미래 지향적인 이름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오늘날 국어 관련 학과 명칭은 한층 다양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학부 과정의 학과 명칭뿐 아니라 대학원 과정의 학과 명칭 및 석사·박사 과정 개설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림 2-3] 국어, 언어 관련 전공 개설 대학 수(2009년)

아래 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의 학부에서 국어, 언어 관련 학과를 개설한 대학의 수는 모두 143곳이다. 일반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 관련 학과를 개설한 대학은 89개이고, 석사 과정 또는 박사 과정만을 따로 개설한 대학 수는 각각 9곳과 4곳이다. 전공이 개설된 구체적 학과 명칭 및 개설 대학 수, 각 학과의 평균 전임 교원 수는 다음과 같다.

〈표 2-4〉 국어, 언어 관련 전공 개설 학과 및 학과별 전임교원 수(2009년)

학부	개설 학과		개설 대학 수	전임 교원 수 평균
		국어국문학과		95
	국어교육과		43	6
	문예창작과		10	5
	한국어문학과		7	6
	한국어교육학과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 한국어교원학과		4	4
	언어학과		3	6
	한국어학과		3	5
	미디어문예창작학과		1	4
	미디어창작학 전공		1	3
	미디어문학과		1	6
	언어정보학과		1	4
	언어인지과학과		1	6
	한국언어문학과		1	7
	한국문화정보학과		1	5
일반 대학원	개설 학과	학위 과정	개설 대학 수	
	국어국문학과	석/박	70	
석		5		
박		1		
국어교육과	석/박	5		
	석	1		
	박	3		
문예창작과	석/박	5		
	석	3		
언어학과	석/박	4		
한국어교육학과	석/박	3		
한국어문학과	석/박	1		
언어인지과학과	석/박	1		
교육 대학원	개설 학과	학위 과정	개설 대학 수	
	국어교육	석	76	
	언어치료교육	석	1	
	외국어로서의(의) 한국어교육	석	2	

가장 많이 개설된 국어 관련 학과 이름은 '국어국문학과'로 총 95개 대학의 학부 과정에 국어국문학과 또는 국어국문학전공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다음으로 많은 학과는 국어교육과로 43개 대학의 학부 과정에 국어교육과가 개설되어 있다.

대학원의 경우 국어국문학과에서 석사, 박사 과정이 모두 개설된 대학은 70곳, 석사 과정만 개설된 대학 5곳, 박사과정만 개설된 대학은 1곳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국어교육과를 개설한 대학원 중 석, 박사 과정이 모두 있는 곳은 5곳, 석사과정만 있는 대학 1곳, 박사과정만 있는 대학은 3곳이다.

위의 학과 개설 현황에서는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개설 대학 수 측면에서 국어국문학과가 여전히 전통적인 학과로 입지를 굳히고 있으며 전임 교원의 수에서도 여타 학과들을 앞서고 있다.

둘째, 유사한 학과 명칭이 많으며, 동일한 명칭의 학과라 하더라도 소속된 단과 대학 명칭이 다른 사례가 많다.

셋째, 국어교육학과의 대학원 과정이 매우 부실하다. 학부에서 국어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국어교육학과의 수는 43개인데 동일하게 국어교육 전공의 일반대학원 과정을 석·박사 과정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학은 5곳에 그친다.

넷째, 교육대학원에서 국어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있는 대학이 76개에 이를 정도로 많다. 학부에 국문학과가 개설된 대학 수와 거의 맞먹는 수준인데, 이는 학부에 국어교육학과가 없는 대학, 나아가 사범대학이 없지만 교육대학원에서는 국어교육학과를 마련하고 있는 대학의 수가 상당히 많은 점을 보여준다.

다섯째, 사회적으로 한국어교육, 한국어 교사 양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것이 학과 명칭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 3) 국어교사 임용시험 응시 현황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에 따라 중등 교사 임용 1, 2차 시험을 출제, 인쇄 및 채점을 한다. 16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시험의 시행을 공고하고 원서를 교부·접수하며 문답지 운송, 시험 실시, 3차 시험을 관리하고 합격자 발표를 담당한다. 각 연도의 시험은 시험 시행 연도가 아닌 응시자들이 선발될 연도의 명칭을 붙인다. 예를 들어 2010년에 선발될 교사들을 뽑는 '2010년 임용시험'은 2009년



에 접수 및 응시가 이루어진다.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2009년에 밝힌 2010년 국어과 공립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시험 응시 인원 및 최종 선발 인원, 경쟁률은 다음과 같다.

〈표 2-5〉 2010년 16개 시·도 국어과 공립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 현황

(단위: 명)

지역	모집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		
	일반	장애인	일반	장애인	일반	장애인	
서울특별시	61	4	3206	17	52.6	4.3	
도 (9)	강원	14	1	562	8	40.1	8.0
	경기	100	6	3654	29	36.5	4.8
	경남	25	1	1116	6	44.6	6.0
	경북	21	2	820	9	39.0	4.5
	전남	4	0	221	0	55.3	0
	전북	12	1	641	12	53.4	12.0
	제주	11	1	388	2	35.3	2.0
	충남	35	2	863	8	24.7	4.0
	충북	9	1	388	5	43.1	5.0
광역시 (6)	광주	5	1	374	8	74.8	8.0
	대구	19	2	817	12	43.0	6.0
	대전	17	1	739	13	43.5	13.0
	부산	14	1	583	7	41.6	7.0
	울산	18	2	758	19	42.1	9.5
	인천	17	1	808	7	47.5	7.0
계	382	27	15938	162	41.72	6.0	

전체 지역의 평균 경쟁률은 일반 전형 41.72 : 1, 장애인 전형 6.0 : 1이다. 중등의 임용시험 경쟁률은 어느 교과 할 것 없이 높지만 국어과의 경우에 특히 임용 경쟁률이 치열하다.

일반 전형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한 지역은 100명을 선발한 경기도이다. 이어 서울, 충남, 경남, 경북, 대구, 울산, 대전 및 인천, 강원 및 부산, 전북, 제주, 충북, 광주, 전남의 순으로, 가장 적은 인원을 선발한 전라남도의 선발 인원은 4명이다.

#### 4) 평생교육 기관의 문해 교육 현황

최근 성인 기초 교육과 문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성인 기초 교육과 문해 교육에 대한 제도적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을 지속시키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평생교육 기관에서 문해 교육이 운영되는 상황과 국내 문해 교육의 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2-6〉 2009년 문해 교육 기관과 프로그램 수

	출처: 〈2009 평생교육백서〉 (평생교육진흥원)			출처: 〈평생 교육 프로그램 분류 체계 연구〉 (평생교육진흥원)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 기관 수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 지역 전체 프로그램 수	대학 부설 평생 교육 : 성인 기초 문자 해득 프로그램 수	2009년 평생 교육진흥원 정책 사업 프로그램 중 '기초 문해 교육' 프로그램 수
2009년	353	1,292	18	38

2009년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기관 수는 전체 353개였으며,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의 지역 전체 프로그램 수는 1,292개였다. 그 가운데 대학 부설 평생 교육 기관에서의 기초 문자 해득 프로그램 수는 18개였다. 한편, 2009년 평생 교육 진흥원의 정책사업 프로그램 중에서 '기초 문해 교육'에 해당되는 프로그램 수는 38개로 조사되었다.

문해 교육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2006년부터 국민 기초 능력 향상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저학력 성인에게 제2의 교육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은 「평생교육법」 제6장의 문자 해득교육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문해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초·중학교 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문자 해득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09년은 이러한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이 진행된 지 4년차가 된 해로, 지난 3년간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에 참여한 문해 교육기관 중 우수한 기관을 선발하여 지역 거점 기관 육성비가 지원되었다. 이러한 직접 지원과 더불어 성인 학습자의 문해 교육 참여 촉진을 위한 문해 교육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중학 과정 교과서 개발 등의 간접 지원도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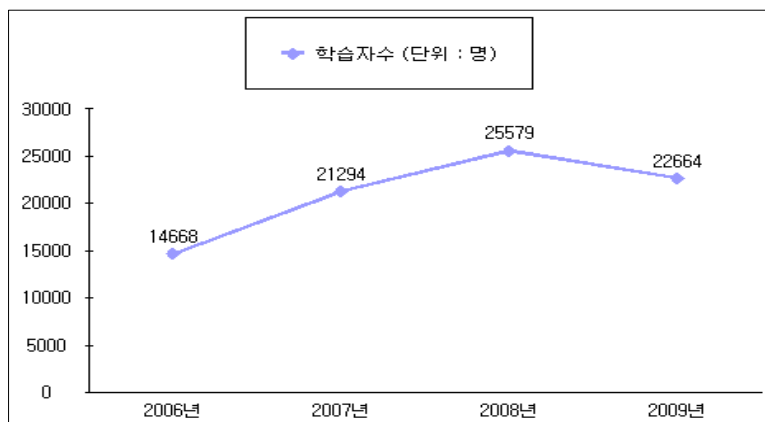
2009년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관의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2009년 평생교육백서』).

〈표 2-7〉 2009년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 지역별 기관 수

지역	지원 기관 수	
	기관 수 (개)	비율(%)
서울	76	21.5
부산	33	9.3
대구	13	3.7
인천	15	4.2
광주	16	4.5
대전	8	2.3
울산	8	2.3
강원	12	3.4
경기	34	9.6
충북	20	5.7
충남	24	6.8
경북	17	4.8
경남	19	5.4
전북	23	6.5
전남	32	9.1
제주	3	0.8
계	353	100.0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의 지역별 프로그램 수는 서울이 가장 많다. 서울은 266개의 프로그램 수를 갖고 있었으며, 전남이 162개로 두 번째로 많은 프로그램 수를 갖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8개로 가장 적은 프로그램 수가 조사되어 지역별 격차를 보여준다.

2006년~2009년의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에 참여한 학습자의 수는 다음과 같다.



[그림 2-4]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 참여 학습자 수 현황 (2006~2009년)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이 시작된 2006년에는 14,668명으로 가장 적은 학습자 수를 보였지만, 2008년에는 25,579명으로 학습자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 수치는 2009년에는 22,664명으로 감소하였다. 향후 국민의 문해 능력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해 교육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나. 국외 국어 교육

재외국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 기관으로 '한글학교'가 있다. 한글학교는 재외국민에게 한국어, 한국 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등록된 비정규 학교를 말한다.

한글학교의 교육생은 주로 동포 2~3세나 자상사 직원의 자녀로 구성되며 일부 외국인들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2009년 현재 110개국 2,111개소의 한글학교가 등록되어 있으며(143개 재외공관을 통해 등록), 14,870명의 교원에 교육생은 128,046명(성인 20,408명, 학생 107,638)에 이른다.

〈표 2-8〉 한글학교 대륙별 현황(2009년)

지역별	학 교		교 원	교육생
아 시 아	22개국	334개	2,520명	25,731명
북 미	2개국	1,060개	9,661명	58,825명
중 남 미	20개국	72개	592명	4,295명
유 럽	24개국	109개	739명	4,797명
중동아프리카	33개국	41개	287명	1,339명
C I S	9개국	495개	1,071명	33,059명
계	110개국	2,111개	14,870명	128,046명

지역별로는 북미가 1,060개소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CIS 그리고 아시아 순이다. 운영 주체는 종교단체가 67%로 가장 많으며, 개인이 운영하는 곳도 23%에 이른다. 그 밖에 한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비율이 10%이다. 시설로 자체 건물을 확보한 곳은 58%이며, 임대료가 34%이고, 확인되지 않은 곳이 8%이다. 10명 이상의 교원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 전체 한글학교의 24%에 이르며, 5~9명 사이가 33%이고, 5명 이하가 가장 많은 43%이다. 교육생 규모는 64%가 50명 이하로 가장 높고, 50~90명 사이가 20%, 100명 이상의 규모는 16%이다.

한글학교는 주로 주말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수업이 있으며, 평균 수업 시간은 주당 2~6시간 내외이다. 한글학교 지원업무는 1997년까지는 교육부에서 담당했으나 1998년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되면서 예산 지원은 외교통상부의 재외동포재단이 담당하며, 교재보급 및 교원연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국제교육원이 담당하고 있다.

### 3. 국내 한국어 교육

#### 가. 국내 한국어 교육기관 현황

한국어 교육기관의 주요 공급원으로는 1)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 2)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 3) 국내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4) 국내 시설 한국어 교육 기관 5) 자원봉사 단체 6) 정부 산하의 한국어 교육 기관 7) 기업체 내의 한국어 교육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가장 적극적으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대학이다. 현재 대학에서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육 기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9〉 국내 대학의 한국어 교육 기관 현황(2010년)

교육 기관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학부	대학부설 교육기관	합계
기관 수	36개	22곳	31개	144개	233개

학부의 경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로 학과를 개설하거나 국어국문학과가 학과명을 ‘한국어학과’ 등으로 바꾸고 「국어기본법」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교육 과정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었다. 31개 학부는 지역별로는 강원(2), 경기(3), 경북(4), 광주(2), 대구(2), 부산(2), 서울(5), 전남(2), 전북(2), 충남(3), 충북(1)의 분포를 보인다. 일반대학원이나 교육대학원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주전공으로 하는 학과가 개설된 경우와 대학원의 국어국문학과나 교육대학원 전공 가운데 하나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두는 경우가 있다.

대학의 정규 과정인 학부,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에서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 교수 방법 교육을 통해 한국어교원을 양성하는 것이 주목적인 데 반해 대학부설 교육기관의 경우 한국어교원을 양

성하거나 실제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수행한다.

## 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 현황

### 1)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현황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국어기본법」 제19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에 근거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실시하고 있다. 소관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와 국립국어원(한국어교육진흥과)이며, 2006~2008년에는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시험을 주관했으나 2009년 이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 받아 시행하고 있다.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12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시험은 매년 1회 실시되며,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시험으로 나뉘는데, 1차 필기시험은 4개 영역에서 40% 이상 득점을 하고 총 점의 60%인 180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2차 시험인 면접시험에서는 주로 교사로서의 태도 및 소양, 한국어 능력 등을 평가한다.

〈표 2-10〉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험 내용 및 합격 기준

1차 시험(필기)	2차 시험(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개 영역</li> <li>- 한국어학(60문항, 90점)</li> <li>-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20문항, 30점)</li> <li>-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93문항, 150점)</li> <li>- 한국문화(20문항, 30점)</li> <li>○ 1차 합격 기준</li> <li>- 4개의 각 영역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300점)의 60%인 180점 이상 득점 시 합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 내용</li> <li>- 한국어 교사로서의 태도 및 교사상</li> <li>- 교사의 적성 및 교직원</li> <li>- 인격 및 소양</li> <li>- 한국어능력 평가</li> </ul>

2006년 첫 시험이 있던 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 시험이 실시되었다. 2006년 첫 시험의 응시자가 1,022명이었던 데 반해 2010년에는 2,564명으로 늘어났다. 한국어교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추세, 그리고 지난해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누적되는 것이 응시자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표 2-11〉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연도별 실시 현황

(2011. 6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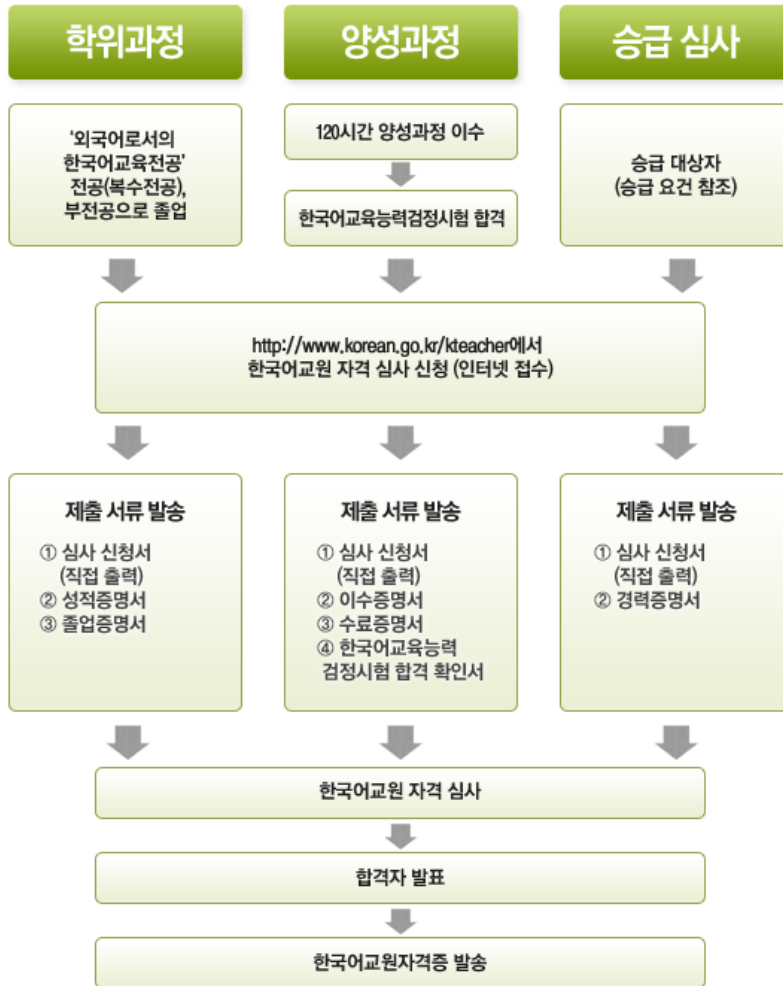
연 도	필기시험			면접시험			총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2006 (1회)	1,022	383	37.5%	373	342	91.7%	33.5%
2007 (2회)	1,662	504	30.3%	494	455	92.1%	27.4%
2008 (3회)	1,828	454	24.8%	448	439	98.0%	24.0%
2009 (4회)	2,196	1,148	52.3%	1,141	807	70.7%	36.7%
2010 (5회)	2,564	587	22.8%	587	551	93.8%	21.5%
계	9,272	3,076	33.1%	3,076	2,594	84.3%	28.0%

필기시험의 합격률은 약 33%이며, 면접시험의 합격률은 84%로 총 합격률은 28.0%이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응시자 가운데에는 학부의 국어국문학과 출신뿐만 아니라, 대학원에서 국어학이나 한국어교육학을 전공하는 석·박사 전공자가 적지 않으므로 비전공자의 합격률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셈이다.

## 2)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 현황

‘한국어교원’이란 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국어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단기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을 거쳐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통과했거나, 대학(원)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과정을 이수한 졸업자가 국가에서 부여하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림 2-5]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신청 절차

<표 2-12>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자 및 교원 양성기관 현황('10년 5월 기준)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5월	누계
자격증 취득자 수	868	693명	842명	1,037명	2,157명	5,597명
대학(원) 전공학과	40개소	-	69개소		85개소	
단기양성기관	34개소	-	54개소		92개소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자 수는 2006년 868명, 2007년 693명, 2008년 842명, 2009년에는 1,037명, 2010년 5월 현재 2,157명으로 누계가 5,597명에 이른다. 2009년을 기점으로 한 해에 1,000명을 넘는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자가 생겼는데, 이는 최근 불어온 한국어교육 열풍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어교원 자격자의 수가 수요자(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의 수를 넘어서고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여성 결혼 이주민의 증가와 한류가 동남아를 넘어 유럽, 북남미 호주 등 점차 세계로 확산되는 분위기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 상승을 고려할 때 당분간 한국어 학습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교원들은 국내·외 대학 및 부설기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의 초·중·고등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국외 세종학당,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학원 등에서 한국어 및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발휘하여 한국어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 4. 국어 관련 민간단체

국어 정책은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과 활동 내용을 갖는 민간 차원의 역할이 크다고 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어 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민간 국어 관련 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정부가 추진하기 어려운 국어 정책을 민간을 통해 수행한다든지, 또는 국어 정책에 관한 민간단체의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국어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는 학회, 연구소, 단체 등 그 설립 목적과 취지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 12월 현재 파악되고 있는 국어 관련 단체는 학술대회 개최나 학회지 발간 등 연구 목적의 학회가 53개, 국어 상담·국어문화 운동·한글문화 운동·한글 글꼴 개발·한글 이름 등 국어 관련 활동 중심의 단체가 20개, 사전 편찬이나 특정 주제를 심화 연구하는 연구소가 12개, 한국어세계화나 세종대왕 기념사업 등을 담당하는 재단/법인 4개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표 2-13〉 국어 관련 단체 통계

(2010년 12월)

형태	단체수
학 회	53개
단 체	20개
연구소	12개
재단/법인	4개
합 계	89개

### 가. 국어 관련 단체

국어 관련 단체 현황 및 주요 사업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14〉 국어 관련 단체 현황 및 주요 사업

(2010년 12월)

일련 번호	단체명	개요	주요사업	비고
1	국어단체연합	2006년 국어상담소를 인가받기 위하여 국어 단체 몇몇 대표자가 모여 만든 임시 단체.	‘국어단체 국어문화원’이 있음.	단체
2	국어문화운동본부	국어 진흥과 국어 환경 개선, 국어 문화 발전, 한국어의 국외 보급을 위해 노력	한국어 보급을 위한 대회 한국어 상담, 문장 교정 한국어 순화 사업 한글 정보화, 산업화 관련 사업 지역어 발굴과 사업 등	단체
3	국어순화추진회	한글 전용으로 글자 생활의 민주화와 민족 문화 향상	국어순화자료집 우리말 순화의 어제와 오늘 한글과 겨레 문화(’96)	단체
4	세종대왕생가터복원준비위원회	최근 조직된 단체, 세종대왕 생가터 복원을 목적으로 함	한글단체 대표들이 세종대왕 생가터 복원 건의문 전달	단체
5	우리말바로쓰기모임	우리말 바로쓰기 운동 목적	‘우리말 바로 쓰기’ 강연회 개최	단체
6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우리말의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	매년 우리말 해침꾼을 선정하여 발표	단체
7	전국국어교사모임	전국 현직국어교사연합모임	국어 교육 관련 연구 및 출판 활동	단체
8	전국국어운동대학생동문회	전국 대학생 중심 국어운동 목적	강연회 개최 및 회지 발간 국어 정화 및 우리말 애호 운동	단체
9	짚신문학회	우리 문학 활동을 목적으로 결성됨	문학 활동을 주로 하는 모임	단체

일련 번호	단체명	개요	주요사업	비고
10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	우리 문화 보존 목적	강연회 개최 및 출간	단체
11	한겨레말글연구소	우리 민족 말글 연구 목적	학술 발표회 개최(년 1,2회)	단체
12	한국방송(KBS) 한국어연구소	방송 언어에서 축적한 음성 언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올바른 표준 한국어 사용을 위한 연구와 표준어 보급	한국어 연구 논문집 발간	단체
13	한국어문기자협회	신문과 방송 언어를 중심으로 한 우리말 연구를 통해 언어문화와 신문·방송 발전에 기여	〈말과글〉 발행 신문·방송·어문교열기자·아나운서 대상 세미나	단체
14	한글문화단체모두모임	한글 문화 운동 목적	한글 인터넷 주소 추진	단체
15	한글문화연구회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나라말을 살려내고 이를 다듬고 가꾸어 한글 문화 증흥에 기여	국어사전 작업을 주로 하는 단체	단체
16	한글문화연대	우리 말글을 가꾸며 우리 문화와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민간단체	학술 운동 한글문화, 시민운동 전개 관련 단체와의 대외 협력 추진	단체
17	한글문화원	한글 기계화 운동	한글 자판 연구와 세벌식 자판 보급	단체
18	한글사랑운동본부	한글 글꼴이나 한글 디자인 쪽에 관심 있는 신생 단체	한글 문화 상품 개발 한글 문화 상품 공모전 개최 한글 사랑 서각전 개최	단체
19	한류전략연구소	근래에 생긴 단체, 회원 없음	한글 관련 디자인 사업	단체
20	한말글문화협회	한글 전용 및 기계화를 위한 한글 학회 내의 운동 모임	‘한글새소식’ 창간, 한글큰잔치 준비 성명서 제출	단체
21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겨레말을 남과 북이 공동으로 채집·연구하고 겨레말큰사전 을 편찬함으로써 겨레의 말과 글의 통일과 모국어 공동체의 형성, 나아가 남북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겨레말큰사전》 편찬 소식지 〈겨레말 소식〉 발간 웹진 ‘누리판’ 발간	법인
2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업을 추모하고 이를 보존·선양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57년에 설립된 사단법인체	세종실록 국역, 고전 국역 세종대왕 관련 서적 발간 한글 기계화 세종대왕기념관 관리·운영	법인
23	외솔회	외솔 최현배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단체	〈나라사랑〉 발행 매년 외솔상 시상	재단
24	한국어세계화재단	한국어의 세계 보급 및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진흥에 이바지	교재 및 기초 학습 사전 개발 한국어 교사 양성, 국제학술대회 개최	재단

일련 번호	단체명	개요	주요사업	비고
25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국제화된 세계 시민 양성을 교육 이념으로 경희인의 국제화와 외국인 및 재외 동포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한국어, 외국어, 한국학에 대한 질 높은 연구와 교육	〈국제교육소식〉 발간 한국어 교육	연구소
26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의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함으로써 민족 문화의 자기 주체성을 확고히 하고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민족 문화 창조	〈민족문화연구〉, 〈민연소식〉 발간 한국학 연구 성과 출판 정기 학술대회	연구소
27	고려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한국어 및 각종 외국어를 대상으로 대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자연언어 처리 및 인문·사회과학적 연구 추진	〈언어정보〉 발간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연구소
28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국어 교육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연구 개발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어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한국어문교육〉 발간	연구소
29	국어교육연구소 (서울대 교육종합연구원)	국어 교육의 학문적 체계를 위한 기초적, 실질적 연구와 그 보급을 위한 현장 교육 연구	국어교육연구 발간 정기 학술 발표회 개최 교과서 및 한국어 교재 개발 국어 능력 측정 방안 연구 전국 중·고등학생 국어경시대회 개최 국어질문방 운영	연구소
30	국어문화원	국어기본법에 의해 각 지역에 설립된 국어단체 (전국 18개소)	국어상담 한국어 교육 국어교육 국어관련행사 언어환경 개선사업 지역어조사 사업	연구소
31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편찬실(고려대)	실제 국어 생활에 필요한 명시적이고 유용한 언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사전 제작	국어사전편찬	연구소
32	어문학연구소(국민대)	어문학 분야의 연구 활성화, 각종 정보 지원을 목적으로 함	〈어문학논총〉 발간	연구소
33	언어문화연구원	언어문화 연구 목적	언어문화 연구지 발간	연구소
34	언어연구소(한국외대)	개별 자연 언어의 음운, 형태, 통사 및 의미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과 다양한 언어 간의 대조 연구를 수행	〈언어와 언어학〉 발간	연구소
35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국어학과 전산 기술의 접목, 사전 편찬학, 말뭉치 언어학 등 새로운 첨단 학문 분야의 개척과 국어정보화 사업에 주력 *1986년 '한국어사전편찬실'이라는 이름으로 설립	사전편찬 데이터베이스구축 국제학술대회 개최 "연세 한국어 대사전" 편찬	연구소

일련 번호	단체명	개요	주요사업	비고
36	한국어문학연구소	우리말 우리글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교육과 연구의 바른 방향을 모색함	〈어문논총〉 발행 전국학술대회 개최	연구소
37	구결학회	차지표기를 중심으로 하여 국어사를 중점적으로 연구	〈구결연구〉 발간 전국학술대회 및 국제학술회의 개최 매월 월례강독회 개최	학회
38	국어교과교육학회	국어 교육학의 이론을 탐구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모색하여, 올바른 국어 교육의 기초를 마련하고, 국어교육의 연구 결과를 일반화함으로써 국어 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학술대회 개최 〈국어교과교육연구〉 발간	학회
39	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학 연구를 통하여 국어 및 국어교육의 발전을 도모함	〈국어교육연구〉 발간 학술발표대회 개최	학회
40	국어교육학회(경북대)	중등학교 국어 교육에 관한 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어 교육의 이론과 이에 대한 교육 현장에서의 실천적 노력을 함께 추구	〈국어교육연구〉 발간 전국 학술 대회 개최	학회
41	국어교육학회(수원대)	국어 교육을 성찰하고 더욱더 비람직한 방향으로 연구를 발전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학술 대회와 논문집을 통해 연구 결과물 생산	〈국어교육연구〉 발간 전국 학술 대회 개최	학회
42	국어국문학회	국어학 및 국문학을 연구함으로써 민족정신을 양양하여 세계문화에 기여	〈국어국문학〉 발간(연 3회)	학회
43	국어정보학회/ 한국어정보학회	국어 정보 처리의 이론 체계 정립과 기술 향상을 통한 정보 산업 성장 지원, 국어 정보 처리 기술의 보급 및 표준화	〈한국어정보학〉 발간 학술대회 및 토론회 개최	학회
44	국어학회	순수한 국어학의 연구와 보급 및 연구자 간 친목 도모	〈國語學〉 발간 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 개최	학회
45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코리아학 연구 발전 및 연구자의 교류와 친목 도모	국제고려학회 논문집 발간 전국 학술 대회 개최	학회
46	국제어문학회	국어학, 국문학, 국어 교육학 연구와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함	국제어문 발간 정기 학술 대회 개최	학회
47	국제한국어교육학회 (IAKLE)	국내외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자의 발전을 목적으로 1985년 설립된 국내 한국어교육 최대 학회	학회지와 소식지 발간 학술대회, 연수회 개최 한국어 교재 및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학술 자료 발간 정보 교환 및 학문적 협조	학회

일련 번호	단체명	개요	주요사업	비고
48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INK)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진 국내외 학자와 교육자가 한국어 교육학의 학문적 정립과 한국어의 세계적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한 학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논문집 발간	학회
49	국제한국언어학회	북미한국언어학회 조직을 위한 특별준비위원회 학회 결성 발표, 아시아연구회와 연합 학술 교류 증진	정기 학술대회 개최 국제학술대회 개최	학회
50	담화인지언어학회	담화문법, 인지언어학, 화용론을 연구하여 언어 연구 발전에 기여하는 학회	학술대회 개최 연구 윤리규정의 제정 확보	학회
51	대한언어학회	어학, 국문학, 국어언어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그 활용을 통하여 언어학 발전에 공헌	학회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산하 연구학회 운영	학회
52	돈암어문학회	국어국문학을 연구하고, 그 학풍을 계승, 발전 시킴	학술대회 개최 〈돈암어문학〉 발간	학회
53	배달말교육학회	외국어 교육과 다르게 되어야 한다는 것에서 출발하여 국어 교육 개선에 이바지	〈배달말교육〉 발간	학회
54	배달말학회	배달말·글에 관한 연구 및 연구 결과의 보급을 통하여 배달 거래의 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이 목적	〈배달말〉 발간 국내 전국학술대회 개최	학회
55	어문연구학회	국어학, 국문학, 민속학, 한문학을 연구함으로써 향토 문화의 고유성을 중점 계발하여 민족 문화 창달에 기여	〈어문연구〉 발간 학술 대회 개최	학회
56	영주어문학회	국어학 및 국문학을 연구하고 자료를 발굴 정리 하며, 연구 결과의 평가를 통해 이론을 정립함으로써 국어국문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	〈영주어문〉 간행 연구 발표회 및 학술토론회 개최	학회
57	우리말교육현장학회	나라 안에서의 국어교육과 나라 인밖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현장 문제를 연구	〈우리말교육현장연구〉 발간 전국학술대회 개최	학회
58	우리말글교육학회	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고 국어교육에 대한 학술정보 교환	〈우리말글교육학회〉 발간 세미나 개최	학회
59	우리말글학회	우리말과 우리글(국어학, 국문학, 국어교육학)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우리 문화 창달에 이바지	〈우리말글〉 발간 전국학술발표대회 개최 매월 월례발표회 개최 우리말글 학술상 수여	학회
60	우리말학회	국어학 및 관련 학문을 연구하며 좁게는 언어학 넓게는 타 학문과의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함	〈우리말연구〉 발간 전국학술대회 개최	학회
61	우리어문학회	우리의 언어와 문학의 제반 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	〈우리어문연구〉 발간 전국학술대회 개최	학회

일련 번호	단체명	개요	주요사업	비고
62	이중언어학회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한 이론적 연구와 응용 사업 추진을 위해 1980년대 설립된 최초 한국어교육 관련 학회	학회지 및 학술자료 발간 학술대회 개최 외국어교육학의 연구와 교류	학회
63	이화어문학회	국어국문학 연구를 통해 회원 간의 학문적 함양과 학계의 연구 풍토 조성에 이바지함	〈이화어문논집〉 발간 정기 논문 발표회	학회
64	한국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의 발전을 위한 과학적 연구와 올바른 국어생활 실천	〈새국어교육〉 발간 교과서, 학습 지도 방법 연구 및 국어 교육자료 제공	학회
65	한국문법교육학회	국어 문법의 논리적 체계를 재정립하고 문법 교육의 효율적인 방법론을 연구하여 이를 국어 교육 현장에 반영	〈문법교육〉 발간 학술대회 개최	학회
66	한국문학언어학회	국어국문학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 언어와 문학의 발전 및 세계화에 기여	〈어문론총〉 발간 전국학술대회 개최	학회
67	한국방언학회	방언을 학술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그 연구 결과물을 보급함으로써 언어·문화 발전에 기여	〈방언학〉 발간 국내 학술대회 개최	학회
68	한국사회언어학회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상황을 연구하는 목적	학회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학회
69	한국알타이학회	한국과 주변 알타이 제민족의 언어, 문화, 역사, 민속 등 문화 전반에 대하여 연구	〈알타이학보〉 발간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학회
70	한국어교육학회/ *구 한국국어교육 연구학회	국어교육의 이론 및 실체에 관한 제반 연구를 함으로써 우리 나라 국어교육 향상에 이바지	학술대회 개최(매년 2회) 〈국어교육〉 학회지 발간	학회
71	한국어문교육학회	회원들의 연구 의욕을 북돋우고 학회지 발간을 통하여 한국 어문 교육 발전에 기여함	〈어문학연구〉 발간 학술답사 전국학술대회	학회
72	한국어문학교육학회	국어국문학과 국어 교육 분야의 연구에 힘써 해당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민족 문화 창달에 이바지함	〈한어문교육〉 발간 학술 발표회 개최	학회
73	한국어문학연구회	어문학에 대한 연구 및 연구 결과의 보급을 통하여 한국의 어문학 발전에 이바지함	〈한국어문학연구〉 발간 전국학술대회 개최	학회
74	한국어문학회	국어국문학을 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 및 세계 문화의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전국 학술대회 개최 〈어문학〉 학회지 발간	학회
75	한국어문회/ 한국어문교육연구회	국어국문학 학술연구와 한자교육을 통한 국어 교육 정상화를 목적으로 함	한지능력검정시험 개최 장학사업 및 한자교육 사업	학회
76	한국어의미학회	국어 의미론 연구에 뜻을 둔 회원 상호간의 학술 정보 교환 및 연구 활동의 진작과 친선 도모	〈한국어의미학〉 발간 학술발표대회 개최	학회

일련 번호	단체명	개요	주요사업	비고
77	한국어학회	한국어학에 대한 연구 활동을 통하여 한국어학의 발전 및 이를 통한 사회적 기여를 목적으로 함	〈한국어학〉 발간 전국학술대회개최	학회
78	한국언어문학회	한국어, 한국 문학을 연구하여 한국 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 간의 학술 교류 및 학문 증진을 도모함	〈한국언어문학〉 발간 전국학술대회 개최	학회
79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의 활성화를 꾀함	〈언어와 문화〉 발간 전국학술대회 개최	학회
80	한국언어학회	언어의 일반 이론 연구와 개별 언어의 연구를 목적	〈언어학〉 발간(연 2회) 학회 소식(계간)	학회
81	한국언어학회	언어의 이론적 연구와 그 응용이 목적	〈언어〉 발간(계간) 소식지 발행	학회
82	한국음성학회	음성학, 음운론, 음성 공학, 음성 의학, 언어 치료, 인지 과학 등 음성의 이론적 연구와 실제적 응용에 관련된 사업의 수행	〈말소리와 음성과학〉 발간 전국학술대회 개최	학회
83	한국지명학회	지명을 조사, 정리, 연구하여 지명과 관련된 학술 발전에 기여함	〈지명학〉 발행 전국학술대회 개최	학회
84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전국의 교육대학 국어교육과 교수진과 대학원생들 간의 학문적 교류를 활성화하며, 한국 초등 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촉진함	〈한국초등국어교육〉 발간 학술대회 개최	학회
85	한국화법학회	화법학, 화법 교육의 이론과 실제 등에 관하여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화법론 발전과 화법 교육의 향상에 기여	〈화법연구〉 발간	학회
86	한글학회	한글의 연구, 통일,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학술단체 (*1908년 국어연구학회가 모체임)	한글만 쓰기 운동 국어의 순화운동 한글의 기계화운동 조선어사전 편찬 추진 교육 및 학술지 발간	학회 /법인
87	한말연구학회	한글 전용 운동을 지지하고 추진함과 아울러 한말(한국어)과 한글의 연구를 목적으로 함	〈한말연구〉 발간 국어학 도서의 발간 전국학술대회 개최	학회
88	한민족어문학회	국어국문학을 연구함으로써 민족 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한민족어문학〉 발간	학회
89	훈민정음학회	훈민정음을 비롯한 세계 문자를 연구하며 무문자 언어 사용자에게 보급하기 위한 이론적 연구를 수행	〈SCRIPTA〉 발간 전국학술대회 개최 무문자 언어 사용 자에게 훈민정음 보급	학회



## 제2절 국외 현황

###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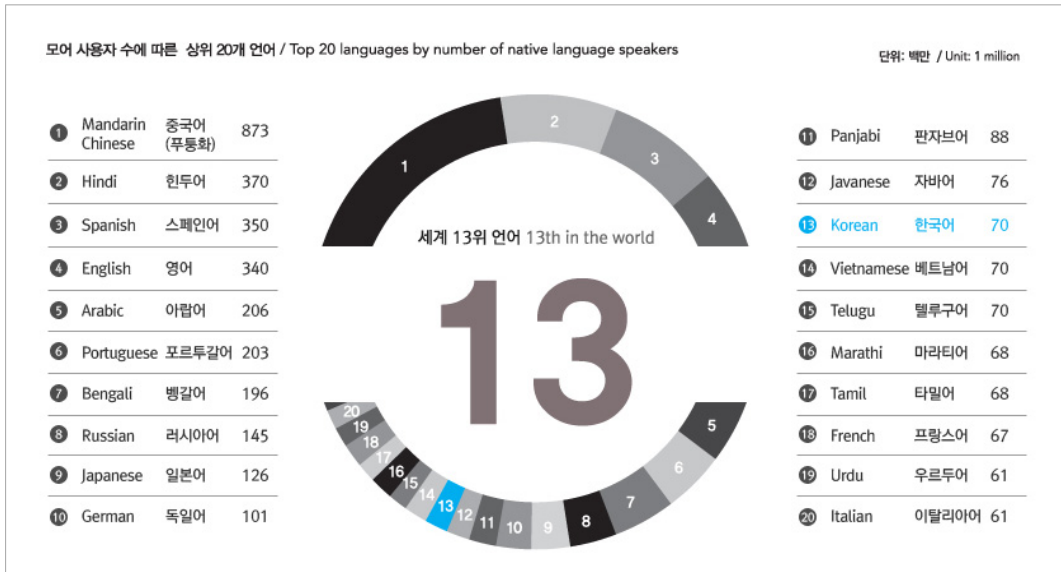
1990년대 말부터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일기 시작한 한국 대중문화의 열풍과 지속적인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의 상승은 이제 단순한 대중문화 수용 차원을 넘어 한국에 대한 선호현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유사 이래 겪어보지 못한 한국어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한국어 해외 보급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국어 사용 인구, 한국어 보급 기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및 한국어능력평가와 해외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 대한 현황을 수치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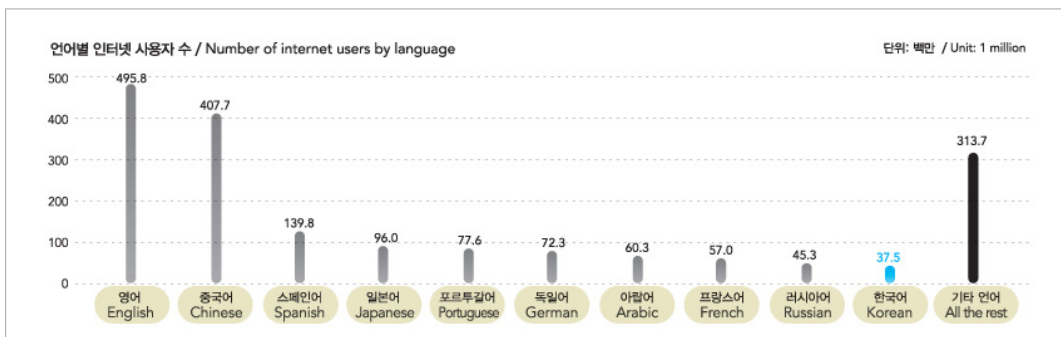
### 2. 한국어 해외 보급

#### 가. 한국어 사용 인구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약 77,000,000명으로 추산된다. 세계에는 약 6,900여 개의 언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인구로 볼 때 세계 13위를 차지하는 언어이다(Ethnologue 2005). 그러나 8위인 러시아어 사용자 수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등 순위 간 격차가 커서 국어 사용자 수가 순위만큼 우세한 형국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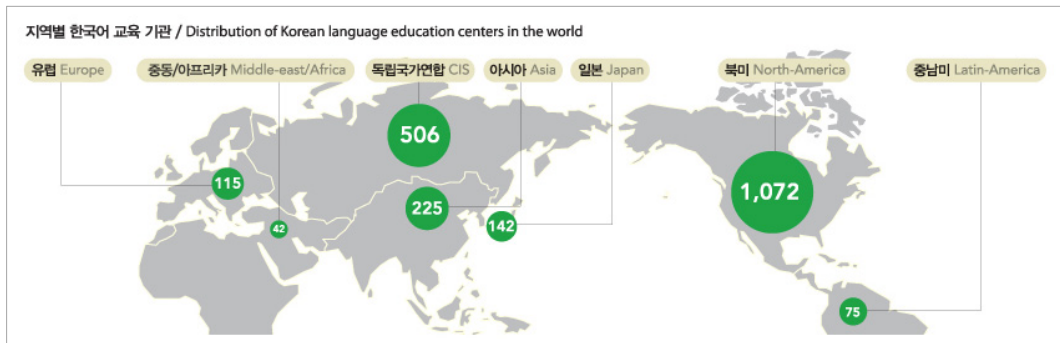


한편 언어별 인터넷 사용자 수 순위에서 한국어 사용자는 3,750명으로 세계 10위를 차지하고 있다(출처: Internet World Statistics 2009). 또 2007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한국어를 9번째로 국제 공개어로 채택하였다. 단일 민족인 한국민의 절대 다수가 한반도에 국한하여 거주한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높은 순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어 사용자는 수를 기준으로 지구상에서 그리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나 국제 사회의 언어 생태계 내에서는 상당히 높은 위상을 구가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적·문화적 발전에 힘입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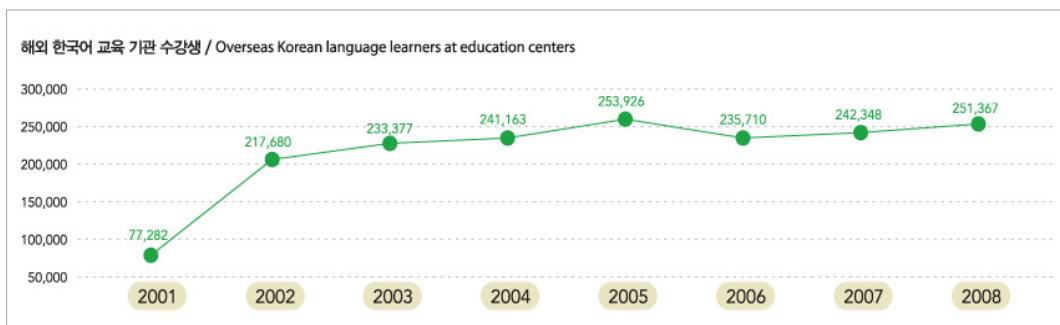


## 나. 한국어 보급 기관

한류 및 국가 브랜드 가치의 상승으로 한국어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시아 대륙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 한국어 보급 기관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해외 한국어 보급 기관은 2009년 현재 전 세계에서 2,177개가 운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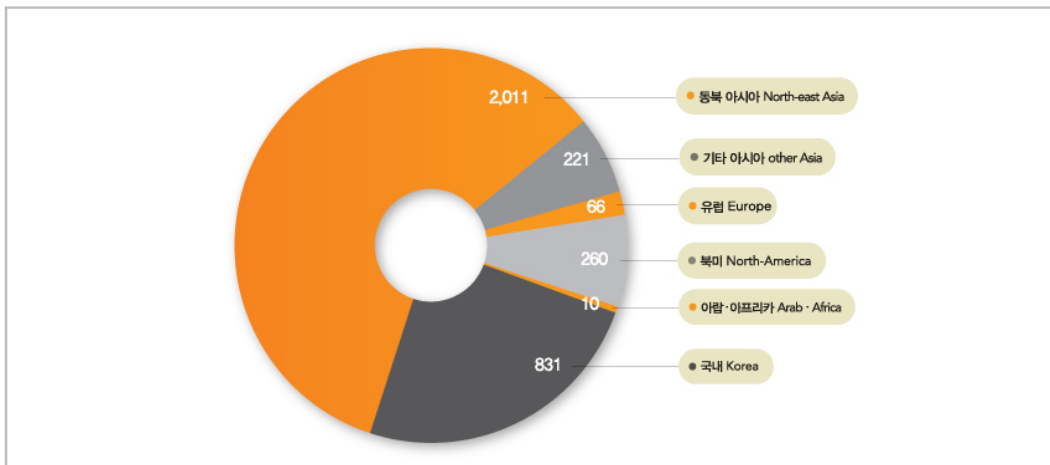
과거의 통계를 보면 2001년 7만여 명이었던 해외 한국어 교육 기관의 한국어 수강생은 2008년에는 251,361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생겨난 한국에 대한 호감은 한국인,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한국어 보급 기관과 한국어 수강생 확보는 국력 증진에 힘입은 결과이지만 반대로 국력 증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에 이바지한다고 할 수 있다.



### 다. 한국어 교재

21세기에 들어 새로운 한국어 사용자가 늘고 있다. 국립국어원(2009)의 『국내외 한국어 교재 백서』에 따르면 1864년부터 2009년 1월까지 국내외에서 발간된 한국어 교재는 2009년에 33개 국어, 3,399권에 이르렀다. 해외에서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제작된 교재가 많다. 교류가 적은 아프리카나 아랍, 중남미의 언어권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재는 미미한 편이다.

3,400권의 한국어 교재 3,400 Korean Language Text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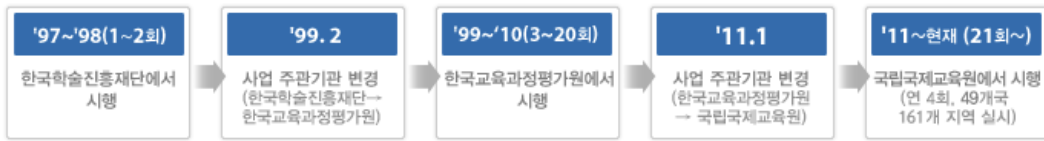


### 라. 외국인 대상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

####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현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능력시험은 공인시험 2개와 민간인증시험 10여 개가 있다. 공인시험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고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 노동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이 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어 보급을 확대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대학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1997년부터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행하였으며 2011년부터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그림 2-6] 한국어능력시험(TOPIK) 연혁

1997년부터 2010년까지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지원자, 응시자, 합격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sup>1)</sup>

〈표 2-15〉 연도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지원자, 응시자, 합격자 현황

(단위: 명)

연도	회차	지원자	응시자	합격자
1997	제1회	2,692	2,274	711
1998	제2회	3,227	2,663	1,011
1999	제3회	3,926	3,445	2,513
2000	제4회	5,976	4,850	2,920
2001	제5회	7,475	6,049	3,364
2002	제6회	8,788	7,306	4,534
2003	제7회	12,187	10,416	6,362
2004	제8회	17,545	15,279	9,558
2005	제9회	26,611	23,401	14,548
2006	제10회	34,028	30,270	16,456
2007	제11회	13,247	12,030	7,655
	제12회	36,886	31,783	19,112
2008	제13회	31,796	26,864	17,449
	제14회	42,497	36,596	18,881
2009	제15회	39,658	34,598	21,216
	제16회	46,262	40,543	21,525
2010	제17회 (국내)	3,552	3,211	1,840
	제18회	41,865	3,211	1,840
	제19회	41,865	36,183	18,558
	제20회 (국내)	13,964	11,795	5,711

1) 2006년 12월 재외동포를 위한 방문취업제로 '실무 한국어능력시험'(B-TOPIK)이 신설되면서 기존의 '일반 한국어능력시험'(S-TOPIK)과 구분하였으나 2011년부터 실무 한국어능력시험(B-TOPIK)이 폐지되었다. 편의상 표에는 '일반 한국어능력시험'의 응시 인원만을 보였다.

1997년 한국어능력시험이 처음 시행되었을 때에는 지원자 2,692명에 합격자가 711명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지원자가 증가하여 2007년부터는 연 2회로 시험을 확대하였고, 2010년에는 다시 연 4회로 확대하였다. 시험 첫 해인 1997년에는 지원자 수가 2,692명이었으나 2010년에는 10,6953에 이르러 총 지원자 수가 거의 4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의 증가는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의 증가, 해외에서의 한국어 개설 과목 증가, 한류 열풍으로 인한 한국 문화 및 한국어에 대한 관심 고조, 한국으로의 취업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2)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노동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은 외국인 구직자의 한국어 구사 능력과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정도를 평가하여 외국인 구직자 명부 작성 시 객관적 선발 기준으로 활용하고, 한국에 대한 기본 이해를 갖춘 사람의 입국을 유도하여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이 시험은 2005년 8월 스리랑카에서 처음 실시되었는데,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 시험을 통과하여야 하는 고용허가제 관련 법률에 따라 항상 현지에서 치러진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시행 국가와 대상자 현황, 응시자 현황, 응시율 및 합격자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6〉 연도별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연도	시행 국가	회차	시행일	대상	응시	응시율 (%)	합격
2007	소계			15,525	15,303	98.6	9,490
	캄보디아	1회	2007.06.02	2,497	2,467	98.8	1,900
		2회	2007.09.16	2,226	2,191	98.4	1,785
	우즈베키스탄	1회	2007.07.29	5,987	5,899	98.5	1,132
		2회	2007.10.14	3,983	3,945	99	3,896
키르기스스탄	1회	2007.11.04	832	801	96.3	777	
2008	소계			202,107	189,774	93.9	77,704
	베트남	5회	2008.05.11	14,661	14,553	99.3	13,878
	몽골	5회	2008.12.13~14	9,212	7,049	76.5	4,927
	태국	5회	2008.11.09	29,894	24,823	83	3,268

연도	시행 국가	회차	시행일	대상	응시	응시율 (%)	합격
	스리랑카	6회	2008.04.27	13,556	13,012	96	3,452
		7회	2008.09.28	23,009	22,143	96.2	6,447
	캄보디아	3회	2008.05.11	4,246	4,157	95.6	3,152
		4회	2008.11.16	4,845	4,530	93.5	2,430
	우즈베키스탄	3회	2008.05.24~25	11,126	10,852	97.5	5,103
		4회	2008.12.21	4,610	4,437	96.2	3,273
	키르기스스탄	2회	2008.05.25	452	433	95.8	405
	파키스탄	1회	2008.01.01	8,435	8,238	97	2,048
		2회	2008.06.15	10,734	10,350	95	3,507
	방글라데시	1회	2008.02.22	5,263	5,197	98.7	2,915
		2회	2008.10.10	14,812	13,869	93.6	5,363
	네팔	1회	2008.03.29~30	31,530	31,156	98.8	6,768
미얀마	1회	2008.10.19	4,779	4,735	99.1	3,536	
중국	1회	2008.12.27~28	10,943	10,240	93.6	7,232	
2009	<b>소계</b>			<b>51,253</b>	<b>48,902</b>	<b>95.4</b>	<b>8,850</b>
	키르기스스탄	3회	2009.02.22	1,099	1,054	95.9	542
	동티모르	1회	2009.04.12	986	979	99.3	515
	인도네시아	5회	2009.05.9~10	41,756	40,641	97.3	6,540
	태국	6회	2009.09.06	7,412	6,228	84	1,253
2010	<b>소계</b>			<b>170,152</b>	<b>100,280</b>	<b>90.0</b>	<b>26,546</b>
	캄보디아	5회	2010.03.31	6,090	5,940	97.5	1,313
	키르기스스탄	4회	2010.03.28	1,322	1,236	93.4	522
	베트남	6회	2010.04.25	30,571	29,235	95.6	10,678
	필리핀	6회	2010.05.02	6,500	6,446	99.2	2,755
	태국	7회	2010.05.09	7,918	6,135	77.5	1,896
	동티모르	2회	2010.06.13	423	421	99.5	314
	몽골	6회	2010.06.27	14,600	12,451	85.2	3,105
	네팔	2회	2010.08.28-29	41,720	36,203	86.8	4,180
	인도네시아	6회	2010.09.05	2,264	2,213	91.2	1,783
	태국	8회	2010.10.10	1,612			
	베트남	7회	2010.10.17	27,567			
	스리랑카	7회	2010.10.30-31	29,583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은 국가별로 사업주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합격 예정 인원을 공고한 뒤 접수 및 시행이 이루어지는데 응시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200점 만점 기준으로 총 득점 80점 이상자 가운데 고득점자 순으로 절대 평가와 상대 평가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합

격자를 선발한다. 합격자는 필요 인원에 따라 결정되므로 지원자의 증감이나 합격률은 큰 의미를 갖지 않지만, 해마다 합격률이 점점 낮아지는 것은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 시험에 응시하는 지원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과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은 재외동포나 외국인들이 작업장의 안전 지침이나 규정 등을 이해하지 못하여 산업 재해에 쉽게 노출됨으로써 또는 의사소통 곤란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초석의 역할을 하고 있다.

### 마. 해외 한국어 과목 채택 및 개설 현황

초·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 과목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6대륙을 통틀어 일본이 231곳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은 미국으로, 71개 학교가 한국어 과목을 채택하고 있다. 호주 역시 39개교로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어 과목을 채택한 학교가 많다.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29곳으로 가장 많으며, 프랑스가 19곳으로 그 다음이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구소련에 속해 있다 독립한 독립국연합(CIS)에 속하는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도 한국어 과목 채택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표 2-17〉 국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과목 채택 현황(2010년)

지 역	국가별	학교수	학생수
아시아	중국	1	30
	일본	231	26,153
	대만	21	1,001
	태국	11	1,672
	인도네시아	23	895
	필리핀	2	40
아메리카	미국	71	6,912
중남미	파라과이	4	76
	브라질	6	65
CIS	키르기스스탄	24	2,149
	카자흐스탄	29	1,334
	우즈베키스탄	14	4,467
	이르쿠츠크	1	354
	타지키스탄	1	120



지역	국가별	학교수	학생수
유럽	러시아	29	3,921
	우크라이나	5	376
	프랑스	19	3,515
	독일	6	50
	노르웨이	1	20
오세아니아	호주	39	4,210
아프리카	케냐	2	104
계		540	52,967
21개국			

대학에 한국어학과나 한국어 강좌를 개설한 나라는 54개국(2008년 기준)이며, 개설 강좌 수는 642개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유럽이 가장 많으며, 아시아가 그 다음이지만 강좌 개설 수로는 아시아가 447개로 유럽의 43개에 비해 월등히 높다.

〈표 2-18〉 해외 대학 한국어 학과 및 강좌 개설 현황

(2008년)

기관 \ 지역	아시아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북미	중남미	중동 및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총계
국가 수	16개국	6개국	2개국	4개국	7개국	18개국	2개국	54개국
개설 수	447개	33개	97개	7개	8개	43개	8개	642개





## 제3장 주요 추진 정책

제1절 주요 업무

제2절 국어발전기본계획(2009-2010)

제3절 한국어 보급 확대와 세계화 방안

제4절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편찬

제5절 언어의 공공성 향상



## 제3장 주요 추진 정책

### 제1절

### 주요 업무

#### 1. 2009년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추진과제는 ‘문화로 생동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문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콘텐츠 개발, 미래를 향한 글로벌 코리아 건설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중 국어와 관련한 주요 업무는 한글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한글문화관(후에 ‘한글박물관’으로 개칭) 조성’과 ‘해외 한국어교육기관의 명칭 통합과 확충’이었다.

##### 가. 한글박물관 조성

한글박물관 조성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첫째는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자랑하는 세대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는 한국어와 한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어와 한글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즉 한글박물관은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 등을 전시·보존·체험·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다.

2009~2012년까지 추진되는 이 사업은 2009년에는 서울 시내, 또는 경기도 인근 지역에서 접근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부지를 물색하였고, 동시에 공간 계획 및 콘텐츠 연구 조사를 진행하였다. 선정된 부지에는 전시관, 체험관, 교육연수관, 한글 상징 조형물 등의 시설물이 들어설 계획이었다.

아울러 세종대왕의 과학·예술·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업적을 재조명하고 애민·창의·실용의 리더십을 소개하는 (가칭) ‘세종공원조성 사업’은 2010년부터 서울시가 ‘한글 마루지 조성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진행하고 있다.

## 나. 해외 한국어교육기관의 명칭 통합과 확충

현재 해외 한국어교육기관은 여러 부서에서 지원·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이 다를 뿐 아니라 표준화된 교육 과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외국인의 교육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과 같은 문화 선진국들처럼 한국어교육기관의 명칭을 통합하고 이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11년까지 한국교육원, 세종학당, 한글학교 등 한국어 보급기관을 '세종학당(King Sejong Institute)'이라는 명칭으로 통합할 계획이었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독일, 프랑스, 중국 등 외국처럼 해외 한국어 보급기관을 통합·운영할 것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표 3-1〉 한글 보급기관의 명칭 통합 방안('09)

구 분	대 상	비 고
세종학당 I	· 현지거점으로 관내 세종학당 II, III 지원 · 현지 한국문화원(재외공관) 연계 설치	· 교사 및 교재 네트워크 지원
세종학당 II	·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한국어 보급기관 · 한국교육원(교과부), 세종학당(문화부), 한글학교(외교부) 등	· 표준 운영지침 제정 · 기존 명칭과 세종학당 명칭 병행 사용 검토
세종학당 III	· 민간 자생의 한국어 보급기관 · 한글학교, 현지대학, 학원 등	· 세종학당의 명칭만 사용 · 인증제 형태로 신청을 받아 명칭 라이선스

아울러 당시 각국에 설치·운영 중인 세종학당은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학습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으로 우선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였다. 앞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세종학당을 신설할 지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2. 2010년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추진과제는 문화 향유 기반 확대, 국가 상징 문화 공간 조성, 창의적인 문화 환경 조성, 예술의 창조 역량 강화, 문화 불균형 해소, 문화 예술 분야 일자리 창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중 국어와 관련한 주요 업무는 국가 상징 문화 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된 한글박물관 건립, 세종학당 설립 및 브랜드화 확산 등이다.

### 가. 한글박물관 건립

한글의 창제 정신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종합 전시·교육의 장이 될 한글박물관이 오는 2012년 말 서울 용산에 건립된다. 한글박물관은 한글의 보편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상징물로서 국립중앙박물관 부지 내에 건립함으로써 용산공원과 연계하여 자연·문화가 조화된 복합문화공간화를 이루고자 한다. 청사는 한글 모음의 제작 원리인 ‘천지인’을 형상화하여 하늘의 커, 사람의 커, 땅의 커를 커커이 쌓아올린 공간에 소통의 매개체 한글을 담고, 한국 전통 가옥의 처마와 단청의 멋스러움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한글박물관은 세계 문자관, 한글관, 교육 연수관, 체험관, 한글상품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건축연면적은 11,322㎡이고, 사업기간은 2009 ~ 2012년으로 총사업비 352억 원이 소요된다.<sup>2)</sup>



[그림 3-1] 한글박물관 조감도

2) 문화체육관광부(2011), 『문화정책 3년 성과자료집』

〈표 3-2〉 한글박물관 구성 계획

전시 주제	상설전시관			교육체험관	정보검색 공간
	주제1	주제2	주제3		
	우리 글을 만든다	우리 글을 꽃피우다	우리 글을 생각하다	한글 배움터	글마루, 말누리
내용	한글 이전의 문자생활	교육/보급	한글의 오늘 →한글 디자인, 남북한 한글, 세계 속의 한글 등	한글과 세계문자 →세계문자와 비교	한글 관련 자료 검색 및 정보공유
		생활			
	훈민정음 및 관련 자료 전시	예술	한글과 미래의 과제	한글로 익히다 →한글원리 교육	
인쇄/정보화					
훈민정음 원리 소개	일제강점기의 한글	세상의 소리를 담은 한글	한글로 펼치다 →한글원리 응용		

※ 자료원 : 『문화정책 3년 성과 자료집(2008-2010)』, 문화체육관광부, 2011

### 나. 세종학당 설립 및 브랜드화 확산

한글은 우리 민족만의 문화유산이 아니라,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국내외 외국인과 공유되어야 할 세계 문화유산이다. 이러한 한글을 매개로 하여 외국인이 배우고 싶어 하는 한국어, 국가 대표브랜드로서의 한국어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세종학당’을 브랜드화하여 우리의 정신, 우리말 가꾸기에 정진하였다.

최근 한류열풍과 한국기업 해외진출 증가 등으로 한국어 학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수요 지역이 유럽과 중동으로도 다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부처별 한국어 보급기관들이 산재해 있고 표준 교육과정 부재 등으로 체계적인 한국어 세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10년까지 12개국에 세종학당 23개소를 설립 및 운영('07년 5개국 18개소)하고, 국외 한국교육원, 한국문화원과 국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한국어 강좌를 ‘인증 세종학당’으로 지정('10년 59개소)하여 운영함으로써 세종학당 설립 및 공동 브랜드화 확대에 적극 나섰다. 이는 2009년 당시와는 약간 다른 방안인데 현재는 이를 더 보완하는 방안으로 나아가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현재안		향후 개선안	
명칭	(설립)세종학당 (현재 23개소)		세종학당	
	인증 세종학당 (현재 59개소)		세종교실	
대상	(설립)세종학당	기관 또는 강좌	세종학당	세종학당재단이 설립한 기관
	인증 세종학당		세종교실	타 기관의 강좌
브랜드통합방향	한국어교육 기관이나 강좌 명칭을 ‘세종학당’으로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종학당’은 한국어교육 대표기관으로 우리 부에서 설립·운영</li> <li>○ 타기관의 강좌를 ‘세종교실’로 지정하여 세종학당과 연계 확대</li> </ul>	
명칭 활용	(설립)세종학당, 인증 세종학당 모두에 ‘세종학당’ 현판 보급		세종학당	현판, 공문서 명의 등 기관명칭으로 사용 (예) 중국 연변대학 세종학당,
			세종교실	기관 명칭과 함께 사용 (예) OO한국교육원의 세종교실

또한 한국어 교육 표준화와 교원 자질 향상 지원을 통해 한국어 교재 초급 말하기·듣기·읽기·쓰기, 중급 1·2를 개발 및 출판('08~'10년, 7개 국어)하였고,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개최('09년부터 매년1회, 매년 교육자 300여명 초청), 세종학당 교원양성을 위한 국내 초청 연수('10년 63명),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08년 8지역 12명, '10년 10지역 20명)을 추진하였다. 또한 한국어 교육기관·교원·학습자에게 통합 정보와 원격 강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 한국어 강좌 및 다국어 사이트인 한국어 교육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누리-세종학당(<http://www.sejonghacdang.org>)을 '09년에 구축·운영하고 있다.

### 3. 문화비전

문화비전 2012는 “문화국가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펴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4대 목표, 32대 중점 과제를 통해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은 우리의 격조 높은 정신문화를 계승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의 정신문화를 표현하는 우리 말과 글이 품위를 잃지 않게 아름답고 바르게 잘 다듬고 가꾸어야만 문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일 수 있다.

우리 정신, 우리말 가꾸기는 우리의 자랑인 한글을 세계화하고 한글을 국가브랜드로 지정하여 세계인들에게 널리 소개하는 과제도 포함한다. 우리 정신, 우리말 가꾸기의 중점 과제는 한글 사랑 운동, 한글 문화관 설립, 세종학당 브랜드화, 세계한국어 지도 개발, 한글의 국가 브랜드화와 산업화, 다국어 사전 개발 및 웹 구축 등이다. 연도별 과제 목표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3〉 문화비전 2012의 우리말 가꾸기 중점 과제

세부사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한글사랑 운동	국어사랑 큰잔치 한글주간 선포	계속	계속	계속	계속
한글문화관 설립	한글문화관 조성 토론회	기초연구 및 타당성 검토	실시설계	조성 공사 및 콘텐츠 수집	조성 완료
세종학당 브랜드화	세종학당 조성(18개)	브랜드화 방안 마련	브랜드 라이선싱	계속	계속
세계한국어지도	-	국내외 한국어 사용 실태조사	세계한국어지도 개발	계속	계속
한글의 국가브랜드화 · 산업화	한글문화 관련 전시 지원	한글활용 문화상품 등 개발 지원	한글활용 상징로고 등 개발	계속	계속
다국어 사전개발 및 웹구축	개발지침 작성	개발 프로그램 운영	개발완료	웹 콘텐츠 개발	완료

이러한 ‘문화비전 2012’ 계획에 따른 국어 관련 과제의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들의 한글에 대한 사랑을 고취시키고 한글 사랑을 축제와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글 사랑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글 사랑 운동은 국어사랑 큰 잔치, 한글 주간 선포(2008~)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한글 관련 사료 전시, 한글상품 전시, 세계 문자 비교 체험 등을 통해 한글의 우수성을 국내외

에 널리 알리고 한글 관련 사료를 한 곳에 모아 보전할 수 있는 ‘한글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국립과학관이나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여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반해 국어학계나 언어학계, 국어교육계의 숙원인 ‘한글박물관’은 현재 온라인상에서만 일부 모습을 갖추고 있을 뿐이다.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자랑하는 대한민국에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정신과 자료를 보전, 발전시킬 수 있는 한글박물관의 건립이 꼭 필요하다.

한국어와 한글을 체계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관련 부처(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등)와 한국어 보급 업무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어를 보급하기 위해 해외의 주요 대학이나 한국어 교육 기관에 조성된 12개국 23개의 세종학당을 한국어를 보급하는 대표 기관으로 브랜드화하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세계한국어지도는 한국어의 사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지도로 구성, 국어의 현재와 과거를 기록하고 국어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끔 고안된 지도로, 국립국어원의 누리집에 기초 자료가 실려 있고 장차 한글박물관 내에 구현될 계획이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국어사전(몽골·베트남어 등 10개어)은 급증하는 이주민의 한국어 교육 자료 요구에 부응하며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에 맞는 사전을 개발하기 위한 과제로, 현재 국립국어원에서 2012년 10월 개통을 목표로 1단계 5개 언어(베트남어, 러시아어, 마인어, 타이어, 몽골어)의 다국어웹사전을 편찬 중이다.

## 제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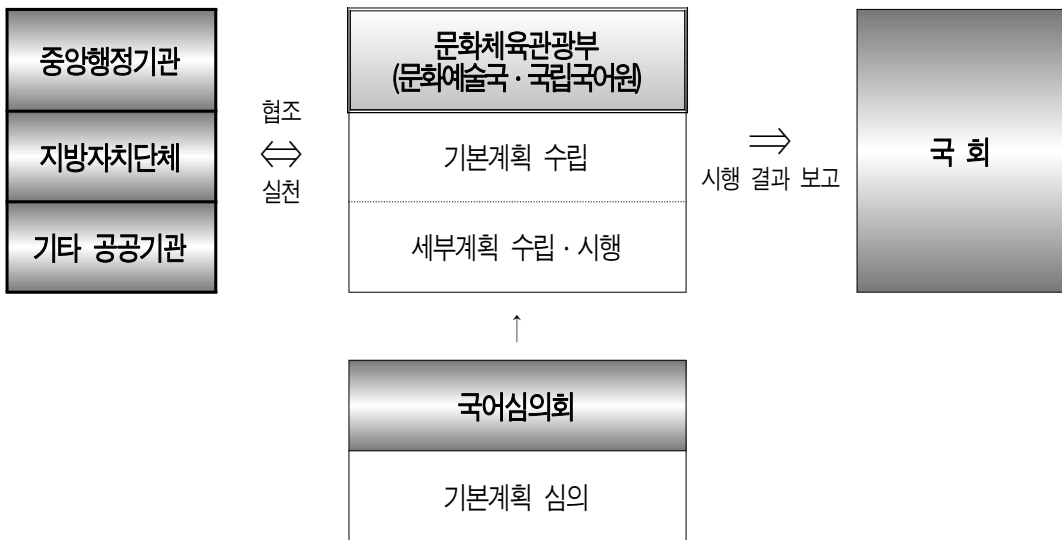
### 국어발전기본계획(2009-2010)

#### 1. 개요

국어발전기본계획은 2005년 제정된 국어기본법 제6조에 따라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국가 언어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제시하고 부문별 국어진흥 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계획이다. 또한 이 계획에는 국어기본법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 수립과 시행의 준거가 되는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제1차 국어발전기본계획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3-2]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체계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국어발전 기본계획의 시행 결과를 2년마다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어발전기본계획은 3대 중점 추진과제와 10대 부문별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3대 중점 추진과제는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체계 정비, 동북아지역 거점 기반 한국어 세계화 추진과 세계화, 다문화 시대를 대비한 다국어 지원 한국어 학습용 웹사전 편찬이다. 3대 중점 추진과제에 따른 구체적인 과제 목표는 다음과 같다.

〈3대 중점 추진 과제〉

1.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체계 정비

- ▶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의 '국어전문교육기관'화
- ▶ 맞춤형 국어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 국내외 국어 교원 재교육 및 연수 강화
- ▶ 교육대상별·과정별 특성에 맞는 교재 개발, 보급
- ▶ 온라인 국어 교양강좌 개설, 운영

2. 동북아시아 거점 기반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

- ▶ 현지 밀착형 '한국어문화학교' 단계별 설치, 운영
  - 1단계 1차('07~'08): 몽골, 중국, 구소련 지역 36개교
  - 1단계 2차('09~'11): 몽골, 중국, 구소련 지역 64개교
  - 2단계 ('12~'16): 동남아, 서남아 지역 100개교
- ▶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망 구축
  - 한국어 교육기관과 교육전문가 연결망 구축
  - 권역별·지역별 '한국어문화교류협의회' 결성
  - 아시아지역 언어정책기관 국제학술회의 정례화
  - 정보교류를 위한 인터넷 공동체(커뮤니티) 구축
- ▶ '한국어국의보급사업협의회' 체제 정비 및 운영 활성화
- ▶ 현지 특화형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지원
  - 언어권별, 교육단계별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 현지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내용 개발
- ▶ 한국어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전문가 육성
  - 원내 국어 전문교육프로그램과 연계, 재교육 실시
  - 현지 한국어 교육전문가 초청 중·단기 연수 실시
  - 국내 한국어 교육전문가 파견 현지 연수 지원
- ▶ 민간기업의 협력 유도, 민관 간 상승 전략 추진
- ▶ 온라인 한국어·한국문화 교육방송체계 구축

3. 다국어 지원 한국어 학습용 웹사전 편찬

- ▶ 한국어 학습지원을 위한 다국어 웹사전 편찬
- ▶ 언어권별 대역사전 집필 및 웹사전 시스템 개발
- ▶ 실용예문 구축 및 사전 연계 음성 녹음 제공
- ▶ 몽골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10개 언어 순차 편찬
- ▶ 사전편찬실 설치, 상설 운영

10대 부문별 추진과제는 국어기본법 및 정책 환경에 기반한 주요 국어정책으로, 추진과제와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대 부문별 추진 과제〉

연번	추진 과제	세부 과제
1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국가 언어정책의 확산	1-1 국어발전기본계획 추진과 관련 법령의 정비 1-2 국어정책 추진 관련 지원체제 운영 활성화 1-3 언어표준화 정책의 재정비와 보급체제 강화 1-4 언어자원 표준화 정책 지속 추진
2	남북 언어교류 확대 및 국제교류협력망 구축	2-1 남북 언어교류 활성화 2-2 언어정책 및 정보교류 국제협력망 구축
3	소외계층을 위한 언어복지 시책 강화	3-1 국제결혼 이주 여성 등의 한국어 교육 확대 3-2 새터민 정착을 위한 국어교육 지원 3-3 수화, 점자 체계 개선 지원
4	국어 사용 환경 개선과 국민의 의사소통 증진	4-1 국어순화 사업의 강화 4-2 대중매체 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4-3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 언어의 차별적 표현 개선 4-4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관리체계 구축 4-5 공문서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언어표현 개선 4-6 교과서, 법령문 등의 감수제도 정착
5	국민의 국어능력 증진 여건 조성	5-1 국어능력 검정시험 제도의 확대 시행 5-2 교육용 기본어휘 선정, 활용 5-3 '국어상담소'의 지역별 문화 거점화
6	언어 사용의 다양성 조사	6-1 국어 사용 실태조사 6-2 민족생활어 및 직업생활어 조사 6-3 한국어의 지역적 분포 조사
7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비 및 맞춤형 사전 편찬	7-1 민족문화 집대성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비·보완 7-2 신어조사 지속 실시 7-3 다양한 맞춤형 사전 편찬
8	국어정보망 구축과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8-1 국어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8-2 한국어 어휘 의미망 구축 8-3 국어 능력 향상 학습시스템 개발 8-4 한국어의 다양성 체험관 설립 8-5 국어전문도서관 구축
9	국어 문화유산의 보전과 한글의 산업화	9-1 훈민정음 번역 등 한글 문화유산 보급 9-2 우리말 역사자료의 수집과 정리 9-3 시대별 우리말 자료 구축 9-4 도시 언어경관 정비 및 조성 9-5 한글의 산업화 지원
10	국어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10-1 국어 정보지 발간 및 보급 확대 10-2 국어정책 홍보 맞춤 서비스체제 구축 10-3 국어생활 기획총서 발간 10-4 국어운동단체의 운영 활성화 지원 10-5 국민과 함께하는 한글날 기념행사 개최

## 2. 주요 실적

### 가. 3대 중점 추진 과제

#### 1)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체계 정비

첫 번째 과제인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체계 정비는 새터민, 국제결혼 이주 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 적응형 국어 교육이 필요한 새로운 교육 대상이 증가하고, 공무원·교사 등 공공 기관 종사자의 국어 재교육의 필요성이 증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국어 능력이 사회 문제로 인식되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 과제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를 ‘국어 전문 교육 훈련 과정’으로 운영, 맞춤형 국어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국내외 한국어 교원 재교육 및 현지 연수 프로그램 강화, 교육 대상별·과정별 특성에 맞는 교재 개발 및 보급, 온라인 국어 교양 강좌 프로그램 개설·운영 등이 있다.

국립국어원의 국어문화학교를 국어 전문 교육 기관화하려는 계획은 일반 성인 대상의 국어 교육 연수 프로그램인 국어문화학교의 수요 급증에서 비롯되었으나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 최근 10년 동안 이루어진 국어문화학교의 운영 현황을 보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4〉 국어문화학교 운영 현황(2001~2010년)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계
국어문화 학교	횟수(회)	19	19	16	17	17	18	22	24	27	35	214회
	인원(명)	1,292	1,452	1,486	1,458	1,765	1,921	2,354	2,443	2,733	3,174	20,078명
찾문	횟수(회)	123	185	157	176	195	190	253	148	297	316	2,040회
	인원(명)	15,412	16,970	17,890	16,332	15,655	12,926	19,305	10,275	19,062	27,804	171,631명
기획 과정	횟수(회)	-	-	-	-	-	-	-	-	-	15	15회
	인원(명)	-	-	-	-	-	-	-	-	-	489	489명
총계		16,704	18,422	19,376	17,790	17,420	14,847	21,659	12,718	21,692	31,467	192,095명

국어문화학교는 2009년 총 324회 21,795명이 수강하였고, 2010년에는 총 351회 30,978명이 수강하는 등 수강자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 원내 국어문화학교는 2년간 연평균 31회 교육, 2,953명

이 수강하였으며, '07~'08년 대비 수강생 20.09%가 증가하였다.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는 2년간 연평균 307회 교육, 23,433명이 수강하여 '07~'08년 대비 수강생 58.43%가 증가하였다.

국어문화학교의 교육과정으로 기존의 어문규범 관련 강좌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의사소통, 대화와 인간관계, 생활 글쓰기, 한글의 우수성 등 말하기와, 국어 문화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강좌를 신규 편성하는 등 일반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인 교과 내용을 편성하여 교육하였다. 아울러 기존 강의 공간이 협소하다는 지적에 따라 '09년 국립국어원의 3층 공간에 50석 규모의 강의실을 신설하여 강의 공간 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하기도 하였으나, 수강 희망자의 절반밖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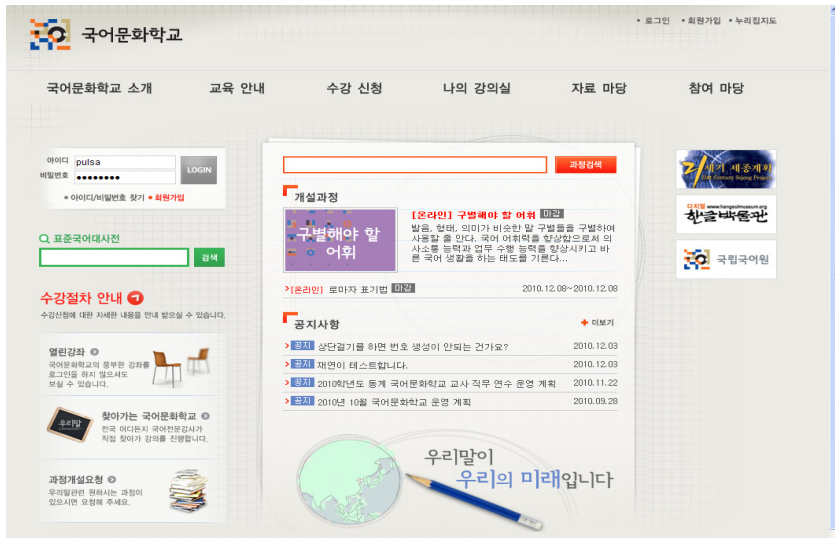
한편, 현장 출석강의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온라인 강좌를 개발하여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국어 교양 강좌는 한글 맞춤법, 외국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의식 개선과 국어 순화, 공문서 바로쓰기,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등이며, 강좌 내용 개발 및 동영상 제작, 교육 운영 시스템 개발의 일환으로 온라인 학습 관리 체계(LMS) 및 학습자용 누리집(홈페이지)을 2010년에 구축하였다.



[그림 3-3] 국어문화학교 로마자 표기법 온라인 강좌 1차시



국립국어원은 또 ‘국어진흥교육팀’을 ‘국어능력발전과’로 개편하여 국어문화학교 운영을 위한 전담 운영 체제를 정비(’09년)하였으며, 국어문화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강의 교수 2명을 채용하고 강좌 개발, 교재 집필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3-4] 국어문화학교 학습자용 누리집

‘맞춤형 국어 전문 교육 프로그램’은 국어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 국민 대상 단계별 ‘국어소통능력심화과정’(초급, 고급), 새터민 및 새터민 교원 대상 표준어 과정(4회, ’10년), 특수학교 교사 현장 연수 과정(’10년)을 개설·운영하였다.

공공 부문 종사자에 대한 전문 교육 과정은 기존의 국어교사 중심에서 공무원, 국어책임관, 국어 상담 요원, 법제 업무 공무원, 방송인, 연예인, 출판인, 교과서 제작자 등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였다. 그 결과 출판인 대상 특별 과정(4회 /’09년 2월5일, ’10년 2월11일), 교사 직무 연수 과정(4회/’09년 1월7일, ’10년 1월7일), 국어문화학교 강사 연수회(3회/’09.12., ’10.7., ’10.12.), 공공언어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과정(국어책임관 대상, 3회/’09.12., ’10.3., ’10.12.), 국회사무처 직원 대상으로 국어 교육 과정 5회가 운영되었다. 앞으로 ‘맞춤형 국어 전문 교육 프로그램’은 특히 국어 교사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한국어 교원 재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역시 강화하여 ’09년 36개국 74명, ’10년 45개국

115명을 대상으로 국외 한국어 교원 연수회를, '10년 한국어교원 지도자 양성 과정(재교육)(2회, 104명)을, '10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대상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2회, 63명 수료)을 운영하였다.

국외 한국어 교원 초청 사업은 초청 대상을 조정('10년 우수학습자→세종학당 교원으로 변경) 하고, 지역을 확대('09년 27개국→'10년 45개국)하는 등 국외 한국어 수요증대에 적극적·효율적으로 대응하였다. 국내로는 '09년 외국인 체류자가 전체 인구의 2.2%를 넘는<sup>3)</sup> 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외국인 체류자가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가기 위하여 '10년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재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국어능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필요성 증대에 발맞춰 공공 기관, 기업 등 사회인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용 교재 4종('09, '10년 각 2종), 교사 직무 연수 교재 2종('09년 2종, '10년 각 1종), 관공서·공공기관 대상의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교재('09년 3종, '10년 1종), 특별교육과정 교재('09년 청소년을 위한 바른 국어생활 등 5종, '10년 새터민 교육 교재 등 10종)를 개발하는 등 교육 대상별·과정별 특성에 맞는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 2) 동북아지역 거점 기반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

두 번째, 동북아지역 거점 기반 한국어 세계화 전략 사업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추진되고 있다.

- 증가하는 한국어 학습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등에 대한 한국어 보급 전략 필요(국어기본법 제19조)
- 한국어 학습 수요층의 다변화에 부응하여 재외동포뿐만 아니라 현지 일반인 대상으로 한국어 언어문화 보급을 확대 필요성 제기
- 현지의 특성과 문화를 고려한 현지 맞춤형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지원 필요성 대두
- 지속적인 한국어 세계화 추진을 위한 국내외 한국어 교육 전문가 육성 필요 등

이 과제는 (가) 동북아 지역을 거점으로 현지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한국어 문화학교(세종학당)'를 단계별, 연차별로 설치, (나) 재외 한국문화원과 현지 교육 기관을 통한 문화상호주의에

3)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 사회의 언어정책 사례와 효과 조사 연구』, p.7(2010.11. 문화체육관광부)

입각한 현지 특화형 교육 프로그램 공급, (다) 한국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전문가의 육성 및 자격 관리, (라)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 교육기관·교육 전문가 연계 협력 체제 구축, (마) 인터넷과 방송 등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환경 제공 등이 목표이다.

이와 같은 과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지 밀착형 ‘한국어 문화학교’(세종학당)의 설립·운영
- 현지 특화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및 출판 보급, 대상별·수준별·지역별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등)
-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 전문가 육성(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교육,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 교육,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및 관리 등)
-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망 구축(국외 한국어 교육기관, 교육 전문가 연계 협력 체제 구축, 아시아 지역 언어정책기관 국제 학술회의 개최, 국내외 한국어 보급 및 교육 단체의 활동 지원 등)
- 온라인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방송 체계 구축(온라인 한국어 교육 통합 정보망(누리세종학당) 구축)
- 한국어·문화 교육용 방송 프로그램 및 온라인 강좌 제작·보급 등

이 가운데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 현지 특화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 전문가 육성, 온라인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방송 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제3절 ‘한국어 보급 확대와 세계화 방안’에서 별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서는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망 구축 사업’의 ’09~’10년 간의 세부 내용과 성과를 정리하도록 한다.

이 사업은 국외 한국어 교육 기관, 교육 전문가 연계 협력 체제 구축, 아시아 지역 언어정책 기관 국제 학술회의 개최, 국외 한국어 보급 및 교육 단체의 활동 지원을 주요 세부 내용으로 취한다. 그래서 국외 한국어 교육 기관, 교육 전문가 연계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하여 2009 세계 한국어 교육자대회(’09.10., 서울, 23개국 300여명), 2010 세계 한국어 교육자대회(’10.8., 공주, 18개국 300여명)를 개최하였으며, 언어정책 국제 학술회의(’10.12.)는 아시아 4개국(중국, 말레이시아, 인

도, 태국) 등 총 8개국 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국외 한국어 보급 및 교육 단체의 활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09~'10년에 국제한국어교육학회(2회), 연세대 언어연구교육원(2회), 고려대 한국어문화교육센터(2회), 경희대 국제교육원(2회), 한남대 한국어학당(2회), 몽골 울란바타르대(2회), 홍콩 중문대(2회), 한국응변인협회(2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2회) 등에 총 18회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세계 한국어 교육자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한국어 교육자·교육 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국내외 한국어 교육 기관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정부 및 단체, 교육 기관, 교육자 간의 유기적 공조 체제를 구현하고 한국어 보급의 저변을 확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3) 다문화 시대를 대비한 다국어 지원 한국어 학습용 웹사전 편찬

다국어 지원 한국어 학습용 웹사전 편찬은 한류 및 다문화 가정의 증가 등에 따른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한국어 학습자 증가로 인하여 언어권별 한국어 학습용 사전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 감안된 것이다. 한편, 주요 언어권(영어, 일어, 중국어 등)에 집중된 사전 시장 구조로 동남아 등 한국어 학습자 급증 지역에 대한 사전 공급이 취약하여 문화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한국어와 현지어의 양방향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다국어 학습 사전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었다는 배경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긴급한 수요에 부응하고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다국어 사전을 접근성이 높은 웹사전 형태로 개발하여 한국어 학습 사전으로서의 그 활용도를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지원을 위한 다국어 웹사전 개발과 국립국어원 내에 '사전편찬실'을 설치하여 상설 운영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국어 지원 한국어 학습용 웹사전 개발 계획의 단계적 수립
- 한국어 학습 수요에 기반한 사전 서비스 시스템 설계
- 5만 어휘 선정 및 다국어사전의 기반이 되는 한국어기초사전 구축
- 언어권별 대역사전 연구진 선정 및 번역·감수, 실용성이 높은 예문 확보 및 언어권별 번역
- 한국어 학습자의 대표적인 오류 유형 예문 구축 및 검색 서비스
- 한국어·외국인 화자를 위한 한국어·현지어 발음 설명서 작성
- 사전 편찬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사전편찬실'을 치하여 표준국어대사전 웹사전과 연동하

## 여. 전체 사업 총괄 진행

이들 각각의 '09~'10년 세부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지원을 위한 다국어 웹사전 개발 사업에서는 한국어기초사전 구축의 일환으로 집필 대상 표제어 5만 항목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2만 항목의 의미를 용례 구축과 함께 기술하였다. 또 다국어 사전을 구축하기 위하여 15,000 항목을 시범적으로 대역(뜻풀이)하였으며, 그 가운데 3,000항목은 5개 언어(베트남어, 타이어, 러시아어, 몽골어, 마인어)로 대역하였다. '12년까지 모든 표제어를 5개 언어로 완성하고, 2단계('13~'15년) 5개 언어(힌디어, 우즈베크어, 미얀마어, 터키어, 아랍어)를 추가하여 10개 언어로 된 다국어 웹사전을 구축할 계획이다.

나아가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과 연동한 한국어기초사전 및 다국어사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다국어 지원 웹사전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한국어기초사전과 다국어사전 구축 작업이 한 시스템 내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편찬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어기초사전의 집필을 통해 얻은 쉬운 뜻풀이를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국어교육 및 표준국어대사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성과를 획득하였으며,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및 어휘의미망 구축 사업의 성과와 연계한 구축 추진으로 한국어 지식 정보의 통합을 도모하였다.

또 한국어 학습을 위한 실용적인 예문(구 단위 예문, 문장 단위 예문, 대화 단위 예문)을 구축하고, 표준 발음법에 따라 발음 정보를 탑재할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정규직 3명, 비정규직 6명(다국어 구축 1명, 시스템 설계 1명) 및 외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사전편찬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사전편찬실은 연구진, 시스템 개발팀과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로 한국어 기초사전 및 다국어사전 시스템의 안정적 설계에 이바지하고 있다.

## 나. 10대 부문별 추진 과제

### 1)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한 국가 언어정책의 확산

국민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서는 국가가 언어정책을 바로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어기본법 및 국어발전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그 후속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시대 변화에 따라 표준어의 개념과 개별 어휘의 재검토, 외래어 표기법 등 어문규범

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보급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와 더불어 언어 정보 자원이 국제적 수준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활용성을 높이고, 한국어의 특성을 반영한 국제 표준 규격 제정으로 국민 언어생활의 편의성을 확보하고자 이 과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공공기관을 통한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실천과 실효성 제고, 관련 법과 제도 정비로 국어정책의 효율적 추진 기반 구축, 언어 사용 현실을 반영한 어문규범의 현실화와 합리성 확보, 언어 표준화 정책의 재정비와 보급 강화 및 언어자원 표준화를 통한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 유도 등을 목표로 하는 이 과제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국어발전기본계획 추진과 관련 법령의 정비, 국어정책 추진 관련 지원체제 운영 활성화, 언어표준화 정책의 재정비와 보급체제 강화, 언어자원 표준화 정책 지속 추진이 그것이다. 각각의 세부 추진 실적을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국어발전기본계획 추진과 관련 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인 국립국어원 간의 기능을 조정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09.5월), 국립국어원은 어문규정을 비롯한 국어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 수요의 급증에 대처하고자 대국민 서비스 창구로서 가나다전화를 국어생활종합상담실로 확대 개편하였다(전국전화 1599-9979 개통(2010. 3. 22.), 공공언어에 대한 상담 기능 추가). 또 국어기본법 일부 개정('09.3.18.), 국어기본법 시행령 개정('10.12.14.),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정('10.12.29.) 등을 통하여 국어기본법 상 각종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고자 했다.

국어정책 추진 관련 지원 체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국어심의회 운영 세칙’ 개정('09.10.), 심의회 개편 및 각 분과 위원 선임('09.9.), 국어심의회 개최('09년 4회, '10년 5회), 전문용어표준화 협의회 세부 운영 지침 마련 등을 수행하였다. 특히 성씨 표기에 대한 두음법칙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강화된 언어적 인격권 의식 및 언어 현실의 변화상을 수용·반영하여 규범 운용의 효율성보다는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등 사회의 필요와 국민의 요청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는 국어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언어 표준화 정책의 재정비와 보급 체제 강화를 위하여는 『로마자 표기법 영향평가』('10.12.), 『외래어 표기 규범 영향평가』('10.12.), 『문장부호 개정의 정책적 효과 연구』('10.09.)를 수행하였고, 외래어 표기심의회의를 '09년, '10년 각 6회 개최하였으며,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외래어 표기 용례 48220건, 로마자표기 용례 12803건, 주요어휘 용례 8666건 검색 서비스,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온라인 강의 제공(공문서 바로쓰기 12차시/국어 순화 12차시/새터민 발음교육 8차시),

가나다전화 운영(어문규범, 어법, 표준국어대사전 관련 내용 상담 '09년 전화 26,964건, 온라인 6,579건, '10년 전화 35,403건, 인터넷 10,420건 상담)을 통하여 현행 어문규정이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지를 검토하고 규범의 생활 밀착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국어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 언어 자원 표준화 정책 지속 추진과 관련해서도 옛 한글, 이두, 구결, 한자 등의 목록 정비 및 표준화 작업<sup>4)</sup>, 전문용어 및 기타 언어자원 기술형식의 국제표준화 작업<sup>5)</sup>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사업 추진을 통하여 초기 한국 한자 국제표준화(CJK main, Ext. A) 이후 고문헌 등에서 새로 발견되는 신출 한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국학의 진흥 기반을 더욱 다졌으며, 우리 언어 자원을 국제표준화하려는 노력을 통해 민족 언어문화의 위상 향상에 기여하였다.

## 2) 남북 언어교류 확대 및 국제 교류 협력망 구축

남북 언어교류 확대 및 국제 교류 협력망 구축은 시의적절한 국가의 언어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 및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남북 언어교류는 통일 후 언어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언어교류를 통해 통일을 한 걸음 앞당길 수 있는 문화 교류이다. 세계의 언어학자, 언어정책 기관과의 교류는 다른 나라의 언어정책의 동향을 파악하고 연구 정보를 수집하는데 도움이 되며 선진적인 언어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이 과제는 남북한 언어의 지속적 교류를 통하여 남북 언어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 언어 통합의 기반을 조성하며, 전 세계의 언어정책 동향과 연구 정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시의 적절한 국가 언어정책을 개발함과 동시에 언어정책에 관한 국가간 공동 사업 추진함으로써 국제 연대를 도모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남북한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학술대회 추진<sup>6)</sup>, 겨레말큰사전 편찬 지원('09년에 4회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 편찬회의 및 남측 편찬위원회의 참석) 등 남북 언어 교류 활성화 사업과 세계 각국 언어정책 기관과의 직접 교류<sup>7)</sup>, 국립국어원 개원 20주년 기

4) 언어 자원 표준화(문자코드, 한자, 전문용어) 3개 분과 위원회(국내, 국제) 지원, '09~'10년, 국제표준문자코드집 제2판 위원회 초안(ISO/IEC 10646 2nd ed, CD) 검토 및 국제 위원회 제출, '09년, 국제표준문자코드집 제2판 최종 위원회 초안(ISO/IEC 10646 2nd ed, FCD) 검토 및 국제 위원회 제출, '10년

5) 국어사전 내 비표준문자(226개)의 트루타입폰트 제작 및 적용, '10년, 국제 언어자원 관리 분과(ISO-TC37/SC4 위원회)에서 설계한 사전 구조 표준(Lexical markup framework)에 따라 국어사전 설계, '10년, 다국어 정보 규격(multi lingual information framework) 논의 등

6) 국제 한국학 학술대회 참석('09.10.), 남북 국어교육 및 해외 민족어 교육 국제학술회의 개최('09.11.), 국립국어원 사회언어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09.11.), 남북 언어 통합과 제일동포 언어 국제학술회 개최('10.10.)

남 국제학술대회 개최('10.12.)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다만 남북 교류 사업은 남북 상황에 영향을 받기가 쉬워 남북 국제 학술대회 개최 등 일부 사업의 경우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림 3-5] '09년 남북 언어 관련 학술대회 주요 참석자 사진

### 3) 소외계층을 위한 언어 복지 시책 강화

우리 사회 구성원은 국제결혼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북한 이탈 주민('10년 20,000여 명) 등의 증가로 언어·문화적 배경이 다양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언어소통에 문제가 발생하는 언어적 소외계층이 생겨나 이들에 대한 언어 복지 시책이 필요한 시점에 놓이게 되었다. 한편 점자, 수화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언어를 체계화하는 일은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과제로 특수언어의 보급을 확대하여 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해야 한다.

소외계층에 대한 언어 복지 시책은 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 등 다문화 가정, 북한 이탈 주민을

- 7) 인도네시아언어원 주최 '21세기 언어정책-장벽과 도전' 국제학술대회 참석('10.11.), 말레이시아 언어문학원 방문('09.11.), 태국 왕립학술원 방문('09.11.), 국립인도네시아언어원 방문('10.11.), 부탄 국어발전위원회의 국립국어원 방문('10.12.) 등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먼저 국제결혼 이주여성 등 다문화 가정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였다.

〈표 3-5〉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 추진 실적

세부 내용	추진 실적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재 개발(국립국어원) → 제작보급하여 활용(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하는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 체계 강화</li> <li>•여성가족부법무부 등 4개 부처 간 "한국어교육 효율화표준화를 위한 MOU 체결('10.6월)</li> </ul>
이주민 대상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교재 1,2(초급) 교원용 지침서 개발('09.12월)</li> <li>•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교재 3,4(중급) 개발('09.12월)</li> <li>•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아자아자 한국어) 개발('09.12월)</li> <li>•이주민 교육 한국어 교원 대상 교육용 교재(『한국어 교육의 이해』) 출판('09.12월)</li> <li>•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 방문 학습 자료 1단계(말놀이 단계) 개발('09.12월)</li> <li>•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교재 1,2(초급) 출판('10.8월)</li> <li>•휴대용 기초 한국어 회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한마디' 소책자(6개 언어) 개발('10.10월)</li> <li>•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 방문 학습 자료 2단계(글놀이 단계) 개발('09.12월)</li> </ul>
한국어 교육용 방송 프로그램 개발 및 방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BS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초급(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제작·방송('09)</li> <li>•EBS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중급(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제작·방송('10)</li> <li>•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 한국어 교육 방송 제작·방영('10)</li> </ul>

북한 이탈 주민의 원활한 한국 정착을 위한 언어 적응 교육 지원 프로그램은 통일부와 협의 하에 개발, 진행되었다. 이들의 언어 적응 교육을 위해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국어문화학교에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별도의 과정을 개설<sup>8)</sup>하고 교재를 개발하여 지원<sup>9)</sup>하였다.

한편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와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이를 체계화하고 교육하는 일은 언어복지의 주요 과제이다. 표준 수화를 확립하여 보급하고 점자 관련 자료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 소외계층의 언어 지원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8) 북한 이탈 주민 대상 교육 실시 2회, 북한 이탈 주민 교사 대상 교육 실시 2회 등 모두 4회 실시('10)

9) 북한 이탈 주민의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표준 발음 교재 및 시디 제작·지원('09), 어휘 학습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10)

〈표 3-6〉 점자·수화 체계 개선 지원 실적

세부 내용	추진 실적
표준 수화 확립 및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일상용어, 국어교과 용어 등 5개 분야 표준 수화 개발('09, '10)</li> <li>• 한국수화에 따른 한국어 문장 지도 교재 개발('09)</li> <li>• 한국수화 3 교재 개발('09)</li> <li>• 한국수화 4 교재 개발('10)</li> <li>• 한국수화 웹 사전 구축을 위한 동영상 제작('09)</li> </ul>
표준 수화 학습 방송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수화 1,2」 방송 제작 및 방영('09)</li> </ul>
점자 포털 사이트 콘텐츠 보완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어 점자 해설서 동영상 제작('09)</li> <li>• 온라인 점자 연습 프로그램 개발('09) * 점자세상(www.braillekorea.org)</li> <li>• 시각자료의 점역지침 마련 연구('10)</li> <li>• 한글 약점자 연구('10)</li> </ul>
웹 기반 수화사전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웹 기반 스마트폰용 표준수화사전 개발('10)</li> </ul>

소외계층을 위한 언어 복지 시책 강화 과제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이주민 대상 언어별·수준별로 세분화된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초급·중급 단계 개발) / 온라인·방송(3개 언어, 6종) 등 다양한 형태로 교재를 개발·보급하여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 도모
- ‘교육과정·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실시(수요 조사, 모형 개발 등) → 단계별·매체별 교재 개발 → 관련 부처 및 기관에 자료 제공’의 체계적인 개발 및 보급 과정을 통하여 교재 개발의 중복을 지양하고 전문성과 활용성을 제고
- 북한 이탈 주민의 언어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교육 현장 경험을 교육 자료에 반영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교재를 제작
- 남한 문화와 연계한 언어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북한 이탈 주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줌
- 그동안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되어 온 장애인의 특수언어에 대하여 언어과학 차원에서 접근하여 체계화를 지원

#### 4) 국어 사용 환경 개선과 국민의 의사소통 증진

국제화, 개방화와 지식 정보 문화 시대의 가속화에 따라 국어 사용 환경의 오염과 왜곡이 심화되어 이에 대한 개선 및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 대중매체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공익성 높은 방송 프로그램 개발, 신문·방송·인터넷 등 대중매체 언어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표현 관행 개선 등 언론 기관의 자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와 민간단체에서 전문용어 정비를 산발적, 비연속적으로 추진해 온바 국민의 의사소통 원활화 및 활성화를 저해하여 전문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따라 남용되고 있는 외래어와 외국어를 선정하여 우리말로 다듬는 등 국어 순화 사업 강화, 대중매체 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신문·방송 등 대중 매체 언어 표현의 개선, 전문용어 정비 지원 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 추진되었다.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 언어의 개선을 위하여, 방송사와 방송언어 공동 연구 및 발표회 개최, 바람직한 통신 언어 개선 추진, 대중매체의 인격 모독 표현 및 비규범적 표현 등 조사 실시('10. 12./텔레비전의 예능프로그램 대상), 소수자 구별 언어 표현에 대한 국민 의식 연구('10. 12.), '언론매체의 언어 관련 프로그램' 내용 감수(연중. KBS 1TV '바른말 고운말', '우리말 겨루기'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차별적·비객관적 언어 표현 조사 및 대안 마련(지역·민족·인종에 대한 차별적 언어 표현 개선 연구, '09.10.), 차별적·비객관적 언어 표현 개선을 위한 홍보책자 제작('이런 말에 그런 뜻? - 차별과 편견을 낳는 말들' 발간 및 배포, '09.12.), 알기 쉬운 신문 언어 환경 조성 연구(한눈에 알아보는 신문 언어 바로 쓰기 보고서 발간, '10.12.), 실태 조사를 통한 방송 언어의 차별적 표현 분석 및 대안 제시(방송 프로그램의 저품격 언어 사용 실태 조사('10.11.), 한눈에 알아보는 예능프로그램 언어 바로 쓰기 보고서 발간('10.12.))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방송 예능프로그램 언어 실태 연구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연구 결과는 언론, 전문가 등의 관심을 많이 끌었으며, 아나운서 등 방송 현장 관계자들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방송언어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의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통신언어 개선 운동 전개로 청소년 등의 의식 개선을 유도하였다. 아울러 공익광고를 제작 방영하여 일반인의 의식 개선에 노력한 결과, 국회에서도 통신언어 관련 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검토 요청에 따라 전문용어, 공문서 등에 대한 상시 감수 체제를 운영하고, 교육과학기술부(위탁 기관 포함)의 감수 요청에 따라 교과서 수시 감수 체제를 운영하였다. 이에

대한 세부 추진 내용은 제5절에서 다루도록 한다.

### 5) 국민의 국어능력 증진 여건 조성

국민의 국어능력 증진은 3대 중점 추진과제인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체계 정비와 관련된다. 국민의 국어능력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인식이 고조되고, 지방 분권화 시대에 지역의 국어 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을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에서 추진되고 있는 과제이다. 국민의 국어능력 증진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추진된 과제는 국어능력 검정시험 제도의 확대 시행과 교육용 기본 어휘 선정 및 활용, 국어문화원의 지역별 문화 거점화 등이다.

국어능력 검정시험은 개인의 국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응시자들뿐 아니라 방송사, 교육 기관 등 일정한 국어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기관 종사자들의 평가 도구로 활용되어 국어능력을 증진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한국방송과 (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이 시행하고 있는 국어능력 검정시험의 응시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국어능력의 중요성을 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3-7〉 국어능력 검정시험의 응시자 수

KBS 한국어능력시험	한국언어문화연구원 국어능력인증시험	양 기관 응시인원 합계
'09년: 21,794명	'09년: 19,288명	'09년: 41,082명
'10년: 41,213명	'10년: 33,288명	'10년: 74,501명(181% 증가)
소계: 63,007명	소계: 52,576명	합계: 115,583명

이와 같은 외적인 확대에 발맞추어 검정시험의 내실화와 타당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시험 결과 분석 및 평가방법 개선안 연구<sup>10)</sup>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입사, 승진, 입학시험 등에서 국어능력 검정시험을 채택하는 곳이 100여 개소로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얻고 있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초중등 교육용 기본 어휘 목록을 설정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동 및 청소년의 인지 발달 단계나 언어 발달, 사회적 연구 등을 감안한 과학적인 검토가 다소 미진한 상태에서 교과서들이 집필된 면이 있었다. 이에 교육용 기본 어휘를 선정하여

10) 국어능력검정시험 평가 분석('09), 말하기 통합 모의시험 추진 및 분석 평가('09), 말하기 능력 평가 방법 개발을 위한 연구('09)

활용하기 위해서 교육용 기본 어휘 선정을 위한 기초 연구('09), 초등학교 교과서 어휘 조사 연구('09), 초등학생 글쓰기 어휘 조사 연구('09) 등을 진행하였다.

국어문화원은 지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는 상담 기구이다. 현재 전국 17개 국어문화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역사와 경험량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갖추어야 할 여건이 적지 않다. 따라서 자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상담원 워크숍을 실시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국어 교양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 국어책임관 공모 사업을 비롯한 지역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과 지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3-8〉 국어문화원 관련 사업 추진 현황

세부 내용	추진 실적
국어문화원의 지역별 확대	• 국어문화원 경기지역 신규 지정-한양대국어문화원('10.5.)
국어문화원의 운영 정착 및 역량 강화 지원	• 국어문화원 워크숍 개최('09.12.) • 국어문화원 운영 안내서 제작('10.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활동 추진	• 국어책임관 공모 사업 및 국어문화원 공모사업 실시('10.4/'10.12)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해당 지역 국어 사용 환경 개선 및 도시 언어 경관 조성사업 등 추진	• 대구광역시 언어 환경 개선 사업 추진('10.5~11) • 부산지역 간판 시상('09년~'19년)

## 6) 언어 사용의 다양성 조사

언어 현실에 바탕을 둔 언어 정책 수립과 소멸되어 가는 민족생활어, 지역어 조사를 통해 국어 문화 유산을 보존, 발전시키기 위하여 언어 사용의 다양성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언어 사용의 다양성 조사는 크게 국민의 국어사용 실태 조사, 민족생활어 및 직업 생활어 조사, 한국어의 지역적 분포 조사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국어사용 실태조사는 국어기본법에 근거하여 국어능력 실태조사, 국어사용 환경 조사, 국민의 국어인식 조사, 국어정책 통계 지표 개발, 국어정책 통계 지표 조사 및 통계 연보 작성 등이 실시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9〉 국어사용 실태조사 추진 실적

세부 내용	추진 실적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영역 사업 추진</li> <li>• ‘한국인의 언어활동 조사’ 영역 사업 추진</li> </ul>
국어사용 환경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국어대사전 보안을 위한 어휘사용 실태 조사’ 영역 사업 추진</li> <li>• ‘표준 화법 개선 및 보안을 위한 기초 연구’ 영역 사업 추진</li> <li>• ‘표준화법에 관한 국민의 국어사용 실태 조사’ 영역 사업 추진</li> </ul>
국어의식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 영역 사업 추진</li> </ul>
국어정책 통계 지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정책 통계 지표 개발 및 조사 수행’ 영역 사업 추진</li> <li>• ‘2010년도 숫자로 보는 국어’ 웹페이지 구축 및 책자 발간 추진</li> <li>• ‘국어정책 통계 지표 조사 및 통계 연보 작성’ 영역 사업 추진</li> </ul>

위와 같이 매년 주제, 영역에 따라 지속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국어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축적된 연구 성과는 국어사용 실태 및 언어의식의 시간적 변화를 보여주기 때문에 국어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매년 국어 및 언어 관련 각종 실태가 정량적으로 측정된 결과는 국어정책의 추세 분석 및 현황 파악에 활용되어 국어 분야의 정책 수립 및 집행, 목표 설정, 평가 등을 위한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다.

민족생활어 및 직업 생활어 조사는 민족의 역사와 생활 양식, 정신이 담겨 있는 전통 기층 생활어와 전통 직업 생활어를 보존함으로써 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일깨우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009년, 2010년에 조사된 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3-10〉 민족생활어 조사 분야 및 지역

세부 내용	추진 실적
2009년 민족생활어 조사(10개 지역 및 공통 주제 조사) 및 어휘, 음성, 사진, 동영상 자료 구축	호상웃(제주), 토속음식(경북 북부), 남원목기(전북), 장담그기(경북 동남부), 임신·출산(경남), 배첩장(충북), 한지공예(강원), 도검(경기), 북메우기(충남), 한과(전남), 떡(전국 공통)
2010년 민족생활어 조사(4개 지역 및 공통 주제 조사) 및 어휘, 음성, 사진, 동영상 자료 구축	비양도의 고기잡이(제주도 서부), 그물 손질부터 어판장까지(동해안 남부), 염전(서해안 중남부), 죽방렴(남해안 중부),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동·서·남해안 제주도 공통)

이외에 전통 직업 생활어 조사도 '09년 전국 10개 지역, '10년 동·서·남 해안 및 제주도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지역어 조사는 국내 9개 권역별 지역어와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다.

〈표 3-11〉 지역어 조사 실적

세부 내용	추진실적
2009년 국내 권역별 지역어 조사(9지점)	경기 이천, 강원 인제, 충북 보은, 충남 서산, 전북 임실, 전남 영암, 경북 의성, 경남 울주, 제주 색달
2009년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2지점)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중국 요령성 동향
2010년 국내 권역별 지역어 조사	9권역(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 대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조사된 54지점의 어휘·음운·문법 자료 통합 및 보충 조사
2010년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2지점)	카자흐스탄 탈디쿠르간 중국 흑룡강성 상지

지역어 조사 결과는 음성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는데, 음성 자료를 분절(어휘 음성 자료 분절 수: '09년 15,552개, '10년 15,552개)하여 일부 단어는 각 지역의 방언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지역어를 조사·전사하고 지역어 음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보존하여 언어 자료 겸 민족 문화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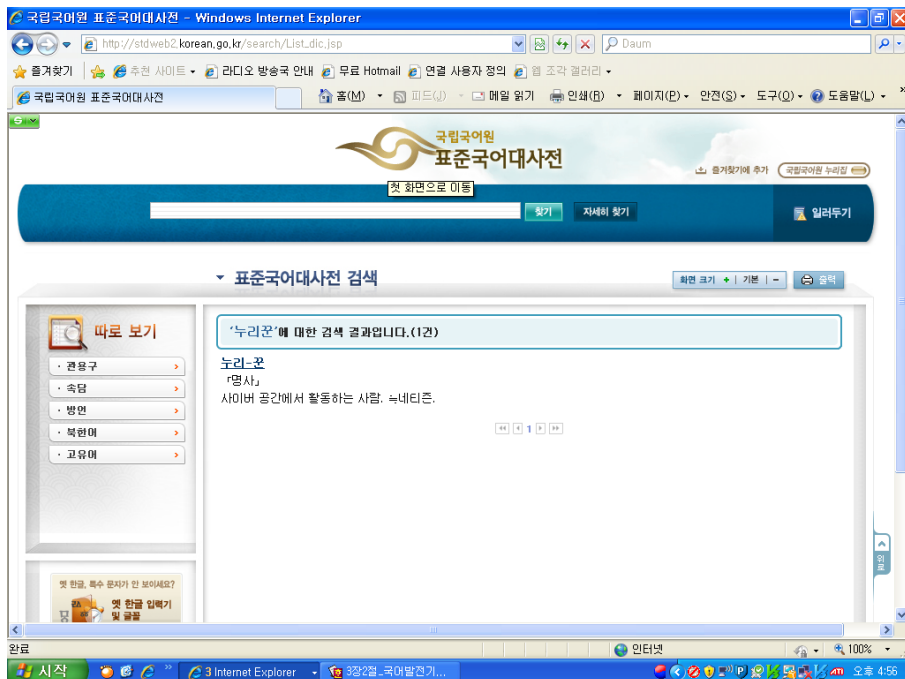
#### 7)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비 및 맞춤형 사전 편찬

우리 민족의 언어문화를 집대성한 〈표준국어대사전〉은 우리나라 대표 사전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제어로 오르지 않은 단어들이 있으며, 해마다 새로 생겨 널리 사용되는 신어와 전문어를 검토하여 표제어로 올려야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또한 검색 서비스의 강화로 날로 변화되고 있는 정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전으로 거듭나야만 국민들의 언어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급변하는 언어 환경을 바로 반영할 수 있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웹 사전을 구축하고,

신어 조사('09년 55개 언론 매체 대상 신어 조사, '10년 87개 언론 매체 대상 신어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사전 편찬자와 쌍방향적 의사 소통을 기반으로 한 상시적 사전 편찬 체제 확립을 통한 위키피디아 방식의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구축('10년~), 한국어 학습용 다국어사전 구축('10년~) 등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식 대사전을 개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내용은 제4절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편찬에서 기술하기로 한다.

민족문화 집대성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비·보완의 일환으로 교과서 용어 등 집필 항목 10,000 표제어 교열 및 웹 사전 등재, 부표제어 6,400여 개의 개별 뜻풀이 제시, '표준국어대사전' 개정판 웹 사전 구축 운영 등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그리고 생활 용어나 새로 생긴 전문어 등 사전에 실리지 않은 단어를 검토하여 사회상과 더불어 새로 생긴 말을 등재함으로써 사회 및 언어 변화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 변화에 따라 변하는 법률, 기관명, 도로명, 장애인 명칭 등 각종 사전 정보를 갱신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림 3-6] 표준국어대사전 웹 사전



### 8) 국어정보망 구축과 통합 정보시스템 운영

국어정보망 구축과 통합 정보시스템 운영은 국어 정보 자원, 한글 관련 문화유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들에게 국어 정보를 효율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과제이다. 주요 사업 내용에는 국어 정보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국어 정보 자원의 품질 제고와 활용 극대화, ‘디지털 한글박물관’ 사이트 확충 운영, 한국어 어휘 의미망 구축,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어휘 학습 지원 시스템 개발, 한국어의 다양성 체험관 설립, 국어 전문 도서관 구축 등이 있다.

우선 국어 정보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과제의 주요 실적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개편 및 통합 검색 시스템 개발
- 표준국어대사전 어휘 관리 시스템 개발
- 한글 자료 이미지 6,601면
- 한글 문헌 해제 1,158매 구축 등 한글 자료 디지털화 추진
- 한글 자료 목록 검색 시스템 개선
- 한글 사진 커뮤니티 개설
- 정보 이용 통계 관리 기능 도입 등 운영 체계 개선 등 디지털 한글박물관 운영 체계 보완 개선
- 한글 문헌 인쇄 및 내려받기 서비스 실시
- 한글 문화재 디지털 교육 교재 서비스 실시
- 한글 동영상 서비스 실시
- 특별기획전 개발 및 개최
- 한글 게임 개발 및 온라인 한글 게임 대회 개최



[그림 3-7] 디지털 한글박물관 누리집

한국어 어휘 의미망 구축 과제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기반을 둔 한국어 어휘 의미 체계 구축<sup>11)</sup> 사업이 추진되었고, 국어 능력 향상 학습 시스템 개발 과제로는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어휘 학습 지원 시스템 개발,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내 관련어 정보 연결(8만 항목)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또 한국어의 다양성 체험관 설립 과제로 디지털 언어 지도 시스템 개발이, 국어 전문 도서관 구축 과제로는 한글 옛 문헌 구입(주해 천자문 등 11종, 누계 392종) 및 국어 전문 도서 수집(427종), 온라인 간행물 관리 체계 구축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한국어의 다양성 체험관 설립 추진은, 한국어의 역사와 한국어에 대한 언어 능력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데에 긴요하며 지역 문화 차원에서 중요하나 급격히 소멸하고 있는 자료를 조사·보존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국어 전문 도서관 구축은 지적 문화유산인 한글 및 국어 관련 고문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보존하여 국어 연구 및 정책 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11) 한국어 어휘의미 관계 데이터베이스: 명사(95,363항목), 동사(17,506항목), 형용사(5,183항목), 부사(2,640항목)

### 9) 국어 문화유산의 보전과 한글의 산업화

국어 문화유산의 보전과 한글의 산업화 과제는 국어 자료의 시대별 현황 파악·구축·관리를 통하여 국어 문화유산의 항구적 보존과 한글, 국어의 문화적 가치 활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다.

과제의 세부 목표를 훈민정음을 비롯한 한글 문화유산의 종합 정비 및 전 세계 보급, 고전 자료의 판각, 복원 등을 통한 우리말의 역사 및 생활 문화적 가치 증대, 다양한 매체별 구축으로 우리말 자료의 보전과 접근성 제고, 우리말 변천을 보여주는 우리말 역사 정보 구축 토대 마련, 국어의 문화적 가치를 활용한 언어 경관 조성으로 도시 환경 정비, 아름다운 디자인의 한글을 이용한 문화 콘텐츠의 생활화 및 세계화에 두고 '09~'10년에는 훈민정음 번역 등 한글 문화유산 보급, 우리말 역사 자료의 수입과 정리, 시대별 우리말 자료 구축, 도시 언어 경관 정비 및 조성, 한글의 산업화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별 실적을 정리하면, 먼저 훈민정음 번역 등 한글 문화 유산 보급의 일환으로 훈민정음 해례본 러시아어판 출판·보급, 험버트 박사와 한글 연구 학술대회 개최 등이 이루어졌다. 우리말 역사 자료 수집과 정리를 위해 용비어천가 권2(제10장~제12장) 책판 복각, 55개 문헌(경민편언해, 삼강행실도, 이륜행실도, 춘향전, 금강경언해 등)을 대상으로 문헌 촬영 및 이미지화(CD 64장 분량), 45종의 문헌(조선조리법, 소학언해 방점본 권1·2합본, 인현왕후전, 문장강화 등) 대상 일반 인용·전문가용 문헌 해제, 외국어 학습서 특별전('09년: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만주어판), 옛 사전 특별전('10년: 국어사전 이전관, 국어사전관, 특수사전관) 등을 추진하였다. 시대별 우리말 자료 구축 사업으로는 시대별 한글 자료의 이미지 촬영 및 가공(6,601건), 접근 대상별(전문가용, 일반인용) 한글 자료 해제, 기구축 기초 자료의 정비, 고전 한자어 어휘 정보 구축(15세기 한글 원전 6종-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언해본, 석보상절, 월인석보, 능엄경언해, 법화경언해)이 이루어졌으며, 도시 언어 경관 정비 및 조성 사업으로 아름다운 우리말 가게 이름 선정('09년 3개 문화원: 경상대, 동아대, 상명대, '10년 3개 문화원: 경상대, 동아대, 상명대), 언어 경관 실태 조사 및 개선 사업('09년 1개 문화원: 강원대, '10년 2개 문화원: 경북대, 동아대) 등이 추진되었다. 한글의 문화상품 개발 촉진 및 장려를 위한 한글문화상품아이디어 공모전('09년: 응모작품 257개, '10년: 응모작품 248개)도 개최되었다.

## 10) 국어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강화

국어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으로 국립국어원에서는 계간 <새국어생활>을 연중 4회 발간하고 있으며 온라인 월간 소식지 <새국어소식>을 연중 12회 발간하고 있다. 국어 관련 주요 일지와 논저 목록, 분야별 연구 동향을 담은 국어 연감을 해마다 발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4개 언어로 국립국어원 홍보 책자를 발간하여 국외에 한국과 한국어를 소개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역시 4개 언어로 된 홍보 동영상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 '10년에는 국립국어원 20년사를 발간하여 배포하기도 하였다.

국어정책의 국내외 홍보를 위하여 각종 보도 자료 수시 배포는 물론 해외 기관과의 교류, 언어정책 국제학술대회 개최('10년)를 비롯하여 'You can learn the KOREAN ALPHABET in one morning'('09년), '우리말의 이모저모'(2개 국어: 한국어, 영어 '10년), 'the Korean Alphabet HANGEUL'('10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한마디'(6개 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10년) 등 한국어 및 한글 홍보 책자도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국어운동 단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역시 국어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글학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외솔회, 한글문화연대 등 관련 단체의 우리말 우리글 바로쓰기 사업을 지원하여 우리말글 지킴이 선정, 아름다운 우리말 가게 이름 선정, 한글날 기념 온겨레 한말글 이름 큰 잔치 대회 등이 개최되었고, 세종날 기념 글짓기 대회, 외국인 한국어 발표 대회, 외국인 한글 글씨 쓰기 대회, 집현전 학술대회 개최를 각각 지원하였다. 2009년에는 '한글, 세상을 담는 아름다운 그릇'을 주제로 한 다양한 한글날 경축 기념 행사를 지원하였고, 2010년에는 '한글, 세상과 어울림'을 주제로 한 다양한 한글날 경축 기념 행사를 지원하여 한글과 우리말을 지켜낸 선조들의 뜻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도록 하였다.

## 제3절 한국어 보급 확대와 세계화 방안

### 1. 추진 배경

한국어 보급 확대와 세계화 사업은 증가하는 한국어 학습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등에 대한 한국어 보급이 전략 필요하고(국어기본법 제19조), 한국어 학습 수요층의 다변화에 부응하여 재외동포뿐만 아니라 현지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한국 언어문화 보급을 확대해야 하며, 현지의 특성과 문화를 고려한 현지 맞춤형 한국어 교육 자료가 요구되는 등의 배경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과제의 추진 목표는 아래와 같다.

- 동북아 지역을 거점으로 현지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한국어 문화학교(세종학당)’를 단계별·연차별로 설치
- 재외 한국문화원과 현지 교육 기관을 통한 문화상호주의에 입각한 현지 특화형 교육 프로그램 공급
- 한국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전문가의 육성 및 자격 관리
-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 교육기관, 교육 전문가 연계 협력 체제 구축
- 인터넷, 방송 등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환경 제공

### 2. 추진 내용 및 실적

이 과제의 주요 내용은 현지 밀착형 ‘한국어 문화학교’(세종학당)의 설립·운영, 현지 특화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및 출판 보급, 대상별·수준별·지역별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등),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 전문가 육성(국의 한국어 전문가 초청 교육,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 교육,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및 관리

등),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망 구축(국외 한국어 교육기관, 교육 전문가 연계 협력 체계 구축, 아시아 지역 언어정책기관 국제 학술회의 개최, 국내외 한국어 보급 및 교육 단체의 활동 지원 등), 온라인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방송 체계 구축(누리-세종학당 구축, 한국어문화 교육용 방송 프로그램 및 온라인 강좌 제작보급 등)이다.

이 가운데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망 구축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는 제2절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 ‘현지 특화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 전문가 육성’, ‘온라인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방송 체계 구축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정리하도록 한다.

#### 가. 현지 밀착형 ‘한국어 문화학교’(세종학당) 설립, 운영

이 사업의 세부 내용에는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과 세종학당 학술회의 개최’, ‘세종학당 교육 자료 지원’ 등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양적으로 급증하고 질적으로 다변화된 한국어 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기존 재외동포 대상 중심의 교육뿐만 아니라 현지 외국인 대상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여 한국어 교육 시설이 취약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시기적절하게 세종학당을 설치하여 왔다. 특히 국내의 한국어 보급의 표준화, 현지화를 위하여 예산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설립 방식 외에도 기존의 한국어 교육 기관을 ‘인증 세종학당’(10년 59개소)으로 지정하여 세종학당 공동 브랜드화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그림 3-8] 베트남 호치민 세종학당 누리집



[그림 3-9]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세종학당 누리집

세종학당은 전 세계 17개국 3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현황은 <표 3-12>, <표 3-13>과 같다.

<표 3-12>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 국가 현황('11년 1월 현재)

대 록	아시아										유럽				아 프 리 카	아 메 리 카	오 세 아 니 아	순 증	총 계
	중 국	몽 골	베 트 남	터 키	U A E	필 리 핀	태 국	인 도	카 자 흐 스 탄	타 지 키 스 탄	러 시 아	벨 기 에	영 국	이 태 리					
2007~09년	10	2								1					1			14	14
2010년			1	2	1							1	1	1	1		1	9	23
2011년	1					2	1	1	1	1								7	30

<표 3-13> 국가별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 현황('11년 1월)

연번	설립 위치		설립 기관		설립 시기	소계
1	아시아 (20개소)	중 국	연 변	연변대학	2007	11
2				연변과기대학	2007	
3			북 경	북경외국어대학 배훈학원	2007	
4				중국인민대학 신식자원관리학원	2007	
5			내몽고	한국어언문화연구소	2007	
6			서 안	서안외국어대학교	2007	
7			산 동	산동대학 위해분교	2007	
8				청도 해양대학	2007	
9			천 진	천진외국어대학	2007	
10			양 주	양주대학(영남대학교)	2007	
11			하얼빈	하얼빈사범대 대진한국센터(대진교육문화원)	2011	
12		몽골	울란바토르	몽골국립대학(공주대학교)	2007	2
13				울란바토르대학	2007	
14		베트남	호치민	호치민대학(조선대학교)	2010	1
15		UAE	아부다비	자이드대학(충남대학교)	2010	1
16		인도	방갈로르	방갈로르 한인 언어문화원	2011	1



연번	설립 위치		설립 기관		설립 시기	소계
17		터키	앙카라	투날르 TOMER(주터키대한민국대사관)	2010	2
18			이스탄불	탁심 TOMER(주터키대한민국대사관)	2010	
19		필리핀	파사이	정인한국어재단(이화여대 다문화연구소)	2011	2
20			리잘	한국쉐마학교	2011	
21		태국	방콕	탐마 대학(한국외대 한국문화교육원)	2011	1
22	중양아시아 (2개소)	카자흐스탄	알마티	아블라이한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학교(충남대)	2011	1
23		타지키스탄	두산베	계명-타지키스탄 한국어문화센터(계명대)	2011	1
24	북미 (2개소)	미국	LA	LA 한국문화원	2007	1
25		캐나다	오타와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관	2010	1
26	유럽 (4개소)	러시아	모스크바	모스크바 원광학교	2008	1
27		벨기에	브뤼셀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2010	1
28		영국	런던	런던대 SOAS	2010	1
29		이탈리아	로마	로마대(문화홍보관)	2010	1
30	아프리카(1)	짐바브웨	수타레	아프리카대학(배재대학교)	2010	1
<b>총계</b>				<b>17개국 26개 지역 30개소</b>		

인증 세종학당은 현재 한국교육원(36개소), 한국문화원(14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4개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1개소), 기타 민간단체 및 대학(4개소)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밖에도 ‘누리-세종학당’ 시스템을 개선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확충하여 세종학당의 학습자, 교원, 운영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세종학당 관련 지문위원회 운영(4회)(’09~’10), 세종학당 관련 조사 및 연구 사업 4건 추진<sup>12)</sup>(’09~’10), 세종학당 정책토론회 ‘한국어교육 발전 모델로서의 세종학당 운영방안’ 개최(’09.12.) 등으로써 한국어 세계 보급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 나. 현지 특화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세종학당 신설·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문화상호주의에 입각한 해당 지역의 문화와 정서를 효율

12) 한국어 교육기관 브랜드 통합 방안 수립(현대경제연구원), 세종학당 공동브랜드 구축을 위한 증장기 종합 홍보 방안(현대경제연구원), 한국어 교육기관 실태 및 수요 조사(이중언어학회), 세종학당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한국법제연구원)

적으로 반영한 현지 특화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동시에 전 세계의 세종학당에서 통용 가능한 한국어 교육 모형 개발·보급 등이 추진되었다.



[그림 3-10] 현지화 교재 및 교원용 지침서(일부)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보급의 일환으로는 현지 맞춤형 초급 한국어 교재 2개 언어 추가 현지화(스페인어, 러시아어), 현지 맞춤형 중급 한국어 1 교재 개발 및 출판(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필리핀어), 현지 맞춤형 중급 한국어 2 교재 개발 및 출판(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필리핀어), 현지 맞춤형 교재 교원용 지침서 개발(4종) 등이 있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로는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국제한국어교육학회),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국제한국어교육학회), 영어권 표준 한국어 교재 실태조사 및 개발방안 연구(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등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현지 특화형 수준별 학습 교재 개발·보급을 통하여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의 기반이

마련되고 교육 내용이 질적으로 향상되는 계기가 주어졌다.

#### 다.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 전문가 육성

국내외에서 한국어 교원의 자질 향상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국어 전문가 파견 교육,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교육,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확대 등을 추진하였다. 외국 현지의 수요 조사를 통하여 한국어 교원이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한국어 전문가를 파견하여 교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09년에는 8개 지역 (치앙마이, 사할린, 플로리다, 하얼빈, 하와이, 방콕, 오사카, 파리)에 16명을, '10년에는 10개 지역(LA, 몽골, 오사카, 동경, 모스크바, 북경, 사할린, 카자흐스탄, 오사카, 뉴욕)에 20명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한국어 교원을 연수시켰다. 또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교육은 연 3회 이루어졌는데 '09년에는 한국인 교원, 외국인 교원, 우수 학습자 등을 36개국에서 74명 초청, '10년에는 한국인 교원, 외국인 교원, 세종학당 교원 등을 45개국에서 115명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는 '09년 2회 실시하여 842명, '10년 3회 실시하여 2,156명의 자격자를 배출하였고, 국어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 등을 추진하여 자격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이 밖에도 '대학(원) 단기양성기관 운영 지침('10. 6.)'과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10. 6.)'를 제작·배포하였다.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사업을 통해 교원들의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혀지고 참가자 서로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으며, 국외 현지에서는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 성과를 높이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파견·연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전문적인 한국어교원이 체계적으로 배출되어 한국어의 세계화를 이루는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 라. 온라인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방송 체계 구축

이 과제는 집합형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국가나 지역의 한국어 수요자가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등 한국어 교육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추진하였다. 그 결과 누리·세종학당이 개발되었고, 한국어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각 세종학당의 다국어 누리집을 확대하고, 온라인 한국어 강좌를 텍스트 기반 강좌로도 개발함으로써 국외의 컴퓨터 및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외국인들이 보다 폭넓게 한국어 교육 관련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방송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보급함으로써 외국인들이 한국어 정보와 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누리-세종학당에 한국어·문화 교육용 프로그램 및 온라인 강좌를 제작·서비스하고 있다.



[그림 3-11] 누리-세종학당 첫 화면

세부 추진 실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누리-세종학당 구축 1차 사업('09. 9. ~'10. 2.)
  - \* 누리집(한국어, 영어) 및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 등 개발·서비스 개시
- 누리-세종학당 시스템 고도화 및 위탁 운영 사업('10. 3. ~'11. 2.)
  - \* 누리집 다국어(중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타이어) 확대, 서책형 온라인 강좌 개발(초급, 중급1), 개별 세종학당 운영 지원시스템 개발, 콘텐츠 저작 도구 등 개발

- 국립국어원-YTN 공동 한국어 교육 홍보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09)
  - \* '말을 잃은 아이들'(한글날 특집 다큐멘터리)
- EBS 외국인을 위한 실용 한국어(초급) 방송('10)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 교원, 교육 기관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한국어 학습 및 한국어교육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누리-세종학당 사이트를 구축·운영한 것은 급증하는 한국어 교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국어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요컨대, 한국어 보급 확대를 통한 한국어 세계화를 탄력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한류 열풍, 한국기업 해외 진출 증가 등으로 인해 한국어 학습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에 지속적으로 세종학당 설립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 민간 운영 등 국내외 한국어 강좌를 '인증 세종학당'이나 '세종교실'로 지정함으로써 한국어 보급 체계를 일원화하고 세종학당 프로그램 연계·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브랜드 통합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누리-세종학당 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 온라인 콘텐츠 확충, 전화 한국어 서비스 활성화 등도 남은 과제라 하겠다.

## 제4절

##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편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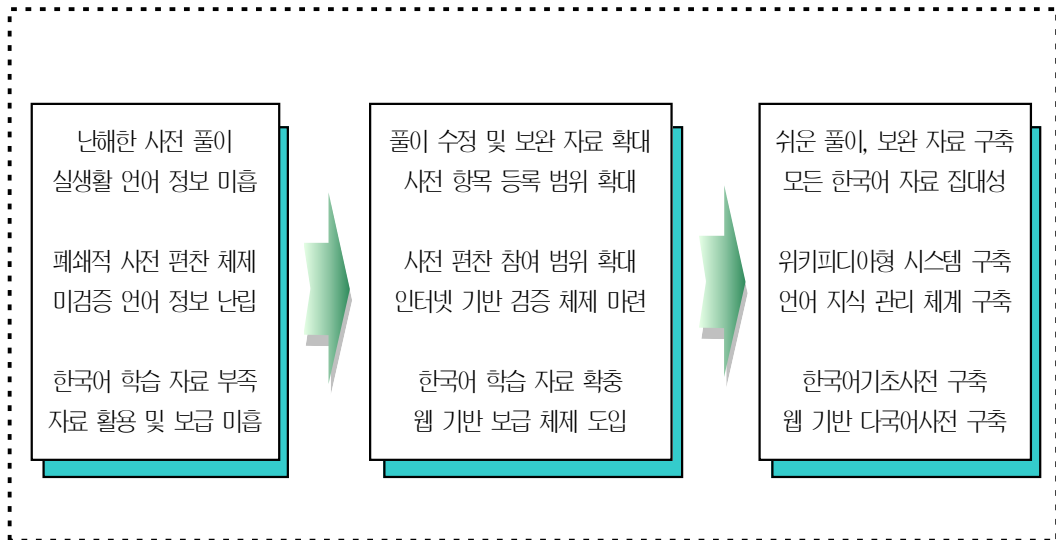
### 1. 추진 배경

국립국어원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어휘를 대폭 수록한 100만 어휘 규모의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가칭)' 구축 사업을 '09년 준비하여 '10년에 시작하였다. 이 사업에서는 국내외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5개 언어의 한국어 학습용 다국어사전도 함께 구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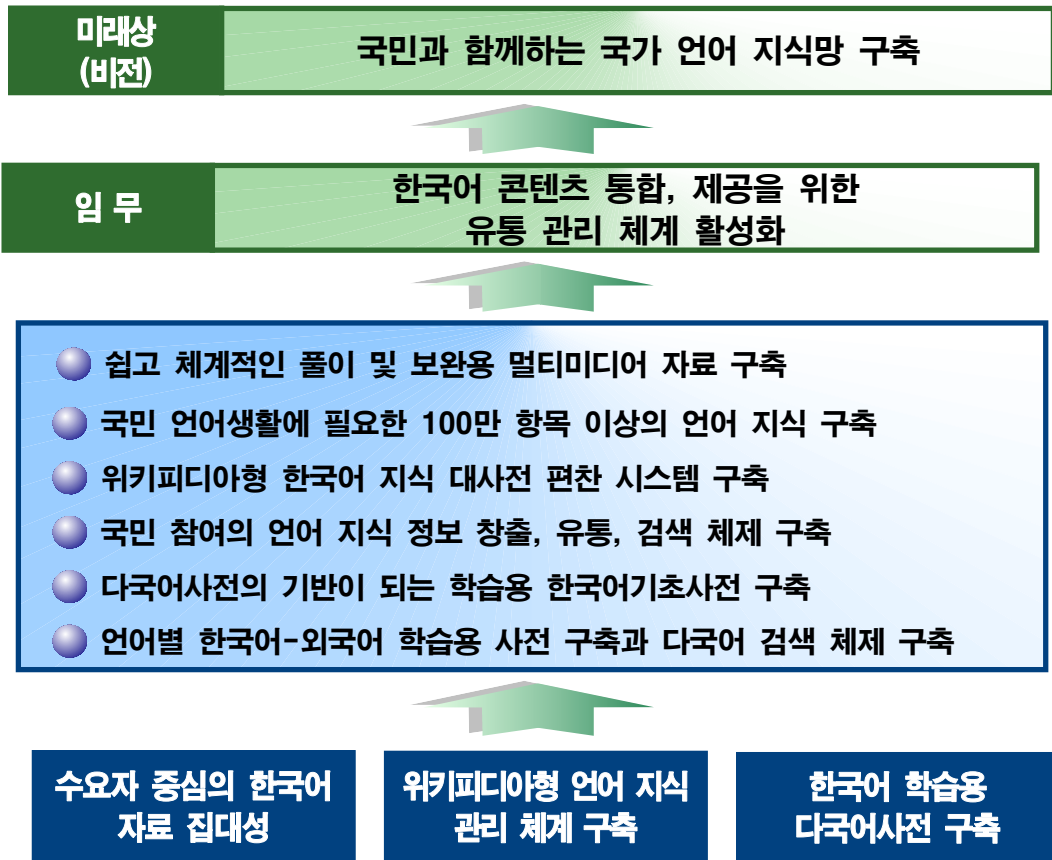
그 이전에는 '99년에 표준어 중심 50만 어휘 규모의 『표준국어대사전』을 발간하였고, '08년에 인터넷 기반 『표준국어대사전』 개정판을 서비스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부 어휘에 있어 풀이

가 다소 어렵거나 순환적·비체계적이고, 표준어 중심이어서 몇몇 실생활 언어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미흡한 면이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사전이 아닌 종이 사전 중심의 사전 편찬으로 실시간 언어 정보 반영에 한계가 있고, 정보 생산에 국민 참여를 수용할 체계가 미비하고, 지식 정보 사회에 걸맞은 언어 지식 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또 국내외 한국어 학습 수요의 비약적 증대에 따른 학습 자료 부족, 한국어 학습의 기반이 되는 기초 학습 자료 부족, 한국어 학습 자료의 보급 미흡 등에 말미암아 급증하는 한국어 수요에 대비한 한국어 학습 사전 편찬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풀이를 쉽게 수정하고 생활용어, 방언 등 실생활 자료를 대폭 수록하며,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의 언어 지식 관리 체계의 구축, 한국어 기초사전과 한국어 학습용 언어별 한국어-외국어 사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쉽고 살아 있는 사전(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편찬' 계획을 '09년에 수립한 바 있다.



[그림 3-12]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추진 배경 및 목표



[그림 3-13]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의 임무와 미래상

## 2. 추진 전략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구축 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단계 사업이 진행되며 1차년도인 2010년에는 쉬운 풀이와 신어, 방언, 전문어 등의 확충을 위한 한국어 자료 구축 사업, 위키피디아 방식을 참조한 개방형 언어 지식 관리 체계 구축 사업, 그리고 기초 어휘 5만 항목 선정과 한국어 기초사전 2만 항목 구축 및 다국어 시험 대역 등 3개 부분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개방형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이 사전은 1단계 사업이 끝나는 2012년 이후 일반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계획이다.



[그림 3-14] 단계별 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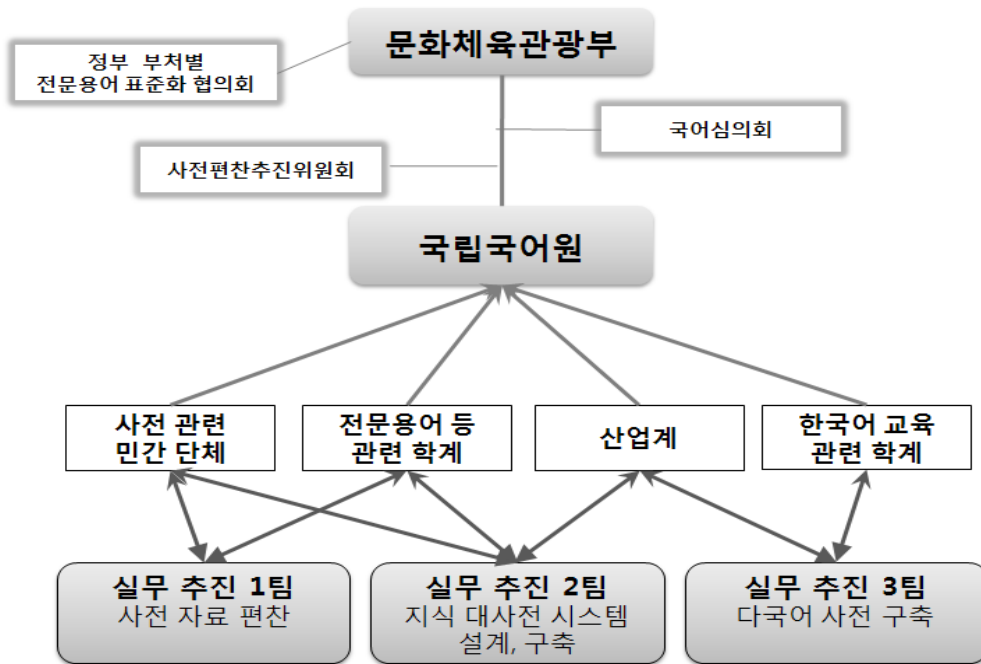
### 3. 사업 추진 체계 및 추진 방식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사업은 국립국어원에서 전체 사업을 주관하되 학계와 산업계, 민간 단체 등이 민관 협력으로 추진하고 있다.

#### 가. 추진 체계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은 국립국어원이 기획총괄하며 부문별로 산업계와 학계 등 민간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전편찬추진위원회의 지문을 받아 진행되고 있다.





[그림 3-15]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추진 체계도

#### 나. 추진 기관별 역할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편찬에 참여하는 주요 기관의 담당 역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4〉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편찬 참여 기관별 역할

기관명	주요역할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진행 총괄, 사전편찬추진위원회·국어심의회 운영, 부처 간 협력 사업 추진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부처별 전문용어 표준화 사업 결과 통보, 자료 협조
국어심의회	단계별 사전 편찬 추진 계획 최종 검토, 자문
사전편찬추진위원회	단계별 사전 편찬 추진 계획 검토, 자문
국립국어원	사업 실무 총괄, 기본 계획 수립, 세부 실행 계획 수립
실무추진팀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편찬 작업 수행(직접 수행, 용역 등)
민간단체, 관련 학계	어휘 수집, 분류 등 관련 작업 진행
산업계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시스템 설계, 구축

## 4. 주요 추진 내용

### 가. 2010년 사업 추진 실적

#### 1) 수요자 중심의 한국어 자료 집대성

기존 국어사전에서 어떤 단어의 풀이에 더 어려운 단어가 쓰였거나 그 풀이를 찾아가다 보면 원래의 단어로 돌아오는 순환적 풀이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에서는 최대한 순환적인 풀이를 지양하고 독자의 눈높이에 맞는 쉬운 풀이를 제공한다. 또한 글로만 설명되어 있는 풀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 사전의 삽화나 사진 자료를 확충하는 한편 동영상 자료 등도 함께 구축하여 한층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또한 규범사전의 성격이 강하여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 수록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던 ‘표준국어대사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표준어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신어와 방언, 새로 등장한 전문용어 등 다양한 어휘를 대폭 수록한다. 기존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되어 있던 자료는 새로 구축하는 자료와 구분하여 볼 수 있어 준거 언어로서의 역할은 계속할 수 있다.

#### 2) 위키피디아형 지식 관리 체계 구축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구축 사업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언어생활 자료를 집대성하여 디지털 국가 언어 지식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의 사전 편찬이 폐쇄적이고 한시적인 것이었다면 이번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국가 언어 지식 관리 체계는 일반인 등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하면서 국가, 전문가 집단 등이 함께 작업하여 만들어 나가는 개방적이고 지속적인 것이다.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사전은 인터넷 기반의 위키피디아 방식을 참조하여 개방형으로 설계되며 이를 통하여 일반인들이 직접 참여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일반인이 제공한 정보는 그대로 공개될 뿐만 아니라 차후 전문가의 검증 절차를 거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확증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은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정보를 확대하는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사전으로 거듭날 것이다.

### 3) 한국어 학습용 다국어사전 구축

국내외에서 급증하는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다국어사전도 함께 구축된다. 다국어사전은 한국어로 되어 있는 기초 학습사전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외국인 등이 한국어 어휘를 자신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인데, 다문화가정에서 수요가 많은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타이어, 마인어 등 5개 언어를 중심으로 우선 구축하고, 차후 다른 언어로도 확대해 갈 계획이다. 외국인에 맞추어 쉬운 풀이와 실용 용례를 등재할 한국어 기초 학습사전은 그 자체로도 한국어 학습의 주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p><b>수요자 중심의 한국어 자료 집대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쉬운 풀이 50,000항목 집필 및 용례 1,800항목 보완</li> <li>• 뜻풀이 보완 멀티미디어 자료(사진, 동영상) 360항목 구축</li> <li>• 역사 정보 제시 방안 마련 및 1,000항목 구축</li> <li>• 신어 집필 지침 작성 및 10,000항목 구축</li> <li>• 생활용어 집필 지침 작성 및 5,000 항목 구축</li> <li>• 방언 집필 지침 작성 및 20,000항목 구축</li> <li>• 전문용어 집필 대상 목록 정비(총 1,690,000항목 중 880,000항목 추출)</li> </ul>
<p><b>위키피디아형 언어 지식관리체계구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시스템 설계 및 지침 마련</li> <li>•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편찬 지원 체계 구축</li> <li>• 기초 사전 설계 및 한국어기초사전, 다국어사전 편찬, 검색 시스템 구축</li> </ul>
<p><b>한국어 교육을 위한 다국어사전 구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기초사전 표제어 50,000항목 선정 및 20,000항목 집필</li> <li>• 한국어기초사전 15,000항목 시범 대역(3,000항목×5개 언어)</li> </ul> <p>※ 5개 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마인어, 타이어, 몽골어(이주민 한국어교육 수요 반영)</p>

[그림 3-16] '10년 사업 추진 실적

## 나. 사전 집필 사례

### 1) 풀이 없이 기본 표제어로 둘러져 있는 동의어를 직접 풀이한 예

• 동의어 직접 풀이: 50,000항목 풀이 완료

- 표준국어대사전에 풀이 없이 둘러져 있는 동의어 직접 풀이

구분	예) 가극
기존 풀이	오페라(opera) 「명」 음악을 중심으로 한 종합 무대 예술. 대사는 독창, 중창, 합창 따위로 부르며, 서곡이나 간주곡 따위의 기악곡도 덧붙인다. 녹가극(歌劇)·오페(Oper).
수정 풀이	오페라(opera) 「명」 음악을 중심으로 한 종합 무대 예술. 대사는 독창, 중창, 합창 따위로 부르며, 서곡이나 간주곡 따위의 기악곡도 덧붙인다. 녹가극(歌劇)·오페(Oper). *기본 단어는 기존 풀이와 동일 가극(歌劇) 「명」 음악을 중심으로 한 종합 무대 예술. 대사는 독창, 중창, 합창 따위로 부르며, 서곡이나 간주곡 따위의 기악곡도 덧붙인다. 녹오페(Oper), 오페라(opera)

### 2)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수정한 예

• 용례 추가: 1,800항목 추가 완료

- 일반인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실용 용례 및 다양한 쓰임을 보여 주는 용례 보완

구분	예) 계약
기존 예문	¶정당한 방법으로 협의 결정된 소작료니까 {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는 없다고 내대었다. 《이태준, 농토》
추가 예문	¶{계약} 결혼/나는 그와 아무도 모르는 {계약을} 맺었다./봉건 시대에 영주와 기사는 보호와 봉사의 {계약} 관계로 맺어져 있었다.

### 3) 신어 집필 사례

놀-토(-土) 「명사」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쉬는 토요일.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이다. ¶놀토에도 나는 회사에 간다. 회사에서 마련한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다. 《한국경제 2003년 6월》/초·중등 학생들이 격주 토요일마다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인 '놀토'. 학생에게는 즐거운 날이지만 맞벌이 부부들은 그날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쿠키뉴스 2009년 11월》

대안<sup>^</sup>학교(代案學校) 「교육」

공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새롭게 고안한 학교. ¶대안 학교는 일반 교구에 비해 학생들이 스스로의 잠재적 능력이나 미래의 진로를 모색하는 데 강점을 가진다. 《경향신문 2010년 5월》/다만 대안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대안 교육 종사자들의 목소리는 내가 교사를 그만두려고 할 무렵부터 시작해서 점차 커지고 있었다. 《김중휘, 내 안의 열일곱, 산티, 2007년》

## 4) 한국어기초사전 집필 사례

당신(當身) 「대명」

- 대화에서 상대방을 높여 가리키는 말.
  -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진실을 말해 주세요.
  - 가: 당신과 나의 뜻이 같으니 우리 함께 연구를 해 보지 않겠어요?  
나: 좋아요. 당신의 의견을 좀 더 들어 보지요.
 참고: 서로 높임말을 사용하는 관계에서 쓰며 첫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  
관련어: 너이, 자네이
- 부부 사이에서 상대방을 높여 가리키는 말.
  - 당신과 결혼해서 같이 산 지 벌써 이십 년이 넘었네요.
  - 나는 당신과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요.
  - 가: 아이들이나 나나 요즘 당신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어.  
나: 미안해.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쁘네.
- 친하지 않은 사이에서 상대방을 낮추어 가리키는 말.
  - 당신 몇 살인데 계속 나한테 반말이야?
  - 이런 일도 하나 제대로 못 하고, 당신이 월급 받고 하는 일이 도대체 뭐야?
  - 가: 지금 나하고 싸우는 거야?  
나: 당신이 먼저 시작했잖아.
 참고: 주로 싸울 때 사용한다.
- 이야기되고 있는 어른을 높여 다시 가리키는 말. 그 분 자신.
  - 할머니는 손자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자주 해 주신다.
  - 시골에 계신 어머니의 유일한 낙은 당신을 만나러 오는 자식들을 맞는 것이다.
  - 아버지는 퇴직 후 당신이 할 일을 찾아보겠다고 하셨다.
  - 어머니는 당신의 무릎에 내 머리를 눕혔다.

## 5) 다국어사전 집필 사례

류이다

- 끈, 줄 등이 매듭지어지다.
  - 몽골어 대응 어휘: зангидагдах.
  - 몽골어 번역: оосор, тууз мэт зүйл уягдах.
  - 베트남어 대응 어휘: bị cột lại, bị buộc lại, bị trói lại
  - 베트남어 번역: thắt gút , cột dây lại
  - 타이어 대응 어휘: หัก, หัก
  - 타이어 번역: ( หัก หัก หัก หัก หัก หัก หัก หัก หัก หัก ) หัก หัก หัก หัก
  - 마인어 대응 어휘: terikat
  - 마인어 번역: terikat(tali, karet, benang)
  - 러시아어 대응 어휘: быть связанным, быть связанным.
  - 러시아어 번역: Быть закрепленным с помощью узла, банта и т.п.(о шнурке, веревке и т.п.).
- 사람이나 물건이 기둥, 나무 등에 붙들어 매어지다.
  - 몽골어 대응 어휘: хүлэгдэх, хүлээстэй байх.
  - 몽골어 번역: хүн ба юм багана, мод зэрэгт баглагдан боогдсон байх.
  - 베트남어 대응 어휘: bị trói vào
  - 베트남어 번역: người hay vật bị trói vào thân cây hay cây cột
  - 타이어 대응 어휘: ๒๒
  - 타이어 번역: ๒๒ ( หัก หัก หัก หัก หัก หัก หัก หัก หัก หัก ) หัก หัก หัก หัก หัก หัก หัก หัก หัก หัก
  - 마인어 대응 어휘: terikat(orang, benda)
  - 마인어 번역: terikat di tiang, pohon, dan semacamnya(orang atau benda)
  - 러시아어 대응 어휘: быть привязанным.
  - 러시아어 번역: Быть прикрепленным к чему-либо с помощью веревки, ремня и т.п. (о человеке, предмете и т.п.).

## 5. 단계별 사업 내용

### 가. 수요자 중심의 한국어 자료 집대성

#### 1) 쉬운 풀이 및 보완 자료 구축

1단계 ('1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뜻풀이 수정 및 보완</li> <li>● 풀이를 보완할 용례 확장</li> <li>● 인터넷 기반 사전의 특성을 활용한 풀이 보완 자료 구축</li> </ul>
2단계 ('1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뜻풀이 수정 및 보완 작업 지속적 추진</li> <li>● 풀이를 보완할 용례 확장 작업 지속적 추진</li> <li>● 풀이 보완 자료 구축 지속적 추진</li> <li>● 언어 및 지식 정보 구축에 사용자 참여 유도</li> <li>● 사용자 구축의 언어 및 지식 정보의 검증과 사전 반영</li> </ul>
3단계 ('16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뜻풀이 수정 및 보완 작업 지속적 추진</li> <li>● 풀이를 보완할 용례 확장 작업 지속적 추진</li> <li>● 풀이 보완 자료 구축 지속적 추진</li> <li>● 언어 및 지식 정보 구축에 사용자 참여 유도</li> <li>● 사용자 구축의 언어 지식 정보 및 자료의 검증, 사전 반영</li> <li>● 지식 정보의 활용과 민간 출판 지원</li> </ul>

#### 2) 개방적 실생활 한국어 자료 구축-생활 용어, 전문용어, 방언 등

1단계 ('1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용어 7만 항목 구축</li> <li>● 전문용어 34만 항목 구축</li> <li>● 지역별 방언 9만 항목 구축</li> </ul>
2단계 ('1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용어, 전문용어, 방언의 추가 구축(쉬운 풀이, 용례 등)</li> <li>● 추가 자료 및 지식 정보 구축과 전문가 검증</li> <li>● 검증된 언어 지식 정보의 사전 반영</li> </ul>
3단계 ('16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용어, 전문용어, 방언의 추가 구축(쉬운 풀이, 용례 등)</li> <li>● 검증된 언어 지식 정보의 지속적 사전 반영</li> <li>● 민간 출판 및 활용 지원</li> </ul>

## 나. 위키피디아형 지식 관리 체계 구축

### 1) 설계 및 개방형 정보 수집, 분석 시스템 개발

1단계 (’1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기반의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분석, 설계, 통합</li> <li>● 구축된 언어 정보 통합, 변환 및 등록</li> <li>● 개방형 어휘 수집, 분석 시스템 개발(비동형어 분석 감지)</li> </ul>
2단계 (’1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미 기반 웹 환경 대응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분석, 관리, 변환</li> <li>● 수집된 언어 정보 정제, 등록 및 연계</li> <li>● 지능형 어휘 의미 수집 분석 시스템 개발(동형어 분석 감지)</li> </ul>
3단계 (’16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세대 웹 표준 기반의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고도화</li> <li>● 수집된 언어 정보 통합, 정제 및 확산</li> <li>● 통합형 어휘 의미 수집, 분석 시스템 고도화</li> </ul>

### 2) 국민 참여형 편찬, 관리 및 검색 시스템 개발

1단계 (’1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키피디아형 사전 편찬 및 관리 시스템 개발</li> <li>● 언어 정보의 유통·검색 지원 시스템 구축</li> </ul>
2단계 (’1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 편찬 및 관리 시스템 고도화</li> <li>● 개방형 콘텐츠 상호 연계 시스템 구축</li> <li>● 수요자 맞춤형 언어 정보 활용 시스템 구축</li> </ul>
3단계 (’16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능형 사전 편찬 지원 시스템 구축</li> <li>● 언어 정보 자원 교육 지원 시스템 개발</li> </ul>

## 다. 한국어 학습용 다국어사전 구축

### 1) 한국어기초사전 구축

1단계 ('1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 등재 어휘 선정(5만 항목)</li> <li>● 선정 어휘 집필(5만 항목)</li> <li>● 한국어 학습 시 필요한 실용 용례 제시</li> <li>● 어휘 학습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시</li> </ul>
2단계 ('1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어휘 학습 정보 추가</li> <li>● 그림 및 동영상 등 교육 자료의 추가 구축</li> <li>● 학습자 맞춤형에서 선정한 학습자 오류 용례 및 교정 제시</li> <li>● 범용 한국어 교재와 연동하여 국내외 교육기관의 보충 학습 기능 강화</li> </ul>
3단계 ('16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와 교사의 교육 자료 추가 구축 유도</li> <li>● 웹을 통한 학습 및 평가 기능 강화</li> <li>● 사용자 평가 및 피드백 유도</li> <li>● 언어권별 대역어 및 다언어, 다문화 지식 보완</li> </ul>

### 2) 언어권별 한국어 학습용 다국어사전 편찬

1단계 ('1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국어사전 설계, 분석 및 대역 사전 모형 완성</li> <li>● 5개 언어의 한국어-외국어 사전 구축</li> <li>● 다국어사전 편찬 검색 시스템 구축</li> </ul>
2단계 ('1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국어사전의 5개 언어 추가 구축</li> <li>● 풀이 보완 자료 및 교육 학습 자료의 지속적 보완 구축</li> <li>● 다국어사전의 대역 오류 수정에 사용자 참여 유도</li> <li>● 다국어사전에 대한 반응 조사 검토(모형 보완 및 수정 등)</li> </ul>
3단계 ('16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국어사전의 10개 언어 추가 구축</li> <li>● 풀이 보완 자료 및 교육 학습 자료의 지속적 보완 구축</li> <li>● 다국어사전의 모형 보완 및 수정</li> <li>● 다국어사전의 민간 활용 및 출판 지원</li> </ul>



## 6. 기대 효과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어휘를 대폭 수록하고 어려운 풀이를 쉽게 수정하여 국민의 언어생활에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위키피디아 방식의 디지털 사전으로 만들어지면서 한국어 학습용 다국어사전까지 포함하게 되어 명실상부한 국가 언어 지식의 큰 길잡이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한국어 학습용 다국어사전은 다문화가정에서 수요가 많은 베트남어 등 5개 언어를 중심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다국어사전의 기본이 될 수 있는 5만 어휘 규모의 한국어기초사전도 함께 개발되고 있다. 이 사전이 완성되면 이를 통해 국내외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층 쉽게 우리말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 제5절

## 언어의 공공성 향상

### 1. 추진 배경

일상언어에서 비속어, 막말, 무분별한 외국어가 남용되고 공문서, 행정 용어 등 공공기관의 언어 표현이 국민들에게 원활하고 효과적인 소통으로 이어지지 않는 면이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언어의 공공성 향상’ 과제이다. 이는 지속적인 국어 순화 및 정비 사업을 통해 우리말을 중시하는 국어 의식을 고양함과 동시에 우리말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한다는 목표를 지닌다. 세부 과제로 국어 순화 사업의 강화, 공문서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언어 표현 개선, 교과서, 법령문 감수 제도 정착 등을 추진하였다.

## 2. 추진 내용

### 가. 국어 순화 사업의 강화

국어 순화 사업은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www.malteo.net)' 누리집을 통하여 남용되고 있는 외래어와 외국어를 선정하여 우리말로 다듬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격주 1개(연간 26개)의 순화 대상어를 누리꾼이 참여하여 순화하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대중들이 순화어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국민이 직접 국어 순화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하는 순화어 생산은 물론 우리 말글 사랑의식을 고취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09~'10년에 다루어진 순화 대상어와 순화어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5〉 '09~'10년 순화 대상어와 순화어 목록

번호	'순화 대상어'와 '순화어'	공지일
1	'폴리페서(polifessor)'는 '정치철새교수'로	2009.01.06.
2	'NG(no graduation)족'은 '능장졸업족'으로	2009.01.13.
3	'글램핑(glamping)'은 '귀족야영'으로	2009.01.20.
4	'가십(gossip)거리'는 '입방아거리'로	2009.02.03.
5	'루비(RUBY)족'은 '새봄여성'으로	2009.02.10.
6	'스포테인먼트(spotainment)'는 '흥끌이운동'으로	2009.02.17.
7	'패키지(package)상품'은 '꾸러미상품'으로	2009.02.24.
8	'후크송(hook song)'은 '맴돌이곡'으로	2009.03.03.
9	'헬리콥터부모'는 '치마폭부모'로	2009.03.10.
10	'웰본(well-born)'은 '배넛바라지'로	2009.03.17.
11	'시시티브이(CCTV)'는 '상황관찰기'로	2009.03.24.
12	'스펙업(spec-up)'은 '깜냥쌓기'로	2009.03.31.
13	'넷북(Net-book)'은 '손누리틀'로	2009.04.07.
14	'프티성형(petit成形)'은 '여우비성형'으로	2009.04.14.
15	'헤비업로더(heavy uploader)'는 '누리물난전꾼'으로	2009.04.21.
16	'킬힐(killheel)'는 '까치발구두'로	2009.04.28.
17	'생식건강'은 '생명생건강'으로	2009.05.05.
18	'줌마테이너'는 '재치부인'으로	2009.05.12.
19	'키덜트(kidult)'는 '어른왕자'로	2009.05.19.
20	'블록(block)'은 '누리글보따리'로	2009.05.26.
21	'웹툰(webtoon)'은 '누리터쫓그림'으로	2009.06.02.
22	'사이버대학(cyber大學)'은 '두루누리대학'으로	2009.06.09.
23	'브로마이드(bromide)'는 '벽불이사진'으로	2009.06.23.

번호	‘순화 대상어’와 ‘순화어’	공지일
24	‘랜드마크(landmark)’는 ‘마루지’로	2009.07.07.
25	‘핫이슈(hotissue)’는 ‘주요쟁점’으로	2009.07.21.
26	‘레시피(recipe)’는 ‘조리법’으로	2009.08.04.
27	‘마이크로블로그’는 ‘덧글나눔터’로	2009.08.18.
28	‘멘토(또는 멘터)’는 ‘인생길잡이’로	2009.09.01.
29	‘팝업창’은 ‘알림창’으로	2009.09.15.
30	‘아이콘(icon)’은 ‘상징(물)’로	2009.09.29.
31	‘노이즈마케팅(noise marketing)’은 ‘구설(수)홍보’로	2009.10.13.
32	‘정크푸드(junk food)’는 ‘부실음식(식품)’으로	2009.10.27.
33	‘커플룩(couple look)’은 ‘ 짝궁차림’으로	2009.11.10.
34	‘유에스비(USB)메모리’는 ‘정보막대’로	2009.11.24.
35	‘갈라쇼(gala show)’는 ‘뒤풀이공연’으로	2009.12.08.
36	‘캠프파이어(campfire)’는 ‘모닥불놀이’로	2009.12.22.
37	‘리콜(recall)’은 ‘결함보상제’로	2010.01.05.
38	‘아킬레스건(Achilles 腱)’은 ‘치명(적)약점’으로	2010.01.19.
39	‘아이젠(eisen)’은 ‘눈길덧신’으로	2010.02.02.
40	‘워킹맘(working mom)’은 ‘직장인엄마’로	2010.02.16.
41	‘하이파이브(high five)’는 ‘손뼉맞장구’로	2010.03.02.
42	‘발레파킹(valet parking)’은 ‘대리주차’로	2010.03.16.
43	‘카시트’는 ‘아이안전의자’로	2010.03.30.
44	‘스마트폰(smart phone)’는 ‘똑똑(손)전화’로	2010.04.13.
45	‘숍인숍(shop in shop)’은 ‘어울가게’로	2010.04.27.
46	‘할리우드액션(Hollywood action)’은 ‘눈속임짓’으로	2010.05.11.
47	‘노블레스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지도층의무’로	2010.05.25.
48	‘테스터(tester)’는 ‘체험평가자’로	2010.06.08.
49	‘코르사주(corsage)’는 ‘맵시꽃’으로	2010.06.22.
50	‘헤드셋(headset)’는 ‘통신머리띠’로	2010.07.06.
51	‘더치페이(Dutch pay)’는 ‘각자내기’로	2010.07.21.
52	‘보드마커(board marker)’는 ‘철판펜’으로	2010.08.04.
53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누리소통망(서비스)’으로	2010.08.17.
54	‘스마트워크(smart work)’는 ‘원격근무’로	2010.08.31.
55	‘오픈마켓(open market)’은 ‘열린장터’로	2010.09.15.
56	‘선루프(sunroof)’는 ‘지붕창’으로	2010.09.28.
57	‘슬로시티(slow city)’는 ‘참살이지역’으로	2010.10.12.
58	‘멀티탭(multi-tap)’은 ‘모뎀꽂이’로	2010.10.27.
59	‘타운하우스(town house)’는 ‘공동전원주택’으로	2010.11.09.
60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는 ‘공동할인구매’로	2010.11.23.
61	‘와이파이(Wi-Fi)’는 ‘근거리무선망’으로	2010.12.08.
62	‘PL(private label)상품’은 ‘자체기획상품’으로	2010.12.21.

## 나. 공공 기관의 언어 표현 개선

공공기관의 행정용어, 전문용어, 공문서 검토 요청에 따라 각급 기관이 생산하는 공문서에 대한 상시 감수 체제를 운영하였다. 특히 공공언어 생산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공언어지원 누리집을 개설하여 지원 요청과 결과를 빠르고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공공언어 개선을 지원하였다.



[그림 3-17] 공공언어지원 누리집

'09~'10년 간 이루어진 공공기관 언어 표현 개선 지원은 총 133건으로 행정용어·정책(제도)명·신설 기관(부서)명·구호 등 48건(중앙부처 21건, 지방자치단체 15건, 공공단체 12건), 대외공문·보도자료·안내문·공고문 등 61건(중앙부처 26건, 지방자치단체 18건, 공공단체 17건), 법령·계획서·보고서·지침서 등 12건(중앙부처 5건, 지방자치단체 4건, 공공단체 3건), 기타 12건(중앙부처 7건, 지방자치단체 3건, 공공단체 2건)이 있었다. 공공기관에서 국립국어원의 공공언어 지원단과 공공언어지원 누리집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어서 공공언어 개선에 매우 효과적인 체계가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표 3-16〉 국립국어원의 외부 기관 지원 요청 대응 현황

번호	기관	지원 내용
1	국립민속박물관	자료관리규정 용어의 적합성 여부 검토
2	국기원	태권도 용어 정비 자문
3	국세청	세무 용어 개선안 검토
4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기술용어 사전 개발 사업 자문
5	약학정보원	의약품의 제형, 용기 등의 용어 표준화 관련 자문
6	행정안전부	법률 용어 정비 관련 자문
7	대한의사협회	의학용어집 제5판 수정 및 보완 자문
8	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정보 표준화를 위한 자문
9	한국마사회	경마용어 순화 시안 감수
10	한국전력공사	전기 공급 약관 순화 용어 검토
11	경찰청	경찰청 예규 개정 관련 사용 용어 자문
12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 용어 순화 관련 자문
13	산림청	산림행정용어 정비 관련 자문
14	노동부	기능장려법 개정안 용어 자문

#### 다. 교과서, 법령문의 감수 제도 정착

교육과학기술부(위탁 기관 포함)의 감수 요청에 따라 교과서 수시 감수 체제를 운영함은 물론,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 및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의 내용 감수 등 국회 법제실, 법제처 등의 법률 용어 순화 요청에 따라 수시로 검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공공언어 개선을 통한 공공기관과 국민 간의 소통을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하고자 하였다.

교과서 검정 자동화와 선진화 요구에 따라 교과서 표기·표현 검정 시스템 개선을 지원할 필요 성과, 교육 현장에서 교과서를 보완할 교육 자료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교과서 보완 지도 자료’를 감수한 것을 비롯하여 ’09년, ’10년 각각 약 1,500권의 국정 및 검인정 교과서를 감수하였다.

〈표 3-17〉 교과서 감수 현황

세부 내용	추진 실적
2009년 검인정 교과서 표기·표현 기초 조사	•중등, 고등 교과서 700여 종의 표기·표현 기초 조사
2009년 2학기 국정 교과서 어문 규범 감수	•초등 1·2학년 2학기 교과서 18책 2,047쪽 어문 규범 감수
2010년 검인정 교과서 표기·표현 기초 조사	•초등, 중등, 고등 교과서 700여 종의 표기·표현 기초 조사
2010년 1학기 국정 교과서 어문 규범 감수	•초등 3·4학년 1학기 교과서 26책, 3,608쪽 어문 규범 감수 •중등 생활 외국어 교과서 5책, 768쪽 어문 규범 감수
2010년 2학기 국정 교과서 어문 규범 감수	•초등 3·4학년 2학기 교과서 19책, 2,771쪽 어문 규범 감수
2011년 1학기 국정 교과서 어문 규범 감수	•초등 5·6학년 1학기 교과서 22책, 3,700쪽 어문 규범 감수 •고교 보통 교과서 3책 800쪽 어문 규범 감수 •특수학교 이료 교과서 10책 2,284쪽 어문 규범 감수

### 3. 기대 효과

교육과학기술부와 입법 관련 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문규범 준수와 쉬운 용어 사용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국립국어원에 지속적인 지원 요청을 하고 있어서 교과서와 법령문, 각종 공문서의 언어 개선에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각종 공공기관에서 요청하는 전문용어, 행정용어들에 대해 감수 의견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기술표준원의 KS표준규격용어 제정에 참여함으로써 전문용어 표준화의 실질적 혜택이 각 기관에 돌아가고 국민들에게도 파급되도록 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공공언어 생산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공언어지원 누리집을 개설하여 지원 요청과 결과 통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공공언어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의사소통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 제4장 향후 추진 계획

제1절 추진 개요

제2절 주요 추진 계획





## 제4장 향후 추진 계획

### 제1절

### 추진 개요

「국어기본법」 제6조에 따라 시행한 2007~2011년의 제1차 국어발전기본계획이 올해로 시행 5년을 맞았다. 급변하는 국어 환경과 국내외 한국어 교육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국가 언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두고 부문별 국어 진흥 시책을 마련하였던 이 기간 동안 정부는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제 국어발전기본계획(2007~2011)의 공과를 치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국어발전기본계획(2012~2016)을 마련할 때다.

국어발전기본계획(2007~2011)에서는 1)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체계 정비 2) 동북아시아 거점 기반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 3) 다국어 지원 한국어 학습용 웹사전 편찬을 3대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하였는데, 2)와 3)은 결국 한국어 세계화와 관련된 것이고 구체적인 추진 내용에서도 한국어 세계화 전략에 관한 것이 가장 많았다. 이는 우리가 유사 이래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계인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며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에 맞춘, 적절한 대응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 세계화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대상도 주로 동북아시아권에 한정되어 있어 한국어 교육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등 앞으로도 국어 정책의 주요한 축으로 지속적이며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언어공동체 내부에 시행하는 언어정책의 목표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최근의 사회적인 화두는 다문화의 수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다면 ‘다문화·다언어 사회의 공존’이 어문정책의 한 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즉, 국내적으로 다변화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 계층, 이주민 등 다양한 사회 공동체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쉬운 공공 언어 쓰기 확대와 통합의 국어 문화 확산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국어 능력을 전제하므로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는 정책적인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은 우리 민족과 문화의 정체성을 이루는 대들보라 할 수 있는 국어의 내적·외적인 발전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하기 쉬우면서 세련된 표현·표기 지원 등 국어의 내용적인 면과 더불어 정보화 수단을 통한 손쉬운 검색 등 국어 사용 선진화도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공공기관의 언어 사용, 국민의 국어 표현 능력 등이 개선 또는 신장되고, 이를 통해서 한국어에 대한 인식도 나아짐에 따라 세계 속에서 차지하는 한국어의 위상이 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의 언어 사용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국어 자료를 구축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우리의 대표적인 언어 문화 자산인 한글 관련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수집·전시하여 국내외에 널리 알리며 한글날 행사를 다양화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한글 활용도를 높이는 등 한글의 국내외 위상을 높이는 데 더욱 매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요 정책 중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대내적으로 언어의 공공성 향상, 대외적으로 한국어 해외 보급 사업을 꼽을 수 있다.

〈표 4-1〉 향후 추진 개요

한국어 교육 기반 강화	가. 국내외 한국어 교육 확대 나. 세종학당 운영 내실화 다.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 라. 한국어 교원의 체계적 양성 및 교육 등
쉬운 공공언어 쓰기 확대	가. 공공기관 언어 사용 개선 지원 나. 각종 문서 양식 개선 다. 전문용어 표준화 및 순화 라. 공공언어 사용 지침서 발간 및 보급 등
통합의 국어 문화 확산	가. 어문규범 개선 나. 언어 소외 계층 국어 사용 지원 다. 남북 언어 통합 기반 강화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가. 국어전문 교육과정 개발 운영 나. 청소년 언어 개선 다. 국어 사용 개선 캠페인 추진 라. 우리말가꿈이 운영 지원 등
국어 콘텐츠 구축 및 서비스	가.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구축 및 운영 나. 유형별 말뭉치 구축 다. 지역어 조사 및 관리 등
한글의 국내외 위상 제고	가. 한글박물관 건립 및 운영 나. 한글날 행사 다양화 다. 한글 활용도 강화 등

## 제2절 주요 추진 계획

### 1. 한국어 교육 기반 강화

#### 가. 국내외 한국어 교육 확대

국어발전기본계획(2007~2011)의 3대 중점 추진 과제 가운데 하나였던 ‘동북아지역 거점 기반 한국어 세계화 전략’에서 추진해온 비를 계승하여 궁극적으로 유럽, 북미, 남미 등 한국어 교육이 전 세계로 점차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한류 열풍,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등 한국어 학습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에 세종학당의 설립을 확대한다.

대내적으로는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나 민간에서 설립·운영하는 대학의 어학 강좌 등 국내외의 한국어 강좌를 세종교실로 지정하고 세종학당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등 브랜드 통합을 추진한다.

#### 나. 세종학당 운영 내실화

세종학당은 국내외의 한국어 교육 기관(또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통합 브랜드를 목표로 출발하여 2011년 현재 17개국 30개소에 개설되었으며, 오는 9월부터 프랑스, 동남아 등 10곳이 추가로 개설될 예정이다. 2015년까지 150개소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종학당 건립·운영 사업에서는 앞으로 수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운용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표 4-2〉 세종학당 설립 중기 계획(누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4개소	23개소	40개소	70개소	100개소	130개소	150개소

세종학당 운용의 내실화를 위해서 먼저 멀티미디어 교육 및 전용 문화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음악(K-POP 등),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이 교수·학습을 위한

기자재를 지원하도록 한다. 이때 각 세종학당별 수요를 분석하여 시급성, 효과성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세종학당에 전용 공간을 확보하고, 안내 창구와 로비, 15명 기준 강의실, 자료실 등을 갖춘 교육·문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의 표준화 및 전문성을 높여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10년 국어원 개발) 및 세종학당용 표준 교육과정('11.12월 개발 완료 예정)에 따라 세종학당의 단계별(초·중·고급) 교육과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

〈표 4-3〉 한국어 기본교재 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국립국어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초급 한국어	교재	발간					
	통합본				개발/발간		
	교원 지침서			읽쓰기(개발)	읽쓰기(발간)	말하기듣기(개발)	말하기듣기(발간)
중급(통합본) 1	교재	개발	발간				
	교원 지침서		개발	발간			
중급(통합본) 2	교재		개발	발간			
	교원 지침서			개발	발간		
학습자 워크북, 멀티미디어 자료							

세종학당에서는 한국어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되, 해외 현지에서 자격자 확보가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전공·경력 등을 고려한 '광의의 전문교원' 채용을 한시 허용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교원자격자 해외 파견 및 현지 교원 양성을 통해 2015년까지 교원자격자 충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표 4-4〉 세종학당 교원자격자 충원 비율의 확대

연 도	'11년	'12년(목표)	'13년(목표)	'14년(목표)	'15년(목표)
기관당 유자격자 수(세종학당+문화원)	1명	2명	3명	4명	6명
기관 평균 교원 수	5.4명	6명 기준			
기관당 유자격 비율(유자격자/총 교원)	17.5%	33%	50%	67%	100%

운용면에서 표준교육과정과 교재, 평가, 학사관리 등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의 제재 사항 등에 대한 실효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향후 ‘세종학당재단’을 설립하여 총괄적으로 운영을 지원하고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 다.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

아직까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초기 단계에 있어, 교수법이나 교재, 교육 환경 등 개선의 여지가 적지 않다. 특히 현재 한국어교육 분야는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교육학’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외국인에게 직접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와 한국어 교육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연구자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역할의 미분화는 결과적으로 질적인 한국어 교육을 시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일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외국인에게 현장에서 직접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어 교원과 한국어 교육의 효과적인 운용 및 교수 학습법, 언어 이론 등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역할이 구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 전문가를 육성한다. 둘째, 이주 결혼 여성, 외국인 근로자, 학문 목적의 유학생 등 한국어 교육 대상에 따른 특화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셋째, 누리-세종학당에서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여 외국인 학습자의 요구에 맞게 중급 및 고급 수준으로 개발·제공하도록 한다. 단, 한국어 교육 시장의 확대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다수 등장할 경우 민간의 사업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넷째, 한국어 학습자의 출신지 특성과 문화를 고려한 현지 맞춤형 한국어 교육 자료의 개발을 지원한다.

#### 라. 한국어교원의 체계적 양성 및 교육 등

국내외의 한국어 학습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필연적으로 전문적인 한국어 및 한국어 교육 지식을 갖춘 한국어교원이 요구된다. 2005년 「국어기본법」 시행 이후 국가에서 인정하는 한국어교원 자격증 제도가 실시되면서 2010년 5월 현재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국내 대학의 한국어 교육 전공 학부 및 대학원 전공 과정을 거친 인원과 단기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한국어교원 자격시험을 통과한 인원을 합쳐 4,643명에 이른다. 그러나 한국어교원의 숫자를 확보하는 것만

으로 한국어 교육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격언처럼 한국어 교육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한국어교원의 질적 양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현재 한국어교원은 대학의 한국어 교육 전공 학부 및 대학원 전공의 정규 과정을 통해 배출되거나 단기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을 통해 배출되고 있다. 전자는 대학의 정규 과정을 통해 배출되는 만큼 한국어교원으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으나 단기 양성 과정의 경우 비록 「국어기본법」에서 정한 120시간의 한국어 교육 관련 수업을 이수했다고 하나 국어, 국어학, 또는 교수법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 보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는 다음 다섯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다양한 재교육 프로그램과 연수 등을 통하여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현직 교원이나 자격증 소지자에게 해외 파견 등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둘째, 국내 상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 하에 있는 국외 한국어 교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현지 한국어 교사의 국내 연수 기회를 점차 확대하는 등 지원책을 강화하도록 한다.

셋째, 국내에 우후죽순 격으로 개설된 단기 한국어양성 과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한국어 양성 과정의 질적 수준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장기적으로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을 인증제로 전환하며 부실한 운영이 지속될 경우 양성과정 운영을 제한하도록 한다.

넷째, 단기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단기 양성과정의 수준이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한국어교원으로서의 능력을 평가하는 공인 시험인 한국어교육능력시험이 명실 공히 한국어 교육 능력자를 제대로 뽑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시험이 될 수 있도록 시험의 내용이나 수준 등이 현실화되고 일관성이 있도록 개선한다.

## 2. 쉬운 공공언어 쓰기 확대

### 가. 공공기관 언어 사용 개선 지원

2009년 남녀 18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80% 이상이 민원 서식

을 사용할 때 불편하다고 응답하는 등 공공언어 사용에 적지 않은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또한 계약서나 약관 등 국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 문서에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등 어문규범의 오류가 빈번할 뿐만 아니라 계약서나 약관의 문장이 법적 명료성이나, 공정성, 정보성 등에서 불투명하여 해석상 이용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2009년 실시한 공공기관 누리집의 전면적인 언어 실태 조사 결과 적지 않은 우리말 훼손 사례와 외래어·외국어 남용, 어문규범에 어긋난 말들이 다수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듯 우리 사회의 공공언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쳐져야 할 점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공공언어 개선은 정부 등 공공언어 생산자와 일반 국민인 소비자 사이에 있는 의사소통의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양자가 최상의 이익을 얻도록 하며, 지역간·세대간 소통의 벽을 낮추어 언어 소수자 및 약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갖는다. 그러므로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강력하며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 방안으로는 크게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 1) 공공기관 자정 환경 마련

- 가. 국어순화 사업을 강화하고 국어 순화 결과를 공공기관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보급한다.
- 나. 현재 국립국어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공언어 다듬기 지원 사업을 널리 홍보하여 새로운 민원 문서를 만들거나 계약서, 약관, 누리집 개편 시 사전에 감수를 받도록 한다.
- 다. 국어책임관의 책무를 강화하여 국민을 상대로 한 각종 문서(민원 서식, 누리집 문서 등)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의무화한다. 국어책임관의 ‘지역민의 쉽고 바른 국어 사용 활성화’ 임무를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반영하도록 추진한다.
- 라. 해당 기관에 있는 지역의 국어문화원과 연계하여 수시로 공공문서를 개선해 나가며, 더불어 국어문화원이 지역의 언어 사용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내 맞춤법, 띄어쓰기, 로마자 표기법의 오류를 발견하여 시정토록 알려주는 알림이 기능을 수행한다.

### 2) 벌점 또는 불이익 제도 시행

- 가. 정기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의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적절하지 않은 언어 사용이 발견되었을 때 해당 기관에 실효성 있는 불이익을 부여한다(더불어 국민이 직접 신고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나. 기관에서 만든 계약서나 약관이 어문규범 오류나 중의적인 문장으로 해석상 피계약자인 국민에게 불리할 경우, 그 책임을 계약서나 약관을 만든 담당 기관이 부담케 함으로써 향후 불명료한 계약서나 약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 나. 각종 문서 양식 개선

2009년 조사에서 일반인이 공공기관의 민원서식 작성에서 느끼는 어려움의 요인을 묻는 설문 조사 결과 어려운 요소가 ‘문서 용어 > 작성 절차 > 작성 안내 설명문 > 문서 제목’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로 다른 기관에서 사용하는 각종 민원 문서 용어를 가급적 쉬운 말로 통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작성 절차의 편의를 위해 민원 문서의 구성과 형식을 가급적 통일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공동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공공기관이 필요에 따라 새로 민원 문서를 만들거나 서식을 바꿀 경우 일정한 서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민원 서식 감수 기구나 제도를 두어 각 기관의 민원 서식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형식이 최대한 통일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민원 문서 작성 시 작성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견본 수준의 도움 외에 구체적인 작성 안내집을 만들어 비치하는 등 민원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토록 할 필요가 있다.

### 다. 전문용어 표준화 및 순화

일반적으로 전문용어는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구분되는 것으로 학술 목적이거나 특정 직업군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어휘를 말한다. 그런데 「국어기본법」 제17조에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 전문용어가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무관하지 않다. 예를 들어 의학이나 약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전공자 입장에서 전문용어이지만 병원이나 약국을 수시로 이용해야 하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법률, 행정, 교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 전문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이렇듯 전문용어 영역에 포함되는 상당 부분의 어휘는 실제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널리 사용한다. 그러므로 먼저 일반인도 같이 접하게 되는 전문용어와 그렇지 않은 것을 선별하고, 일반적 전문용어는 쉬운 말로 다듬어 표준화해야 한다.

이러한 기초에서 전문용어를 효율적으로 표준화 및 순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



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전문용어의 처리는 성격상 각 전문 분야의 전공자가 중심이 되어 수행해야 한다. 이때 각 전문 영역별로 처리의 원칙이 통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전문 영역의 용어 표준화를 포괄할 수 있는 전문용어 표준화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전문용어 표준화 및 순화 작업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전문용어의 표준화는 성격상 개인에 의존하기보다 학회나 기관 등 대표성을 갖는 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 각 영역별 대표 단체나 학회들이 같이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를 구성토록 지원한다. 셋째, 전문용어의 국제적 호환성 확보를 위한 국제 활동 및 국제 표준의 수용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한다. 넷째, 민간의 전문 단체가 전문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라. 공공언어 사용 지침서 발간 및 보급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잘못을 개선하고 공공언어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공공언어 사용 지침서를 개발하여 각 공공기관에 보급하여 활용케 할 필요가 있다. 지침서에는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비롯한 어문규범 관련 사항, 문장 요소간 호응이나 중의성 해소 등에 관한 표현의 문제, 내용 전개 등 글의 완결성 문제 등이 언급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지침서는 책자 형태뿐 아니라 전자책이나 인터넷 문서로도 제작하여 다각도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 3. 통합의 국어 문화 확산

#### 가. 어문규범 개선

현행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이 개정·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사이시옷이나 띄어쓰기 문제 등은 논란이 여전하다. 또한 어문규범이 자연스러운 언어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며 언중의 언어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문규범은 소소한 규정을 바꾸더라도 전체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무엇보다 대부분의 사람을 만족시키는 합의된 규정을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다. 또한 개정된 어문규범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숙지토록 하는 데는 더욱 많은 시간이 소비된다. 그러므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문규범은 가급적 그 체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정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특히 분단국가인 한국의 상황

을 고려할 때 통일 후까지 대비하여)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국민 다수가 불편함을 호소하고 개선에 따른 혼란이 크지 않다면 개선에 보다 적극성을 가질 여지가 있다. 이러한 영역으로는 복수표준어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

특히 ‘교양 있는 서울 사람들이 두루 쓰는 말’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표준어 규정은 지역적 또는 사회적 불평등의 소지가 있다 하여 비판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각계에서 표준어의 범위에 대해 좀더 유연하게 대처하지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공감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복수표준어는 현행 표준어 규정에서도 허용하고 있으며, 새로 복수표준어를 추가 하더라도 기존의 표준어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문서를 폐기하거나 다시 인쇄하는 등의 사회, 경제, 교육적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의 언어 문화를 보존하고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사이시옷의 일부 등 기타 잘 지켜지지 않아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규정에 대해서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며, 향후 남북 통일시 개정·시행을 고려한 어문규범 개선 작업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토록 한다.

## 나. 언어 소외 계층 국어 사용 지원

21세기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놀라운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급격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변화는 한국 사회를 다문화적이고 복잡한 사회로 변모시켰다. 이는 결과적으로 남녀 차이나 성 정체성, 연령, 세대, 인종, 장애에 따른 차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주류 사회와의 갈등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결국 주류 사회와 소수 사회 모두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언어 소수자 층으로는 새터민, 결혼 이주 여성,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등을 들 수 있다. 주류 사회는 소수자를 포용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국가에서는 이들의 언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결혼 이주 여성이나 새터민과 같은 이주 집단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을 해소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한국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 새터민들이 집중된 곳에 한국어 교육 기관을 우선 설치하여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이주 집단을 위한 전문적인 한국어 교원을 양성한다. 이들은 이주민의 언어와 문화를 잘 이해하도록 양성되어야 한다. 또한 각 집단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방향을 수립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결혼 이주 여성의 교육을 현장에서 책임져야 하는 교원은 양성 단계에서부터 일반 목적의 한국어 교원 양성 방법과 달라야 한다.

셋째,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나 이주 결혼 여성들이 자국의 언어로 청취할 수 있도록 뉴스나 정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국 언어의 누리집을 구축하여 한국 사회에서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불이익이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

넷째, 의사소통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각장애인이거나 시각장애인이 공적인 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소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언어 활동을 지원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에는 외국어 통역사와 수화 통역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한다. 공공기관의 누리집은 음성 서비스를 의무화한다.

#### 다. 남북언어 통합 기반 강화

60여 년의 정치적·지리적 분단과 함께 소통마저 단절된 결과, 남과 북은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언어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 이질화가 지속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남북 교류가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되고 민간 개인 차원에서도 서로 쉽게 만날 수 있게 될 때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서로간의 동질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언어에서 문제가 없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향후 있을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 후 남과 북의 언어 차이로 인한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남북언어 통합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남북 언어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는 새터민이 새로운 소의 계층이 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어 보존 차원에서 사회가 이들의 언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도적인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선 우리 국민들이라도 북한의 언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언어 이질감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둘째, 개정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난 현행 어문규범의 정착 여부를 세밀히 측정하여 개정 사항을 도출하는 어문규범 영향평가를 통해서, 그리고 치밀한 연구와 의식 조사 등을 병행하여 남북 통일 후 적용할 수 있는 단일 어문규범 통일안을 마련한다.

## 4.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 가. 국어전문 교육과정 개발 운영

많은 정보가 문자보다는 영상 형태로 공급·소비됨에 따라 발표, 문서 작성, 회의 참여 등에서 젊은 세대의 의사 표현 능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 향상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종사자 및 기업체 직원들에 대한 국어 재교육 필요성 또한 점차 커져 가고 있다.

정규 학교를 졸업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국어 교육 과정으로는 국립국어원의 국어문화학교가 대표적이다. 현재 주로 공무원과 교사, 출판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어문화학교의 수강 인원은 해마다 증가하여 2000년에는 1,300여 명이었으나 2010년에는 3,100여 명에 이르러, 10년간 총 20,000여 명이 이 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국어문화학교는 국립국어원 내에서 17강좌 35시간의 교과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어원을 직접 방문하여 수업을 듣기 어려운 지역민을 위해 국어 전문 강사가 직접 찾아가 강의를 진행하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갈수록 증가하는 고급의 국어 능력 요구에 발맞추어 기존의 국어문화학교를 ‘국어전문 교육과정’으로 확대하여 수강생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순차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그래서 기자, 출판인, 교사, 번역가 등 국어 전문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비롯하여 일반 회사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군에서 요구하는 국어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제공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영역에서 어떤 능력이 요구되는지를 분석하여 목표점을 파악한 후 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교과 과정과 교수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찾아가는 문화학교를 더욱 활성화하고 각 지역의 국어문화원과 연계하여 원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준의 교과과정의 강의를 지역별로 개설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 언어 소외 계층의 국어교육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 나. 청소년 언어 개선

최근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의 언어 생활에서는 은어와 비어, 욕설 등이 거리낌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이러한 중등 청소년의 언어

습관을 개선하고 건전하고 아름다운 언어 습관 실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언어사용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 심성 또는 또래집단의 문화 압력 등이 개입된 문제로 보인다. 따라서 근본적인 처방을 위해서는 전 정부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그래서 사회학, 심리학 등 사회과학 분야의 협조로부터 문제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근본적인 원인이 진단된 다음 유관 부처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교 교육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인성 교육 방안이 가장 먼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 환경 또한 중요할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 체계 면에서 접근해야 하므로 점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단기적으로 다음의 시책을 우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들의 언어 문제를 자각하고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 언어 개선 공모전을 지원한다.

둘째, 청소년 언어 사용 개선 지도를 위한 ‘찾아가는 올바른 우리말 선생님’ 운영을 지원한다.

셋째, 인터넷 댓글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한 인격 모독 및 차별적 언어 표현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개선안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다년간의 연구 결과로 얻은 대안 표현을 홍보 책자로 제작하여 보급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 다. 국어 사용 개선 캠페인 추진

올바른 국어 사용은 공공기관이나 기타 기관의 책임만은 아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간판 언어나 식당의 메뉴 및 각종 안내 문구 등 일상생활에 쉽게 노출되는 언어들 가운데 잘못된 표현들이 적지 않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잘못된 언어에 노출되다 보면 어느 것이 바른말이고 어느 말이 그른 말인지 혼란스러워 하게 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언어 사용, 특히 언어 예절에 어긋난 표현이나 무심코 내뱉은 차별적인 표현은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기 마련이다. 이는 개인의 국어 사용과 관련된 문제이긴 하지만 국어 지식의 부족이나 무관심으로 본의 아니게 저질러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한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쉽게 노출되는 거리 간판, 식당의 메뉴, 안내문 등은 국민의 언어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공공장소에서의 언어 사용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식당, 점포, 택시 및 각종 창구 등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 종사자 및 안내원이 고객을 대할 때 잘못 쓰는 언어 관행을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한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황에 따른 적절한 언어 사용 사례집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셋째, 역대 순화어의 정착 실태 및 실패 또는 성공 원인 분석, 전문가 집단 주도형 또는 국민 참여형 등 과거 시행해 왔던 순화 방법론의 성과 분석 등을 통해 국어 순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라. 우리말가꿈이 운영 지원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서는 공공언어 순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을 펼쳐오고 있으며 한글학회, 국어문화원, 한글문화연대 등 민간 조직에서도 줄기차게 언어 순화 작업을 수행하여 오고 있다. 그러한 활동 조직 중 하나인 우리말가꿈이 지원단은 각급 공공기관이나 단체 및 대중매체에 대해 직접 교정 작업을 전개하는 등의 활동으로 우리말을 더욱 바람직하게 개선하기 위한 범국민 운동 차원에서 2010년 7월에 출범하였다.

우리말가꿈이는 어휘 차원의 순화에서 벗어나 공공언어 전반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공공언어의 수용자인 일반인들이 공공언어를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국민 참여 운동이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아름다운 우리말을 가꾸어 가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이다. 이러한 우리말가꿈이 활동을 전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하게 하며, 현재 규모의 소집단에서 벗어나 전국적인 범국민적 조직으로 확산·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써 순화어를 비롯한 쉬운 공공언어 쓰기 등 바람직한 국어문화가 우리 사회 저변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공공언어 개선 캠페인 및 자정 활동,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의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올바른 언어 문화 캠프 활동 지원 등을 일반 기업의 사회 공헌 프로그램으로 마련하여 안내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이 사회로 환원되는 장으로 활용케 할 수 있다.

## 5. 국어 콘텐츠 구축 및 서비스

### 가.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구축 및 운영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구축 사업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언어생활 자료를 집대성하여 디지털 국가 언어 지식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의 사전 편찬이 폐쇄적이고 비연속적인 것이었다면 이번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국가 언어 지식 관리 체계는 일반인 등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하면서 국가, 전문가 집단 등이 함께 작업하여 만들어 나가는 개방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이다.

현재는 1단계 사업(2010~2012)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 단계별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4-5〉 단계별 사업 내용

1단계 (’10~’12)	위키피디아형 사전 편찬 및 관리 시스템 개발 언어 정보의 유통·검색 지원 시스템 구축
2단계 (’13~’15)	사전 편찬 및 관리 시스템 고도화 개방형 콘텐츠 상호 연계 시스템 구축 수요자 맞춤형 언어 정보 활용 시스템 구축
3단계 (’16 이후)	지능형 사전 편찬 지원 시스템 구축 언어 정보 자원 교육 지원 시스템 개발

### 나. 유형별 말뭉치 구축

국어정보의 안정적 구축과 보급, 나아가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한 중요한 방편으로 효율적인 국어정보 통합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이때 국어 정보의 기초 자료가 되는 것이 말뭉치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1988년부터 구축되어 온 연세 한국어 말뭉치를 비롯하여 한국과학기술원, 고려대학교, 울산대학교 등에서 구축해온 말뭉치가 있다. 21세기 세종계획에서는 국어 기초 자료 구축 분과에서 원시 말뭉치 5,700만 어절, 형태 분석 말뭉치 1,000만 어절 규모를 구축함으로써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국어는 자연언어로서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그러한 모습 하나하나가 국어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를 말뭉치 형태로 꾸준히 보존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말뭉치는 양적인 면에서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 목적 및 실태 조사를 위해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구축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필요한 대표적인 말뭉치로는 시대별 말뭉치, 구어 말뭉치, 영역별 말뭉치, 지역어 말뭉치 등을 들 수 있으며,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구축하고 보급함으로써 국어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를 더욱 활성화하여 국어의 보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 다. 지역어 조사 및 관리 등

언어에는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전통과 지역민의 정서가 스며 있다. 따라서 이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여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어 조사·보존 사업은 권역별로 지역어를 조사하여 전사하고 이를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어 음성 웹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2013년까지 10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국내 권역별 지역어 조사와 국외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내 권역별 지역어 조사와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 지역어 조사에 대한 추가 조사 및 보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지역어 음성 자료를 전사 자료와 함께 웹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축하여 국어 연구자 등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어 교사, 학생 등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그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한글박물관의 전시 콘텐츠로 변용함으로써 한국어에 대한 현황을 쉽게 알려주는 데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어 자료는 또한 국어 순화에 활용할 수도 있다. 생소한 개념이 외국어 용어로 우리 사회에 물밀듯 들어오고 있는데, 이를 적절히 순화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해당되는 개념 요소가 어떤 지역어에서 발견된다면 비록 표준어가 아닐지라도 자랑스러운 우리 언어 문화의 유산인 그 지역어 요소를 도입하여 우리말화함으로써 우리말의 가치를 드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작가들이 애써 사용하는 지역어가 예술 창작 등에 활용되어 우리 감성에 맞게 활용됨으로써 우리의 문화적 풍토를 단단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았듯이, 새로이 발굴되는 지역어 또한 이러한 측면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지역어의 보존과 발전은 우리말의 진흥에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 6. 한글의 국내외 위상 제고

### 가. 한글박물관 건립 및 운영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국가 상징 문화공간 조성 계획의 하나로, 한글 창제 정신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종합 전시·교육의 장이 될 한글박물관이 오는 2012년 말 서울 용산에 건립된다. 한글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 부지 내에 1만1천322㎡(3천425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지며 그 전시 면적은 4천200㎡다. 이는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공원과 연계하여 자연문화가 조화된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한글박물관은 단일 문자 박물관으로는 세계 최초인데, 그 위상에 걸맞은 전시 및 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앞으로 추진할 운영 방안은 다음과 같다.

#### 1) 전시 설계 추진

- 가.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부각한다.
- 나. 전사체험·연구교육이 연계 운영되고 내외국인을 아우르는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다. 전시공간은 상설전시실과 교육체험실, 그리고 한글 관련 자료를 검색하는 한글누리 등 세 곳으로 나뉜다. 이 중 상설전시실은 ‘한글을 만들다’ ‘한글을 꽃 피우다’ ‘한글을 생각하다’로 세분해 관련 자료를 전시할 계획이다.
- 라. 한글박물관이 과거의 유물 전시에서 더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복합문화공간이 되도록 전시 내용을 구체화한다.
- 마. 친환경·친인간 박물관 지향한다.

#### 2) 교육 프로그램 추진

- 가. 한글 박물관은 전시 외에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과 연구를 위한 공간 등 차별화된 교육연계 복합공간으로 운영한다.
- 나. 특수 박물관이 가지는 특정 관람 수요 외에, 불특정 다수의 다양한 관람객을 유인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마련한다.
- 다. 핵심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의한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화를 모색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 학

생의 경우 교과서 내용과 연계하도록 하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공간, 인력 지원 등을 고려한다.

## 나. 한글날 행사 다양화

1926년 11월 4일 ‘가갸날’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된 한글날은 한글 창제의 뜻을 기리고 이를 민족 정신으로 승화시키고자 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2008년부터는 한글날 경축 행사만 개최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한글날 전후로 ‘한글주간’을 정하고 매해 주제를 바꾸어가며 한글 문화상품 기획전을 비롯한 각종 전시회,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한글의 가치를 한국의 대표적 문화 상품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국민 참여형 행사를 기획·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를 보다 다각화하여 한글날과 한글 주간을 대표적인 국가 문화축제로 승화시켜서 세계 유수의 싱가포르의 세계음식축제와 같은 세계 유수의 문자 및 언어 관련 축제로 만들 필요가 있다.

## 다. 한글의 활용도 강화 등

한글은 로마자나 키릴 문자와 기능이 유사한 표음문자에 속하지만 문자리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과 인본주의 철학이 깃들여 있는 문화 콘텐츠이다. 창제 당시의 언어학적 역량이 총결집된 한글의 과학성 또한 현대언어학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는 견지에서 극찬 받고 있다. 이러한 한글의 속성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여 한글의 활용도를 높인다. 예를 들어 한글을 소재로 한 관광 상품 디자인 및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고, 단기 한국 여행자가 다른 문자와 한글을 비교해볼 수 있는, 그리고 짧은 시간에 한글을 깨칠 수 있는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보급하여 한글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는 한글을 활용하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의 행사를 통해 한글 나아가 모국어인 한국어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 부 록

1. 국어기본법
2. 국어기본법 시행령
3.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4. 국어심의회 운영세칙



## 국어기본법

신규제정 2005. 1. 27. 법률 제7368호  
 (타)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일부개정 2008. 3. 28. 법률 제9003호  
 일부개정 2009. 3. 18. 법률 제9491호  
 일부개정 2011. 4. 14. 법률 제10584호

### 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2조(기본 이념)**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쓰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국어능력"이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어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4.14]

## 제2장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1.4.14>

**제6조(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어문규범의 제정과 개정 방향에 관한 사항
3. 국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어 정책과 국어 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6.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7.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언어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
9.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10.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4.14]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중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제8조(보고)** 정부는 2년마다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해당 연도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9조(실태 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국어 관련 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3장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 <개정 2011.4.14>

**제11조(어문규범의 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어문규범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4.14]

**제12조(어문규범의 영향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13조(국어심의회)** 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국어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국어학·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어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정 2011.4.14]

**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 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15조(국어문화의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람직한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16조(국어 정보화의 촉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국어 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인터넷 및 원격정보통신서비스망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17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18조(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① 국가는 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20조(한글날)** ① 정부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한글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2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 제4장 국어능력의 향상

**제22조(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데에 힘써야 하며, 국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23조(국어능력의 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국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능력의 검정 방법·절차·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24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들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된 국어문화원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여 국어문화원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국어문화원의 지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5장 보칙 <개정 2011.4.14>

**제25조(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어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2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어문화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 부칙 <제7368호, 2005. 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 (공문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작성하는 공문서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어문규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으로 본다.

**제5조 (국어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어심의회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어심의회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5조 내지 제8조)을 삭제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 2.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8> 까지 생략

<249> 국어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제3호·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3항,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1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5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003호, 2008. 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국어상담소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9491호, 2009. 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584호, 2011. 4.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어기본법 시행령

신규제정 2005. 7. 27. 대통령령 제18973호  
일부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6호  
일부개정 2008. 10. 20. 대통령령 제21087호  
일부개정 2010. 12. 14. 대통령령 제22529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어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세부 사항 등)** ①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듣기·말하기·읽기 및 쓰기 능력 등 국민의 국어능력에 관한 사항
2. 경어(敬語)·외래어·외국어·표준어 및 지역어 사용 의식 등 국민의 국어의식에 관한 사항
3. 국어사용환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국민의 듣기·말하기·읽기 및 쓰기 등의 실태
  - 나. 국민의 경어·외래어·외국어·표준어 및 지역어 등의 사용 실태
  - 다. 신문·방송·잡지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의 언어 사용 실태
  - 라. 가요·영화·광고·상호 및 상표 등에서의 언어 사용 실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어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에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국어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의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를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해당 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해당 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③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지사에게 소속 국어책임관이 추진한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의 실적과 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조(어문규범의 영향평가)**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사용에 미치는 영향
  - 가. 어문규범의 필요성 및 중요성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
  - 나. 어문규범으로 인한 국민의 국어 사용의 변화 정도
2.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 가. 어문규범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및 수용도
  - 나. 어문규범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의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지역·연령·성·직업 및 학력 등이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학술단체, 여론조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조(국어심의회의 위원의 임기)**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국어심의회의 회의)** ① 국어심의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어심의회의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2.29, 2010.12.14>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0.12.14>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국어심의회의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의 종류 및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정책분과위원회

- 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나.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사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다.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 라.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다른 분과위원회의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어문규범분과위원회

- 가. 한글맞춤법에 관한 사항
- 나. 표준어규정 및 표준어발음법에 관한 사항
- 다. 외래어 및 외국어의 한글 표기에 관한 사항
- 라.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를 외국 문자로 표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 마. 한자의 자형(字形)·독음(讀音) 및 의미에 관한 사항
- 바.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에 대한 사항

3. 국어순화분과위원회

- 가. 국어순화에 관한 사항
- 나. 전문 분야 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국어심의회의 위원은 1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2.29>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국어심의회와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12.14>

**제10조(수당 등)** 국어심의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

**제12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를 두며, 그 협의회는 해당 기관의 국어책임관·관계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용어를 표준화 및 체계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요청된 전문용어 표준안을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이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하고, 해당 중앙행

정기관의 장은 확정안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전문용어를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학술단체 및 사회단체 등 민간부문에서 심의 요청한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안에 대하여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확정안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자(이하 "한국어교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교원 1급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2천 시간 이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하 "한국어교육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2. 한국어교원 2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험 종류, 시험의 유효기간 및 급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일 것

나.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18학점 이상을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2005년 7월 28일 전에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8학점 이상을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제3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1천2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마. 제3호나목, 바목 및 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2천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3. 한국어교원 3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험 종류, 시험의 유효기간 및 급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일 것

나.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

다.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10학점 이상 17학점 이하를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6학점 이상 7학점 이하를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마.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10학점 이상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바. 2005년 7월 28일 전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거나 2005년 7월 28일 전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 실시한 한국어교육 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사. 2005년 7월 28일 전에 한국어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2005년 7월 28일 전에 그 과정에 등록하여 2005년 7월 28일 이후에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2005년 7월 28일 이후에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5.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을 받아서 발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14]

**제13조의2(대학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①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대학 또는 대학원과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 적합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학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신청받았을 때에는 그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과정의 과목 등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대학등의 동의를 있으면 그 확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0.12.14]

**제14조(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이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에서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 전 영역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개정 2010.12.14>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출제·시행·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비영리법인일 것
2.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것
3.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어 것

⑤ 부정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시험에서 부정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

을 정지한다. <신설 2010.12.14>

⑥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해의 다음 회 시험에 한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2010.12.14>

⑦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0.12.14>

⑧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응시 수수료, 환불, 그 밖에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12.14>

**제15조(한글날 기념행사)** ① 정부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글날 기념행사에 국어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한글발전유공자로 포상하고, 민족 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세종문화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글발전유공자의 포상은 「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세종문화상의 수여는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시상분야·수상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6조** 삭제 <2008.10.20>

**제17조** 삭제 <2008.10.20>

**제18조(국어능력의 검정방법)**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능력의 검정은 다음 각 호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듣기
2. 말하기
3. 읽기
4. 쓰기
5. 그 밖에 국어사용에 필요한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어능력 검정시험의 출제·시행·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비영리법인일 것

2. 국어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는 것
3. 국어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능력검정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국어능력검정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검정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보하거나 응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9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2.14>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상담전문인력을 갖추는 것

가. 국어국문학·국어교육학 또는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거나 박사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대학의 국어 관련 학과와 그 부설 연구소·상담소, 국어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8년 이상 강의·연구·상담 또는 근무 경력이 있는 상근 책임자 1인

나. 국어국문학·국어교육학 또는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의 국어 관련 학과와 그 부설 연구소·상담소, 국어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6년 이상 강의·연구·상담 또는 근무 경력이 있는 상근 상담원 2인 이상

2. 상담실 및 행정실과 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상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

②국어문화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어문화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14>

1. 국어문화원 운영계획서
2.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의 추진실적을 기재한 서류

③국어문화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전년도에 상담 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14>

[제목개정 2010.12.14]

부칙 <대통령령 제18973호, 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0.12.14>

**제3조 (국어심의회의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위촉받은 자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의하여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1조 내지 제13조) 및 제4장(제14조 내지 제22조)을 각각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76호, 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항,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제3항·제5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제2호,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가족부 및 법제처"를 "교육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여성부 및 법제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⑧부터 <37>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10.2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529호, 2010.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후단 및 제3호가목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의 한국어교원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후단 및 제3호가목 후단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한국어교원 자격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부정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별표 1] &lt;개정 2010.12.14&gt;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제13조제1항관련)**

번호	영역	과목 예시	대학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 학점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 시간
			주전공 또는 복수 전공	부전공		
1.	한국어학	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話用論), 한국어사, 한국어어문규범 등	6학점	3학점	3~4학점	30시간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등	6학점	3학점		12시간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평가론, 언어교수이론, 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 쓰기), 한국어이해교육법(듣기, 읽기),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론 등	24학점	9학점	9~10학점	46시간
4.	한국문화	한국민속학,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문학개론,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현대문화비평, 현대한국사회, 한국문학의 이해 등	6학점	3학점	2~3학점	12시간
5.	한국어교육 실습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등	3학점	3학점	2~3학점	20시간
	합계		45학점	21학점	18학점	120시간

※ 한국어교원 자격의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2]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영역 및 검정방법(제14조제2항관련)

영역	배점		시간	방법
별표 1의 제1호	90	120	100분	필기
별표 1의 제2호	30			
별표 1의 제3호	150	180	150분	
별표 1의 제4호	30			
	300점		250분	
구술시험	합격/불합격			면접

[별지 제1호서식] &lt;개정 2010.12.14&gt;

## 한국어교원자격증

### CERTIFICATE OF KOREAN LANGUAGE TEACHER

번 호  
Certificate Number

이 름  
Full Name

생 년 월 일  
Date of birth

국 적  
Nationality

자 격  
Qualification Grade

「국어기본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is qualified to be a Korean Language Teach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 (2) of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guage.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Republic of Korea

직인

1. 검정 종별: 무시험 검정
2. 법정 해당 자격기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 호 목 자격기준
3. 수여 조건: 해당 없음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m<sup>2</sup>]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1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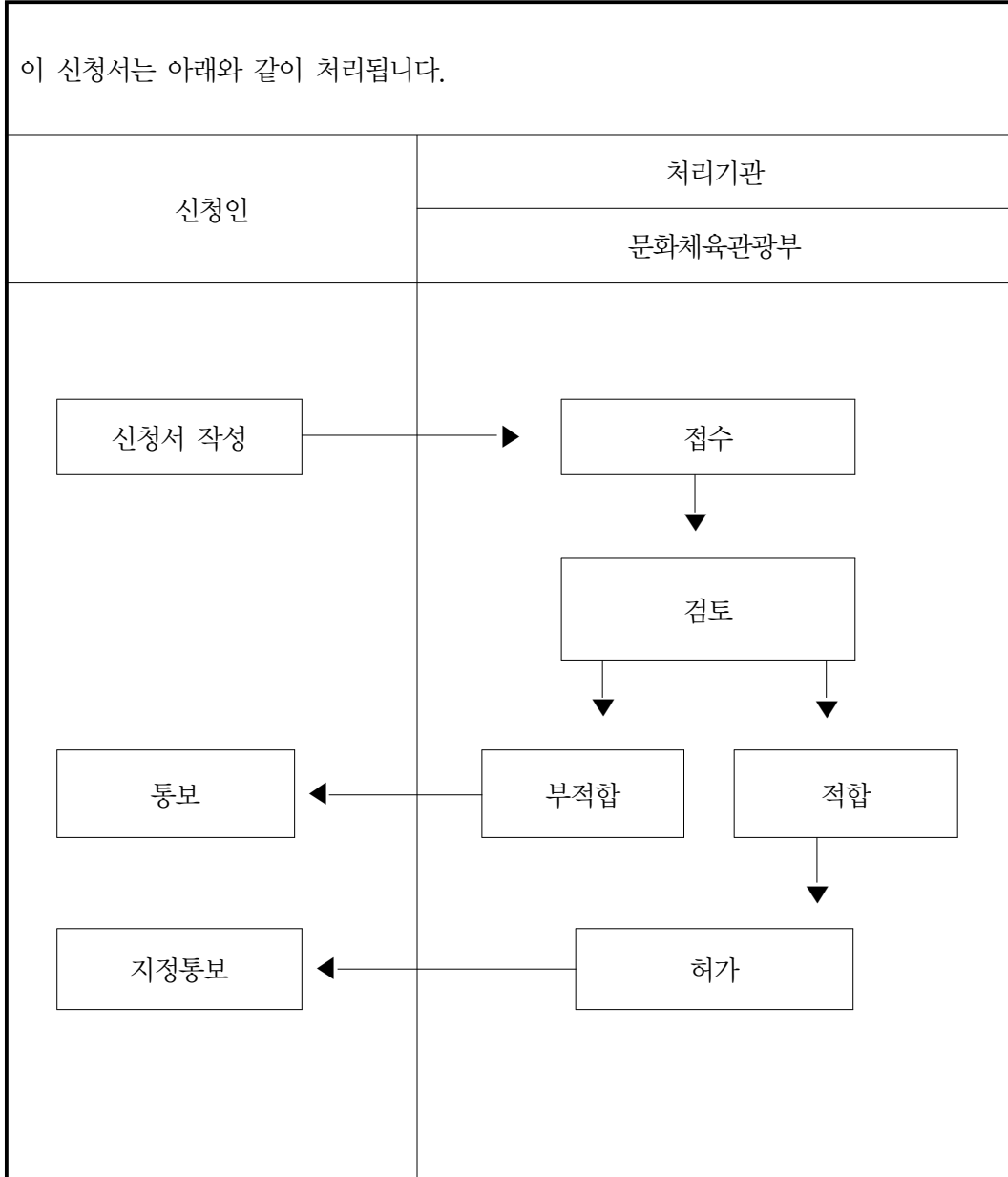
(앞쪽)

<b>국어문화원 지정신청서</b>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 )		
단체명·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 )		
설립목적			설립연도	
지원 요망 사항 :				
<p>「국어기본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어문화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b>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b></p>				
구비서류	1. 국어문화원 운영계획서 1부			수수료
	2.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추진실적을 적은 서류 1부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신규제정 2010. 12. 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국어교원 자격 세부 심사기준)** 「국어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1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 및 공고)** ① 영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는 연 2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어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를 시행하기 3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한국어교원 자격의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 위원은 한국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장이 정한다.

**제5조(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신청 등)** ①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1.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2. 영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영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후단에 따른 시험의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영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4. 영 제13조제1항제2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5. 영 제1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영 제13조제1항제3호가목 후단에 따른 시험의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영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및 영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
7. 영 제13조제1항제3호다목·라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8. 영 제13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한국어교육경력으로 자격 요건을 인정받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합격증명서(한국어세계화재단의 한국어교육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해당한다)
9. 영 제13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및 영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

②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①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대학 또는 대학원이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영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영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의 적합 여부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국어 교육과정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기관이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영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의 적합 여부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3호, 2010.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 후단 및 제5호 후단과 별지 제1호서식 뒤쪽 구비 서류란 제2호 후단 및 같은 날 제5호 후단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 등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제2조 관련)**

## 1.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

번호	영역	세부 심사기준
1.	한국어학	한국어의 다양한 특징과 현상, 한국어의 음운·문법·어휘·의미·화용·역사·어문규범 등의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일반 언어의 보편적인 구조와 특징, 음운·문법·어휘·의미·화용·역사 등의 일반언어학 하위 분야 내용 또는 일반언어학의 연구 결과를 실용적인 문제에 적용하는 응용언어학 하위 분야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수법 전반에 해당되는 내용, 한국어의 음운·문법·어휘·의미·화용·역사·어문규범 등의 교육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4.	한국문화	한국어교육에 필요한 한국의 역사·민속·철학·정치·경제·사회·지리·예술 등의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5.	한국어교육 실습	한국어교육을 실제로 하거나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을 참관하는 등 한국어교육 실습을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

## 2. 대학 또는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의 세부 심사기준

영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은 학사, 석사 또는 박사 과정별로 각각 분리하여 적용한다.

## 3.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의 세부 심사기준

가. 강의시간은 50분을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의 1시간 단위로 한다. 다만, 원격교육(방송·통신·인터넷 등에 의하여 원격으로 교육을 하는 것을 말한다) 방법에 따른 강의시간은 과목의 내용에 대한 강의로 구성된 25분을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의 1시간 단위로 한다.

나. 최초 수업일부터 만 2년 이내에 모든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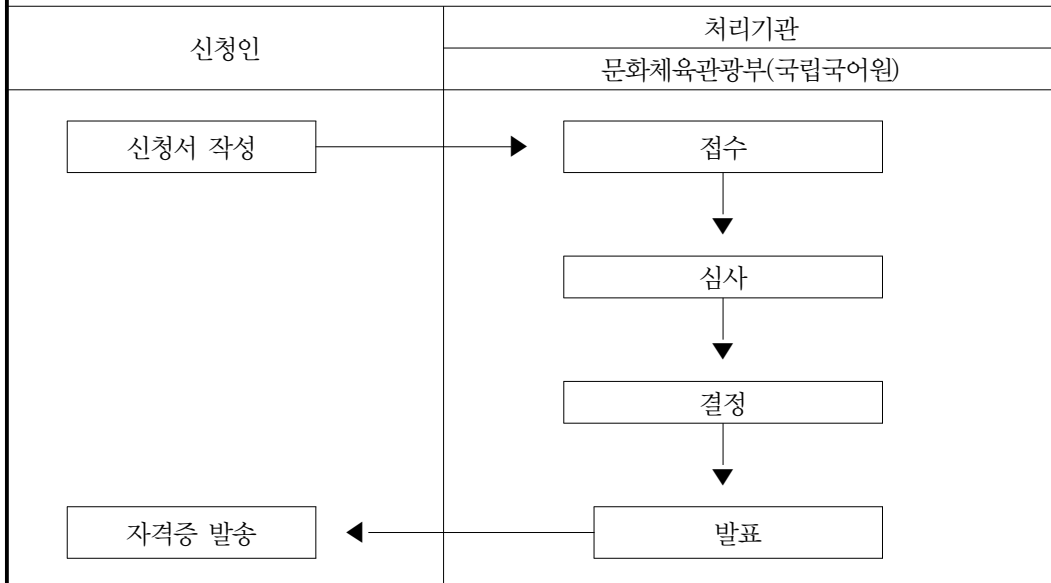


(뒤쪽)

## ※ 구비 서류

1.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2.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및 성적증명서.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영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후단에 따른 시험의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십시오.
3.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및 성적증명서
4.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5.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및 성적증명서.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영 제13조제1항제3호가목 후단에 따른 시험의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십시오.
6.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및 영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
7.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다목·라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및 성적증명서
8.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한국어교육경력으로 자격 요건을 인정받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또는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합격증명서(한국어세계화재단의 한국어교육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제출합니다)
9.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및 영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b>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b>						발행기관 관리문서번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담당자	발급 기관명(부서명)							
	주 소							
	담당자 이름							
	전 화 번 호							
		전 자 우 편						
이수 내용	연도	학기	이수 기간	이수 과목	이수 시간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영역	영역별 이수시간	
						1. 한국어학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4. 한국문화		
						5. 한국어교육 실습		
	총 이수시간		( )시간					
	위 사람은 우리 기관에서 위와 같이 정해진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b>발급 기관의 장</b>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display: inline-block; padding: 5px 15px;">직인</div>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발행기관 관리문서번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담당자	발급 기관명(부서명)						
	주 소						
	담당자 이름						
	전 화 번 호						
강의 경력	연도		학기	담당 과목명	강의 시간	강의 기간	비고
강의 시간 합계			( )시간				
위 사람은 우리 기관에서 위와 같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경력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급 기관의 장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직인</div>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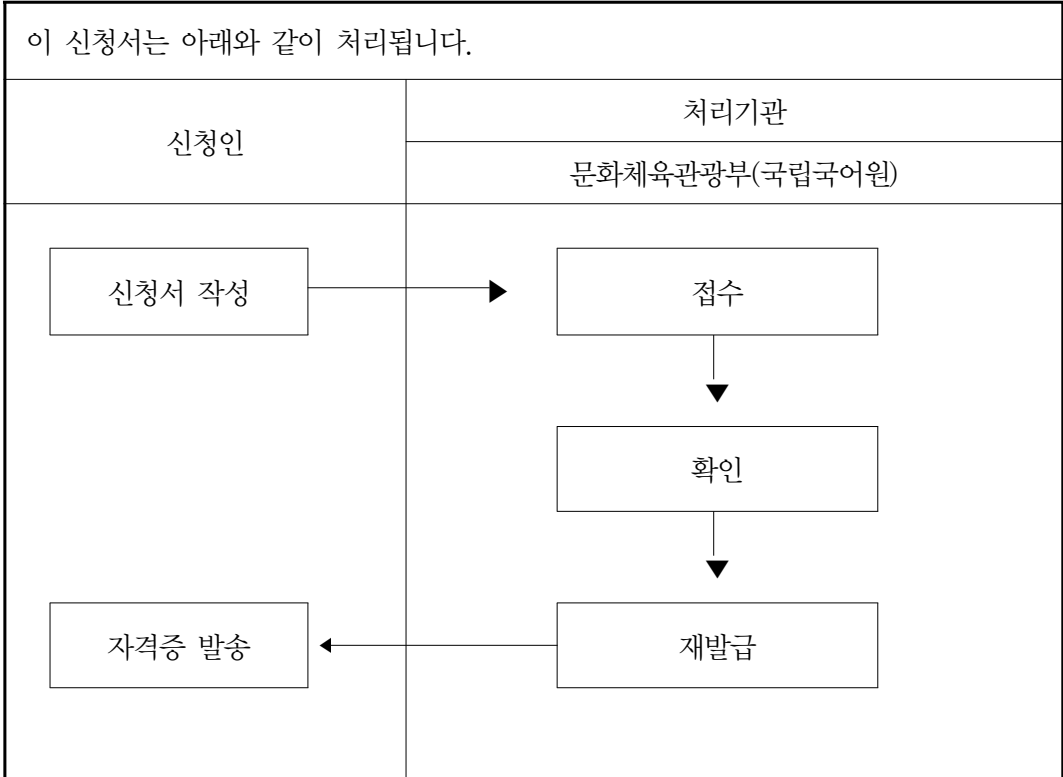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한국어교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 자 우 편		전화(휴대전화)	
	주 소			
자 격	등 급	<input type="checkbox"/> 1급	<input type="checkbox"/> 2급	<input type="checkbox"/> 3급
	자격증 번호			
	취 득 일			
재발급 신청 사유				
<p>「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국어교원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b>문화체육관광부장관</b> 귀하</p>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한국어교원 자격증(훼손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수 수 료	수입인지 10,000원
<p>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뒤쪽)



[별지 제5호서식]

<b>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b>				
신청 기관				
주 소				
담당자	성 명	전화		
	전자우편	팩스		
① 신청 과목명			② 과목의 해당 영역 ( ) 영역	
③ 과목 구분	<input type="checkbox"/> 학부 전공과목 <input type="checkbox"/> 석사 전공과목 <input type="checkbox"/> 박사 전공과목 <input type="checkbox"/> 석사·박사 통합과정 전공과목 <input type="checkbox"/> 학부 연계 전공과목		<input type="checkbox"/> 다른 전공과목 <input type="checkbox"/> 교양과목 <input type="checkbox"/> 전공 교직과목 <input type="checkbox"/> 기타(직접 기재: )	
④ 과목 개요	강의 목적			
	강의 방식	<input type="checkbox"/> 강의식 <input type="checkbox"/> 토론식 <input type="checkbox"/> 실습 <input type="checkbox"/> 기타 (직접 기재: )		
	강의 주요 내용			
	강의 시간	( ) 학점 / 시간		
	기타			
⑤ 주 교 재	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⑥ 부 교 재	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⑦ 담당 교수 (최근 3년 이내)	직 위	성 명	학력 및 주요경력	
붙임 서류: 과목별 강의계획서 1부				
년    월    일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span style="font-size: 24px; font-weight: bold;">신청 기관의 장</span>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5px; margin-left: 20px;">직인</div> </div>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b>한국어 교육과정 확인신청서</b>							
신 청 과 정	<input type="checkbox"/> 대학(학부과정) <input type="checkbox"/> 대학원(석사·박사과정)						
신 청 기 관				과정(전공) 개설 시기	년 월 일		
주 소							
담당자	성 명			전화			
	전자우편			팩스			
영역	과목명	학점	비고	영역	과목명	학점	비고
1. 한국어학				3. 외국어로 서의 한국어 교육론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4. 한국 문화			
3. 외국어로서 의 한국어 교육론				5. 한국어교육 실습			
총 과목 수	(            개)		총 학점	(            학점)			
붙임 서류: 교수요목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span>년    월    일</span>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5px;">직인</div> </div>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 margin-top: 10px;">신청 기관의 장</p> <p style="text-align: left; margin-top: 20px;">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p>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							
신청기관명				과정명			
과정유형		<input type="checkbox"/> 주간과정 <input type="checkbox"/> 야간과정 <input type="checkbox"/> 단기 집중과정 <input type="checkbox"/> 방학과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과정 개설 시기		년 월	
모집정원				교육기간			
수업일수/주당				수업시간대			
주소				인터넷 홈페이지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			
영역	과목명	시간	비고	영역	과목명	시간	비고
1. 한국 어학				3. 외국어로 서의 한국어 교육론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4. 한국문화			
3. 외국어로서 의 한국어 교육론				5. 한국어 교육 실습			
총 과목 수	(            개)			총 아수시간	(            시간)		
붙임 서류: 과목 개요 및 교수요목, 양성과정 소개							
년    월    일							
신청 기관의 장						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국어심의회 운영세칙

제정 1995. 12. 23. 문화체육부훈령 제55호  
 개정 1998. 7. 28. 문화관광부훈령 제28호  
 전부 개정 2009. 10. 11.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1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 절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취한다.

1. 임기가 만료된 때
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
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제3조(분과별 당연직 위원의 위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8조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정책 심의 기능 확대와 심의회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어·정책 분야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기관, 단체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 결원 보충 및 그 임기)** 제2조 제2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그 임기는 해촉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전문소위원회의 구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심의회 위원장은 영 제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운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심의위원 일부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필요한 수만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다른 소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열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 선출)**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하고 합동전문소위원회(이하 “합동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에 각각 호선한다.

**제7조(소위원회 및 합동소위원회의 기능)** ① 필요할 시 소위원회 또는 합동소위원회는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심의 안건을 발굴하거나 토론, 사전 검토, 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한다.

② 소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회에 상정할 심의 안건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 검토 등을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상정할 심의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에 참여한 심의위원 1인이 심의회나 당해 분과위원회에서 검토 결과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의 소집 및 진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심의회 위원장은 모든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와 그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분과 내 합동소위원회, 분과 간 합동소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와 합동소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 전원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는 소집권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안건, 개최시기, 개최장소 등을 명시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집통지서를 위원들에게 발송한다. 다만, 위급한 사유가 있을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의 소집 통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모든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회의 시작 전에 위원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⑤ 모든 회의는 위원장이 진행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없거나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대행한다.

**제9조(회의의 의결)** ① 심위원회의 의결권은 대리하여 행사하지 못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위원회의 의결 사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이 판단하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및 검토 의견서 작성)** ① 소위원회, 합동소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회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회의록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와 합동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 검토 의견이 기재된 별지 제4호 서식의 소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가 진행 중이거나 공개하기에 부적당할 경우 회의 참석자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협조 요구)** ① 심의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합동소위원회의 각 위원장은 영 제7조에 따라 영 제8조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국어원에 심의와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한 자료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의회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에 필요한 조사, 연구, 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전문가에게 의뢰)** 심의회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7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분과위원회 의결 효력 및 범위)** ① 분과위원회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존중하고 심의회 운영의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당해 분과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사항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분과위원회에서 사안이 중대하거나 분과 간 상호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부치기로 의결한 경우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심의회 위원장이 전체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과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보류하는 경우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의가 끝나면 지체없이 회의 결과를 심의회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심의회 위원장은 전체 위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지명)** ① 영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는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장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영 제9조에 따라 언어정책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국립국어원 교육진흥부장, 어문규범분과위원회는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장, 국어순화분과위원회는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장으로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 및 합동소위원회 간사는 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서기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5조(간사 및 서기 임무)** ① 영 제9조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 안건의 작성, 상정 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보관 및 회의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② 영 제9조에 따른 서기는 간사를 도와 회의 개최 준비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의회 회의록 작성 등을 수행한다.

**제16조(수당 등)** 이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업무 수당, 여비 또는 자료 조사 및 정리 등의 임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1998.7.28.)

##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2009. 10. 11.)

[별지 제1호서식]

## 위 촉 장

○ 성 명 :

○ 소 속 :

○ 위 촉 기 간 : 20 . . . . ~ 20 . . . .

위 사람을 「국어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어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m<sup>2</sup>)

[별지 제2호서식]

## 국어심의회 소집 통지서

\_\_\_\_\_ 위원님 귀하

회의 구분	
회의 일시	
회의 장소	
심의 안건	
심의 자료 내 용	
심의 자료	‘붙임’과 같음

「국어심의회 운영 세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어심의회(또는 분과위원회)를 개최일정을 통지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또는  
(            ) 위원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 심의회(                    분과위원회) 회의록

1. 심의 안건 :
2. 회의 일시 :
3. 회의 장소 :
4. 심의 의결 사항 :
5. 참석위원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6. 관계전문가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국어심의회 운영 세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어심의회(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년    월    일  
 (                    )위원장                    (인)  
 (                    )간 사                    (인)  
 (                    )서 기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총괄 기획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집필진	김선철(국어정책과 학예연구관) 박동근(건국대 교수) 이병규(서울교대 교수) 이현주(국어정책과 학예연구사) 정희원(국립국어원 어문연구팀장) 조태린(국어정책과 학예연구사) * 가나다순

'09~'10

##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정책시행 결과 보고서

인쇄일 | 2011년 8월 26일

발행일 | 2011년 8월 29일

발행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 국어정책과  
서울특별시 중로구 효자로 12

전화 | 02)3704-9446, 전송: 02)3704-9429

[www.mcst.go.kr](http://www.mcst.go.kr)

인쇄처 | 크리홍보(주) (02)737-5377